남북 저작권 교류 국내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연구수행기관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한지영 (조선대학교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남북 저작권 교류 국내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연구수행기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공동연구원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공동연구원 김균희 박사(인하대학교)
연구보조원 이정훈 연구원(중앙대학교)
연구보조원 이효정 연구원(조선대학교)

목 차

제1장 서론 ····· 0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0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03

제2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FGI ····· 05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FGI 수행 결과 ···· 05
1. 개요 ····· 05
2. FGI 수행결과 ····· 06
(1) 제1차 FGI 수행 결과 ····· 06
(2) 제2차 FGI 수행 결과 ····· 11
(3) 제3차 FGI 수행 결과 ····· 14
(4) 제4차 FGI 수행 결과 ····· 16
(5) 제5차 FGI 수행 결과 ····· 22
(6) 제6차 FGI 수행 결과 ····· 28
3. FGI 수행 결과 요약 ····· 30
제2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언론분야 조사 ····· 32
1. 개요 ····· 32
2.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과 이후 ····· 32
(1) 1차 조사기간 (17. 01. 01 ~ 17. 03. 03) ····· 32
(2) 2차 조사기간 (17. 08. 01 ~ 17. 11. 30) ····· 33
3. 2018년도 판문점선언 이전과 이후 ····· 34
(1) 3차 조사기간 (18. 03. 01 ~ 18. 09. 30) ····· 34
4. 조사연구 현재 시점 ····· 35
(1) 4차 조사기간 (19. 09. 26 ~ 20. 09. 26) ····· 35
5. 소결 ····· 37

제3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 38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38
1. 조사목적 및 대상 ····· 38

2. 조사내용 ····· **39**
3. 조사절차 ····· **40**
4. 분석방법 ····· **4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41**
1. 남북문화교류협력 경험 및 실태 ····· **41**
(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실시 경험 여부 ····· 41
(2)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사례 ····· 41
(3)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목적 ····· 43
(4)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관련 ····· 43
(5)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 ····· 44
2.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 ····· **45**
(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여부 ····· 45
(2)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 ····· 45
(3)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 ····· 46
(4) 저작권료 계약 예정 여부 ····· 47
3. 남북문화교류협력 관심도 및 향후 추진의향 ····· **47**
(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 47
(2)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의향 ····· 48
4. 남북저작물 이용실태 및 욕구 ····· **48**
(1) 북한저작물 이용 실태 : 북한저작물 이용경험 있는 사업자 ··· 49
1)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여부 ····· 49
2) 북한저작물별 유형별 이용비율,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 49
3) 북한저작물 활용 주요 이유 ····· 53
4)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여부 ····· 54
5) 북한저작물별 양도 또는 사용 시기 및 건수 ····· 55
6)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경로 ····· 55
7)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시 어려웠던 점 ····· 55
8) 북한저작물 승인 받은 권리 ····· 56
9) 북한저작물 통한 사업 수익여부 및 수익 발생 경로 ····· 56
10) 북한저작물 전담조직에 대한 의견 ····· 57
11) 북한저작물별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 ····· 58
(2)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욕구 : 북한저작물 이용경험 없는 사업자 ·· 59
1) 북한저작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59
2) 북한저작물이 갖는 적절한 의미 ····· 59
3) 북한저작물 유형별 향후 이용 의사 및 목적 ····· 60

5. 남북한저작물 교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 62
(1)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 62
(2)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에 대한 의견 ····· 62
1)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 적절성 ····· 63
2)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 적절한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 63
3)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 적절치 않은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 63
(3) 남북한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 ····· 64
(4) 남북한 저작권 교류와 관련한 정책적 건의사항 ····· 65
6. 소결 ····· 67

제4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종합 분석과 정책 제언 ····· 70
제1절. 남북문화교류의 발전 과정과 현황 분석 ····· 70
1. 북한저작물 이용 연혁 ····· 70
2. 북한저작물 이용 관련 법적 소송 및 이용 절차 ····· 72
3.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분석 ··· 73
4.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보호 관련 쟁정 ····· 76
제2절.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역할과 쟁점 ····· 78
1.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설립과 활동 ····· 78
2. 경문협 역할 및 주요 쟁점 ····· 80
(1) 저작권법상 경문협의 대리중개업 범위와 한계 ····· 81
(2) 경문협의 '가계약'에 관한 쟁점 ····· 82
(3) 남북저작권센터 관련 쟁점 ····· 83
제3절. 저작물 주요 분야별 남북교류 현황과 과제 ····· 86
1. 음악 분야 ····· 86
(1) 북한음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 87
(2)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 87
(3)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 ····· 96
2 출판 분야 ····· 97
(1) 남북 저작권 교류의 경과와 쟁점 ····· 97
(2) 남북 저작권 교류 전망 ····· 103
(3) 남북 저작권 관련 분쟁 분석 ····· 104
1)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사례 및 유형 ····· 104
2) 남북 저작권 분쟁 원인 분석 ····· 105

3 영상저작물 분야 ····· 107
4 언론 분야 ····· 108
(1) 개요 ····· 108
(2) 조선중앙통신 ····· 110
(3) 조선중앙텔레비전 ····· 110
(4) 노동신문 ····· 111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12
1. 남북 저작권 교류 중심의 남북협력 중장기 계획 마련 ····· 112
2. 북한저작물의 의미와 보호 강화 ····· 113
(1) 북한저작물의 갖는 의미 ····· 113
(2) 북한저작물에 대한 보호 ····· 114
3. 남북 저작권 교류 창구 기능 강화₩ ····· 115
(1)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 ····· 115
(2) 정부차원의 저작권 교류 방안 ····· 116
(3) 저작권전문기구의 설립 검토 ····· 117
4. 남북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 개선 ····· 118
5. 비대면 환경을 고려한 북한저작물의 디지털화 ····· 119
6. 북한저작물 정보 제공 및 분쟁해결 장치 마련 ····· 121

제5장 결론 ····· 122

[참고문헌] ····· 132

그림 목차

그림 4-1 저작권 확인서 샘플 1 ····· 95
그림 4-2 콘텐츠 산업 디지털 혁신의 의미 ····· 120
그림 4-3 VR로 재현된 개성 만월대 ····· 121

표 목차

표 2-1 전문가 FGI 개최 현황 ····· 5
표 2-2 FGI 참가 전문가 현황 ····· 5
표 2-3 제1차 전문가 FGI 개요 ····· 6

표 2-4 제1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6
표 2-5 제2차 전문가 FGI 개요····· 11
표 2-6 제2차 전문가 FGI 참석자현황····· 11
표 2-7 제3차 전문가 FGI 개요····· 14
표 2-8 제3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14
표 2-9 제4차 전문가 FGI 개요····· 16
표 2-10 제4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16
표 2-11 제5차 전문가 FGI 개요····· 22
표 2-12 제5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22
표 2-13 제6차 전문가 FGI 개요····· 28
표 2-14 제6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28
표 2-15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33
표 2-16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33
표 2-17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34
표 2-18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34
표 2-19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35
표 2-20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35
표 2-21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36
표 2-22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36
표 3-1 조사대상의 특성····· 38
표 3-2 조사내용····· 39
표 3-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실시 경험 여부····· 41
표 3-4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사례 ····· 42
표 3-5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1+2순위)····· 43
표 3-6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여부····· 43
표 3-7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건수····· 44
표 3-8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방식····· 44
표 3-9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방식····· 45
표 3-1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여부····· 45
표 3-1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 46
표 3-12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1+2순위)····· 47
표 3-13 저작권에 대한 계약 예정 여부····· 47
표 3-14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47
표 3-15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향후 추진의향····· 48
표 3-16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49

표 3-17 어문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50
표 3-18 음악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50
표 3-19 연극(교예)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51
표 3-20 미술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51
표 3-21 사진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52
표 3-22 영상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53
표 3-23 북한저작물 활용 주요 이유(1+2순위)····· 54
표 3-24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여부····· 54
표 3-25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시기 및 건수····· 55
표 3-26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경로····· 55
표 3-27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시 어려웠던 점(1+2순위)····· 56
표 3-28 북한저작물 승인 받은 권리(중복 응답)····· 56
표 3-29 북한저작물을 통한 사업 수익 여부 및 수익 발생 경로····· 57
표 3-30 북한저작물 전담조직에 대한 의견····· 58
표 3-31 북한저작물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 58
표 3-32 북한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59
표 3-33 북한저작물이 갖는 의미····· 60
표 3-34 북한저작물 유형별 향후 이용 의사 및 목적····· 61
표 3-35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62
표 3-36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에 대한 의견····· 62
표 3-37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한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63
표 3-38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치 않은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64
표 3-39 남북한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 및····· 65
표 4-1 2006~2019년 북한저작물 사용(계약) 현황····· 73
표 4-2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및 정책 요구····· 74
표 4-3 남북 저작권 관련 주요 일지····· 100

[부록1] 남북저작권 교류 현황 조사 설문지····· 133
[부록2]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목록 (2013~2020)····· 147

[국문초록]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합의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북한저작물의 교류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거나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북한저작물의 교류사업이 활성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시기별로 음악, 영화, 출판, 사진, 공연예술 분야들을 선정하여 북한저작물의 직·간접적인 이용 및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에 따른 시장 수요에 따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FGI 심층면접조사를 6차례 진행하였고, 저작물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북한 저작권전문가들의 자문 및 언론사(연합뉴스)의 방문을 통해 기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하였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의 응답수는 예상과는 달리 회수율이 저조하여 결국 총 46부의 설문조사 응답자를 가지고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많은 숫자가 응답하지는 못하였지만 설문조사결과는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현재 어떠한 점이 문제이고,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물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저작권 정책 개선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을 부여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으로부터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남북저작권센터의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 저작권 정책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자, 정책 실무자 등에 의해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설문조사, FGI 심층면접조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저작권센터, 북한 저작권사무국, 연합뉴스

[Abstract]

A Study on Implications on the Policy toward North through Anali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Market concerning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27 April 2018 South- and North Korea have agre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Koreas was prospected to be improved. Therefore, the exchange of the culture and arts between both Koreas was expected to be activated, and the demands on business to exchange works of North-Korea(N.K.) be increas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rry out a survey targeting the people who have once experienced North-Korea's works as well as the people to plan their uses in the every time of business on the area of music, film, publishing, photos, performing art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policy towards N.K. as to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both Koreas in the future. In order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tudy six(6) focus group interviewsurveys(FGI) who practically experienced business on North-Korea's works were carry out, and survey through selecting candidates by works field was conducted. In addition, we got any advises of the experts as to the copyright belonging to the N.K. as well as gave depth interviews with the Press such as Yonhap News Agency, and so discussed on the problems about the busines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of cuture and arts between both Koreas and tried to find out improvements. However, response probability to the survey was at a low ebb unlike the expectation so that total 46 responses could be analysed. Though many responses were not participated, the results of the survey have a meaning in the clearly showing which problems as to the use of works belonging to N.K. lies and which things should be improved.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not only utilzed as important basic data in establishing policies on exhange and cooperation of both Koreas, but used as measures for finding out improvements as to the policy on copyright toward N.K. and the legal system concerning using North-Korea's works.

In addition, the study has dealt with the role and problems of Inter-Korean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Foundation(IKECCF) which has got the powers

to comprehensively prenegotiate from N.K. Office of Copyright Affairs and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as well as with the role and its problems of Inter-Korean Copyright Center that has got sole Agency for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 from IKECCF. Based on this considerations the improvements would be derived and the business on Inter-Korean exhange and cooperation would be activated.

This study has additionally suggested various points in order for improving the policies on the copyright towards N.K. and hoped for that these suggestions should not be simple proposals, but influenced to the legislative system and policy by lawmakers, policy working-level people etc. in the future.

[Keywords] Business on Inter-Korean Exhange and Cooperation,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urveys(FGI), Inter-Korean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Foundation(IKECCF), Inter-Korean Copyright Center, N.K. Office of Copyright Affairs, Yonhap News Agenc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남북문화교류는 전혀 없었으나, 1990년대 냉전체제 해체 분위기 속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해졌다. 남한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1년 북한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하였는데, 동 합의서 제16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9조 제5항에서는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북한이 상대방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실 1990년 이전에 북한 출판물은 국가보안법의 대상이어서 공식적으로 저작물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북한출판물을 중심으로 불법 영인이 관행처럼 이루어졌고, 특히 1988년 납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에 따라 이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남한 내에서 출판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남한 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중국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하여 복제 출판한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남북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다. 1990년대에는 북한저작물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월북 작가에 대한 저작권 소송으로 남북한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을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후 남한은 2004년 9월 24일 통일부 산하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북한저작물을 대리중개할 수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라 함)'을 설립하였다. 경문협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이라 한다)와 2005년 12월 31일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동 합의서 제2조에 따르면,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 희망자와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희망자에게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을 대리하여 경문협에게 포괄적 사전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북한 당국은 경문협의 중개로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 절차와 방법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제도적 범주 내에서 남북 저작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고, 남북 저작권 교류가 안정화되면서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저작물에 대한 남한 내 유통은 크게 줄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고, 연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내외 대북 정책이 변화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북한저작물의 교류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거나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이러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북 저작권 관련 정책의 재정비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일부가 승인한 '남북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27년 동안(1991년~2017년) 총 159건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1] 이 중 문화예술분야는 총 99건으로, 문화유산 23건, 문학 언어 6건, 시각예술 7건, 공연예술 20건, 문화산업 43건이었다. 이외에는 종교분야 11건, 체육분야 24건, 교육학술분야 12건, 기타 13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사업자를 사업 시기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남북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중에서 출판, 공연, 영상, 방송, 음악, 미술(전시회), 사진 저작물을 중심으로 등 사업 분야별로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경험하였거나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북한저작물의 이용 및 수요에 대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저작물의 직·간접적인 이용 및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에 따른 시장 수요에 따른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결과물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대북 정책 및 법제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물은 연구 진행 과정에서 북한저작권 관련 자문

1) 통일부「월간 남북교류동향」(2017년 7월호).

위원들과의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보고서에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재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기관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남북 저작권 교류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저작물 분야별로 기관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북한 관련 저작권 전문가들과의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기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남북 문화교류를 경험하였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기관 또는 사업체 중에서 특히 음악, 영화, 출판, 미술, 사진, 공연예술 분야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북한 뉴스를 이용하는 신문사(연합뉴스)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저작물 교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FGI 심층면접조사와 저작물 분야별로 설문조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북한저작물 이용 실태 및 현황을 포함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특히 시장에서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와 연합뉴스사에서 제공하는 문헌들을 조사 및 정리하였고, 대면/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대상자는 우선 2020년 10월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교류협력 사업 추진 개요, ② 상대 사업자 및 접촉 방식, ③ 북한저작물 유형별 이용횟수와 이용형태 등 사업 내용, ④ 북한저작물의 이용하려는 이유 ⑤ 북한저작물의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시기와 건수 ⑥ 북한저작물에 대한 사업 결과 및 성과, ⑦ 북한저작물의 향후 이용 의사, ⑧ 사업 추진상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 ⑨ 협력 교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거나 기획하고 있는 사업예정자에 대해서는 ① 북한저작물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② 북한저작물이 가지는 의미, ③ 북한저작물의 유형별 향후 이용 의사 ③ 북한저작물의 유형별 향후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이외에도 사업경험자와 사업예정자

에게 모두 북한저작물 교류에 관한 인식 및 정책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②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 여부, ③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재원활용방안, ④ 남북한 저작권 교류활성화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 남북한저작물 교류와 관련하여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대외비'라는 이름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을 꺼리는 기관이나 업체들도 상당 수 있어서 처음 계획하였던 업체나 기관들의 응답 숫자 보다 훨씬 적은 숫자들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렇다할지라도 설문조사에 응답을 한 총 46개의 기관 또는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시장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느꼈던 애로사항들 또는 개선할 사항들에 대한 정책제언을 한 내용들은 앞으로 정부가 대북 저작권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또한 앞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FGI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FGI 수행 결과

1. 개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자 총 6회의 전문가 FGI를 개최하였다. 표적집단은 각 저작권 분야(출판, 영화, 언론 등)별 산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진의 발제를 통한 핵심 논점 제시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 개최 현황은 이하의 〈표〉와 같다.

〈표 2-1〉 전문가 FGI 개최 현황

차수	일시	장소	표적집단
제1차	2020. 6. 17. 11:00~12:0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등록임치실	학계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
제2차	2020. 6. 17. 13:00~14:0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등록임치실	영화, 애니메이션 및 학계 전문가
제3차	2020. 6. 17. 15:00~16:0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록임치실	출판 및 경문협 전문가
제4차	2020. 6. 26. 10:30~11:30	언론 담당자 사무실	언론·뉴스 분야 전문가
제5차	2020. 6. 26. 13:00~14:00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의실	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제6차	2020. 6. 26. 14:00~15:00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의실	미술 분야 전문가

한편 연구진을 제외하고, FGI에 참가한 전문가 구성은 이하와 같다.

〈표 2-2〉 FGI 참가 전문가 현황

분야	소속	비고
학계	대학교 / 교수	제1차
문화콘텐츠	업계 / 사무총장	제1차

분야	소속	비고
문화콘텐츠(영화)	업계 / 대표	제2차
학계	대학교 / 교수	제2차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업계 / 사무국장	제2차
출판(협단체)	협회 / 담당자	제3차
재단	재단 / 전문가	제3차
출판(보상, 신탁)	협회 / 담당자	제3차
언론	언론계 / 담당자	제4차
언론	언론계 / 담당자	제4차
출판(보상, 신탁)	협회 / 담당자	제5차
학계	대학교 / 교수	제6차

2. FGI 수행 결과

(1) 제1차 FGI 수행 결과

제1차 FGI에서는 학계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남북 문화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표 2-3> 제1차 전문가 FGI 개요

○ 일 시 : 2020. 06. 17(수) 11:00 ~ 12:00
○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록임치실
○ 주 제 :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 동향 파악 및 인적 연결점 확보
○ 대 상 : 학계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

FGI 대상은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교수) 및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문화기획자)로 구성되었으며, 이하의 표와 같다.

<표 2-4> 제1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소속	직책	분야	비고
학계 / 교수		통일인문학	표적집단
업계 / 사무총장		문화콘텐츠교류·기획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위원회	

소속	직책	분야	비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임		
조선대학교	교수	연구진	
중앙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박사		
조선대학교	연구원		
중앙대학교	연구원		

제1차 FGI에서는 연구진의 발제를 통해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 동향 파악”이라는 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각 참석자의 자유 토론을 통해 면접이 개시되었다.[2)]

> *과거 월북자 저작권 “조혜령”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서로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한에서 어학연구 관련된 책을 발간하는 남측의 사람들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책을 발간하기 위해 중국의 조선족을 통해 북측에 저작권료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가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등의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학계 전문가)*

위와 같은 분쟁사례에 관한 의견 외에도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허락 방식, 즉 “직접 만나서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는 이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정확하게 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자면, 홍석중 선생님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이후에 북측에 약 10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 가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구조가 많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여기저기서 저작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

2) 전문가 의견은 발언의 취지를 살리되 일부 표현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이하 같다.

된 문제가 쟁점이 되어 진행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학계 전문가)

한편, 2006년 경문협 출범 이후에 남북 간 저작물 교류·협력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개선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 또한 존재했다.

2006년, 경문협이 있기 이전에는 정말 각개전파라는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각개전파로 진행하고 했습니다. 또한 경문협이 생긴후, 북측에 민화협이 생겨서 그나마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문협이 진행하고, 북측에서는 민화협이 진행하면서도 솔직하게 정말 조금 나아졌지 크게 좋아진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남북방송인교류협회(2006년)가 출범했는데, 이 협회는 금강산에서 방송국간의(금강산회의) 교류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회의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남북 간에 사고 팔고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EBS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학계 전문가)

방송의 경우 공식적인 라인이 없었기에 중국의 조선족과 일본의 총련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전문가)

한편,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에 따른 사업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의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사업성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북 문화교류협력은 가치지향적으로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가성 자금을 북측에 너무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또 헌법적 관점에서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정상적 사업거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 영화, 음반 등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문화콘텐츠 전문가)

관련해서 저도 사업적으로는 많이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영화도 출품하고,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고구려역사(출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

점들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업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상업성 보다는 학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학계 전문가)

남북협력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그 절차에 관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후에 정산처리가 너무 크고 불용되는 예산도 많기에 실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문화콘텐츠 전문가)

통계적으로도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통일부 측에서는 직접, 간접을 구분하지 않고 교류협력사업이 되면 모두 1건으로 통계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계 전문가)

나아가 영화산업에서의 배급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그밖에 경문협 차원의 무료공연 등 협조요청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문협의 포괄적 대리에 관한 권한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저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급권이 해외에서 있다면 배급권자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북측의 저작물에 대한 배급권자가 홍콩이나 미국에 있다면요. 이처럼 남북간의 직접적 배급권을 사고 파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중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문협은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남북저작권센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무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으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화콘텐츠 전문가)

북한의 저작권법상 무료공연도 있고 많은데 조금 이렇게 협조요청도 해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상에 대한 포괄적대리는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학계 전문가)

남북 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상업적 가치보다는 가치지향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남한의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 *북한이 지식재산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시장의 규모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미약하고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학계 전문가)*

> *북한도 가치지향적으로 보고 있는데 남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문화콘텐츠 전문가)*

> *문화예술가들은 경제적인 욕구말고 가치지향적으로 보는 점이 큽니다. 또한, 북한에서 남한노래를 불렀을 때 남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 지자체들이 남북사업을 하고 싶어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부가적인 창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학계 전문가)*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통계자료가 있으나 그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통계자료는) 문광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너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사용되는 사진 2장이나, 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 등을 위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해야하는가 의문은 있습니다.(학계 전문가)*

> *제일 많이 교류가 될 것은 음악이라고 보이며,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 혹은 남북이 합작한 신탁관리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민간이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엄연히 정부 간의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화콘텐츠 전문가)*

(2) 제2차 FGI 수행 결과

제2차 FGI에서는 학계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남북 문화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표 2-5> 제2차 전문가 FGI 개요

○ 일 시 : 2020. 06. 17(수) 13:00 ~ 14:00 ○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록임치실 ○ 주 제 :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 동향 파악 및 인적 연결점 확보

FGI 대상은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 산업계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하의 표와 같다.

<표 2-6> 제2차 전문가 FGI 참석자현황

소속	직위	분야	비고
업계 / 대표		문화콘텐츠(영화)	표적집단
학계 / 교수		통일(학계)	
업계 / 사무국장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임		
조선대학교	교수	연구진	
중앙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박사		
조선대학교	연구원		
중앙대학교	연구원		

제2차 FGI에서는 연구진의 발제를 통해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 동향 파악”이라는 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각 참석자의 자유 토론을 통해 면접이 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영화 ‘황진이’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쪽의 사람이 가서 영화허락을 받아왔습니다. 흥행은 별로 안되었으나, 북측의 저작권을 구입해서 개봉까지 시킨 유일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영화 ‘불가사리’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북한 영화에 대한 판권을 일본 사업자

로부터 사왔습니다. 이 영화도 흥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부천 영화제. 평창영화제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8년도) 통일부 및 국정원의 협조를 통하여 장관의 허락을 득한 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업적 성공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영화분야 전문가)

북한저작물에 대해서는 예비사업자의 경우나 제작자 입장에서 쉽게 접근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북한 영화를 배급하려는 이유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남북화합"이 꼽혔다. 한편, 북한 영화는 남한의 영화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사실 배급이나 유통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상업성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화합을 위해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구요. 일반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영화의 배급과 관련하여 실사영화가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 상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영화에 한정해서 바라보았을 때 남쪽 사고방식, 자본주의 접근을 하시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측에서 만드는 영화의 대부분은 선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영화를 만드는 것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은 예술 및 상업성에 따라 만들기에 북측과 접근이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영화분야 전문가)

따라서 향후의 남한과 북한의 공동기획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동기획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테마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영화분야 전문가)

상업적 개봉은 영화 '불가사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일반 개봉을 통해 수익을 얻기 힘든 것이 북한 영화의 현실입니다. 또한 저작권료 상당히 복잡합니다. 덧붙혀서, 북쪽에서 남한 저작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에서도 뉴스나 여러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문제나 말씀해주신 상업적 이슈는 국가보안법 시행령

등과 정치적 이슈가 혼재되어 있기에 이 부분 고려를 해줘야 할 듯 합니다.(학계 전문가)

그 밖에도 노래방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경우,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애니메이션은 해당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공동합작했던 작품은 '뽀로로'와 '황후심청' 정도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합작에서의 공동제작의 개념은 외주나 하청작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제작되는 작품의 단가는 저렴하지만 그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도 높고, 특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같다 보니 국내제작사들이 북한과 작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진행 중인 작품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하청작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애니메이션 창작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수 외에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가지고 올수도 없을뿐더러 남북교류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공동기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동제작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제재를 받기에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애니메이션 관련 협·단체 전문가)

KT나 SK에서 정치적인 이슈에서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지 못한 이유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해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버리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일하는 분들을 개성으로 오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학계 전문가)

한편, 북한자료 활용에 대한 촉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북한자료는 특수자료라고 해서 정해진 단체, 정해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촉진 기반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영화분야 전문가)

(3) 제3차 FGI 수행 결과

제3차 FGI에서는 출판 분야 전문가 및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표 2-7> 제3차 전문가 FGI 개요

○ 일 시 : 2020. 06. 17(수) 15:00 ~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록임치실 ○ 주 제 :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 동향 파악 및 인적 연결점 확보

FGI 대상은 출판 분야 전문가 2인 및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하의 표와 같다.

<표 2-8> 제3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소속	직위	분야	비고
협회 / 담당자		출판분야 전문가	표적집단
협회 / 담당자		출판분야 전문가	
재단 / 전문가		경문협 전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임		
조선대학교	교수	연구진	
중앙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박사		
조선대학교	연구원		
중앙대학교	연구원		

제3차 FGI에서는 연구진의 발제를 통해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 동향 파악”이라는 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각 참석자의 자유 토론을 통해 면접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북한저작물은 도서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22명 정도의 저작물이 현재 이용되었거나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고서나 문제집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 경문협쪽에서 징수 위임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판 업계에서는 북한저작물에 대해서 허락을 득하지 않고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분이 남측에 있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고 있으나, 재북작가의 경우 그냥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트를 찾아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여서 소송까지 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출판 분야 전문가)

한편, 경문협 출범 이전에는 북한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엄밀히 따지면 무단출판으로 '임꺽정'을 출판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냥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작물을 중국 연변이나 알음알음 책을 찾아서 보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북경에서 진행되는 북경도서전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도서전에 나오게 되는데 암암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저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 이후 남측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다소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화협이 생긴 것이구요. 2000년도 초 임꺽정으로 인하여 쓴 저작권료를 약 1억 5천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8년~1989년 대운닷컴이라는 곳에서 '황진이'라는 문학작품을 들여온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계약을 통해 들여왔습니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는 약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통일부나 사전 접촉승인을 통해 해야되는데 저작자는 찾기가 어렵고 북측의 저작권 대리업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나 방법이 어려움이 많아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북측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출판 분야 전문가)

(4) 제4차 FGI 수행 결과

제4차 FGI에서는 언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표 2-9> 제4차 전문가 FGI 개요

○ 일 시 : 2020. 06. 26(금) 10:30 ~ 11:30 ○ 장 소 : 언론·뉴스 업계 담당자 사무실 ○ 주 제 : 뉴스 저작물 이용실태 파악

FGI 대상은 언론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하의 표와 같다.

<표 2-10> 제4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소속	직위	분야	비고
언론계 / 담당자		언론 분야 전문가	표적집단
언론계 / 담당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실장	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임		
조선대학교	교수	연구진	
인하대학교	박사		

제4차 FGI에서는 언론·뉴스 분야의 북한저작물 관련 시장 수요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실체적 정보 접근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최근 연합뉴스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북한의 노동신문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노동신문의 배포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현재도 동일한 상황임을 밝혔다. 다만 동 사안은 저작권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 *노동신문을 대응해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PDF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PDF는 화질이 선명하니, 그걸 서비스 받으려고 애시당초 일본의 조선미디어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DF 파일 서비스 계약을 성사했는데, 계약 종료 전 국내 다른 뉴스통신사가 중간에 파고 들어서 돈을 더 주고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기관지로서 선전매체이기 때문에 인용보도라든지, 남쪽에 알리고*

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안정된 교류질서입니다. 본래 계약했던 금액이 있는데, 3배를 다른 뉴스기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본래의 수준으로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였고, 금액 수준에 맞춰 계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취지에 입각해 보면,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였는데, 다른 뉴스 기관에서 계약금액을 3배를 제시해서 사업권을 가로채 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계약서를 제출했다 해도 이면계약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계약 승인이 난 것입니다.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처음 현대 아산에서 했는데, 후발로 롯데가 추진하고, 롯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유사하게 3배 가격 제시하고, 사업권을 따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것은 교류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상황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저작권 성립이 되려면 상호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코리아메디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총련 계열 회사(대행사)가 개입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본래 계약 중인 뉴스사와 또 다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코리아메디아는 노동신문 pdf 파일을, 조선중앙통신은 또 다른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가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연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저작물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차후 통계를 통해 정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우선적으로는 사진이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사진이겠죠. 나머지는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던 것을 인용보도하는 것

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빈도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북한은 교류를 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제가 알기로는 그 뉴스사의 글로벌전략팀에서 북한 매체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전세계 78개국 90개사랑 뉴스 교류를 하고 있으며 북한매체는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조선중앙TV도 여기서 하는데, 다만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AP, 로이터, AFP 등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계약 할 때 특별히 애로사항 없고,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연간 계약 건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계약 방식임을 밝혔다.

통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우리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쓰라며 전체를 다 주는 것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피드방식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사진, 실시간으로 업로드 시켜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그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쓰는 개념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연합뉴스 기사를 신문사 등 국내 매체들이 통째로 다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재계약인데, 전재라는 게 '그대로 옮겨 싣는다'라는 뜻인데, 우리 컨텐츠 통으로 연간 계약해서 필요한 것은 갖다 쓰는 것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계약 시 계약 주체별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 주체별로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중개에 대해서는 경문협과 일본 조선통신사 등이 대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조선중앙TV는 경문협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조선통신사에서 중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현재 두 개 매체만 하고 있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연합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콘텐츠를 받는 것입니다. 북한 대표 뉴스통신사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한편 조선중앙TV를 이용할 때 이용료는 경문협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스사 뿐만이 아닌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였다.

KBS 등 방송사는 경문협을 통해 조선중앙TV 영상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한편 경문협에 제공되는 저작권료는 비공개임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한 내에서의 국내 뉴스 이용실태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뉴스 차원에서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저희도 확인할 방법 없는데, 예를 들어 그쪽 사람들과 계약 갱신하고 이럴 때, 가끔 전화통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뉴스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런 정도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그쪽은 선전매체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갖다 쓰지는 못하는 거죠.(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참고로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권역에 있는 뉴스통신사들이 모인 기구인데, 연합뉴스가 현재 의장사입니다.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회원사들이 뉴스를 올리고 콘텐츠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회원사이며 거기서 뉴스 교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 러시아 타스, 일본 교토, 44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한편 북한 관련 자료는 특수자료 취급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북한 관련 자료는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서만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개념이 아니라 특수자료로 다뤄집니다. 당국에서 실사도 하고.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중에는 통일부 쪽에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참여 전문가들은 연합뉴스사가 20년 가까이 조선중앙통신과 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저작권 분야에서의 분쟁은 없었으나 쟁점이 되었던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벤트"성 교류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밝혔다.

과거 사장이 방북하여 조선중앙통신과의 교류가 성사되었는데, 북한에서 개최한 고구려 고분벽화와 관련 전시회를 조선중앙통신, 교토 일본통신 및 연합뉴스가 함께 한 바 있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이러한 경우 기존 뉴스보도계약 외의 특별한 계약은 없었고, 그 때는 상황이 교류활성화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랑 조선중앙통신만 한 게 아니고, 일본 교도통신도 같이 하였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한편 북한 뉴스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행료는 북한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대행 주체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행료를 일본의 대행사인 조선통신사에 주는 것입니다. 북한하고는 직접 돈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중앙통신의 대행사가 조선통신사인데, 그 회사는 연합뉴스만 거래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AP, 로이터, 전 세계 뉴스 통신사와 다 계약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다만 AP라든지 전 세계를 파악하고 있는 통신사들, 인터내셔널 통신사들은 자기들이 엄청나게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장사를 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필요하니 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국가 뉴스통신사 기관하고는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며 돈은 오가지 않습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국내 저작권법상 사실 전달에 불과하여 보호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보도내용에 대한 코멘트나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북한 뉴스 이용 시 이러한 고려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 *뉴스 저작권은 국내에서도 명확하게 하지도 않지만, 북한하고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이 남북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선언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지 저작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진 정도가 명확하고, 나머지는 다 인용보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선중앙TV 영상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 저작권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국내에서의 북한 뉴스 수요에 관해서는 영상 및 사진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통해 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북한 영상과 사진을 중심으로 하고, 북한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 고관들이 발언한 내용이라거나 성명같은 것들 또는 위성사진을 통한 핵시설 변화 및 북한 내 보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기사를 주로 씁니다. 예컨대 북한 총참모장이 어느 날 갑자기 별 4개에서 2개로 떨어진다면, 이는 모니터링 했던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변화가 있다, 권력서열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어서 여기 있는 저작권을 딱 갖다 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북한뉴스라는 것은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이런데 소스 통해 국내에 뉴스가 공급되는 것이고, 그 외 모니터링, 북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외교관 발언 등등이 국내 뉴스로 반영되는 한 갈래가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 경문협에서 조선중앙TV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사진, 영상,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위탁업무를 일임받았기 때문에 자료는 경문협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연합뉴스에서 북한 자료의 인용에 관한 통계는 워낙 방대하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기사가 연간 몇 건 정도 되는가"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 그

건수 정도는 연구목적으로 제공이 가능함을 밝혔다. 한편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협력은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북한 노동신문 전재계약에 관해서는 이하와 같이 밝혔다.

> *개별적으로 한 장에 얼마 쓰는 건 아니고, 국내 다른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나 뉴스1도 전재계약 맺고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전재계약을 맺고 있으면 다 갖다 씁니다.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언론·뉴스분야 전문가)*

한편 "통일출범관련 북한저작물 사용 협력 의향서(2018)"의 배경에 관해서는 연합뉴스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5) 제5차 FGI 수행 결과

제5차 FGI에서는 출판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표 2-11> 제5차 전문가 FGI 개요

○ 일 시 : 2020. 06. 26(금) 13:00 ~ 14:00 ○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회의실 ○ 주 제 : 협회의 북한저작물 관리현황 검토

FGI 대상은 협회의 전문가 1인이며, 참석자는 이하와 같다.

<표 2-12> 제5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소속	직위	분야	비고
협회 / 담당자		출판분야 전문가	표적집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발주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임		
조선대학교	교수	연구진	
인하대학교	박사		
중앙대학교	연구원		

제5차 FGI에서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북한저작물 관련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북한저작물 공탁대상은 북한 저작권관리사무소에서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경문협한테 지급합니다. 경문협에서는 정치상황이 그러니까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하지 못하고, 공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저작물, 즉 남한 쪽에 별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유족이 없는 경우는 협회가 미분배 보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5조에 따라 일정 부분 유보금 두고, 그 외의 것들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이와 같은 위임받은 저작물 목록은 경문협과 복전협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위임받은 저작물 리스트는) 저희도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 있는 유족들 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백석 시인 작품이 많으며, 그 다음 홍명희, 현덕, 이기영, 그 외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태준 작가 것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태준 작가는 초기에는 위임받았다고 해서 분배했었는데, 나중에 서류가 증빙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은 분배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교과서 수업지원 목적이며, 백석, 현덕, 홍명희, 한설애 작가 이런 분들 작품이 많이 사용됩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한편, 연구진은 FGI 수행에 앞서 전문가로부터 보상금 관리내용 관련 자료를 일부 전달받은 바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북작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위의 작가들”이라는 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리자료는 경문협 보상금 대상 저작물과 복전협 미분배 대상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미분배 보상금에 관해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보상금은 저희가 더 받아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저희가 문예협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시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작권료가 많은 작품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로, 현재 남한에 있는 박태원 작가의 차남이 해당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소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과용도서

기준은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참고서, 문제집의 경우 보상금이 아닌 사용료인데, 문예협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경문협 위임 저작권료는 20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경문협의 대리권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리중개"로 보고 있으나 법률적 개념의 대리중개업자는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경문협이 북한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리중개라고 하지만, 법적인 개념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징수위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닐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남한 내에서 이용허락을 해주는 그런 권리를 준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용허락과 함께 징수의 권리를 받았다면, 또 그 징수의 범위가 남한 내 모든 이용에 관한 징수의 권리라면, 그 징수라는 것이 보상금이 됐든, 이용허락이 되었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편 출판사도 대리중개 하는 경우 있습니다. 확인서, 징수위임서 이런 것들을 다 증빙을 모두 하고, 지급확인서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 주체는 아니고, 보상금 분배를 해주는 것들은, 보상금이 됐든 이용허락이 됐든, 저희는 경문협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주체가 남북저작권센터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보상금 산정시의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유한 자료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기천 작가 '휘파람' 정도입니다. 남한 내 작가 저작물은 확인이 가능하며, 북한 내 저작물은 보호기간을 적용하는데, 위키디피아 아니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보면 적어도 생물연대가 나와 있는 저작물들은 확인이 가능입니다. 다만 조기천 작가는 2012년도만 분배하고, 그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는 검색이 가능한

것은 거의 확인하며, 우리가 보유한 리스트 내에서 스크린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생물연대가 나와 있는 것 있는데, 예컨대 백석시인은 1996년도인가 돌아가셨다고 나옵니다. 다만, 지난 20년 동안 활동이 없다가 최근에 이름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경문협 쪽에 요청하는 것은 경문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 것들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경문협이 가지고 있고, 살아 있는 것은 다 파악이 가능한 것이며, 1962년 이전 것들은 대상도 없고, 그것은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산정 자체를 안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 (산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사회과학원, 북한우정국에서 나온 것은 우표는 2008년도에 나온 것이고, 북한사회과학원은 196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저작권은 살아있는 것은 산정, 그 외에 것들은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출판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용허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닌 것이고" 하면서 나름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소송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가 3월에 나오면 참고서는 2월에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저작물을 싣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일부 대형 출판사 들은 사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출판사들은 참고서를 학기 개학 전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받자니 시간이 없고, 이용허락 받으면 한 학기 지나갑니다. 그러니 무조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 대리중개업체가 변호사 선임해서, 출판사에 소송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저작물 1건 사용했는데,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수록되어 있는 시, 예를 들어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이나,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있으면 무조건 참고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대학교재는 학습교재와 달리 북한저작물의 이용이 적어 학습교재 발행 출판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시중에 대리중개를 하는 출판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대표가 작가인데, 이 분이 교과서 수록된 작가들을 몇몇을 모았습니다. 과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소송당한 적이 있어서,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런 부분이 권리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전허락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연계 저작물은 교과용도서 보상금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한편 출판산업 현실과 법리의 괴리가 지적되었다.

복전협은 교과서, 참고서, 학원 강의교재 등에 대해서 저작물 신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리와 현실적인 것이 괴리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교과서 수록되면 3년 동안 계속 실립니다. 즉, 저작물을 빼고 넣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서 만드는 입장에서는 계속 수록해야 합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전문가로부터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보상금 규모에 대한 관련 저작물/이용허락 건수, 참고서 및 교과서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수 등의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 밖에도 교과서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규모와 참고서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금액 비율이 3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상금이 아주 낮습니다. 3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보상금은 복전협 보상금 규정, 저작권 이용료는 문예협 저작권 사용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문예협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너무 낮은 편입니다. 교과용 도서 보상금은 보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수업지원목적은 포괄 징수(학생 1인당 250만 원)합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교육청에 수록되어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5만 건이 나왔다

면, 보통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징수 규모가 13~14억 정도입니다. 현재는 학생수가 줄어드니 보상금 규모 또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종 5만 건이 나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저작물 등 분류별로 정리하며, 최종 2만 건이 나왔다면 그걸 종류별로 나눕니다. 종류별로 어문/음악/미술/영상 나누고, 저작물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한곡 3만원, 음원 2만원, 이미지 한 컷당 만원입니다. 결정되면 이용량 따라 산정하고, 10건 이용하면, 어문은 1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산정됩니다. 한편 이러한 기준으로 북한저작물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대학의 수업목적 징수/분배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은 수업목적으로 분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수업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목적의 경우는 대학에서 실태조사에서 대학교재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수조사 하는 게 아니라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학과, 정치외교학과는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1년에 80개 대학을 계열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용자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 대학규모별, 학생수 별로 분류합니다. 전수조사는 학과, 대학이 많다는 점에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한편 복전협의 전체적 보상 징수 규모는 문예협보다 많은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보상금은 저희가 수령하는 것입니다. 문예협 회원이더라도 저희가 징수해서 문예협에 주는 것입니다. 문예협에 신탁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문예협에 지급하는 거고, 문예협에 신탁이 안되어 있으면, 작가나 유족에게 직접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북한저작물의 국내 교과서 이용 수요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수요는 있는데, 남북경협 관리저작물 외에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설의 경우 교과서에 실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규정”을 꼽았다.

교육커리큘럼상 몇 년대의 단편을 몇 편 게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집필규정상 "저항시인, 청록파 시인의 작품 수록"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계신 지식인들 중 북한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백석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교과서에서 북한저작물이 실리는 건 국어교과서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교과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사진 컷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어문·출판 분야 전문가)

(6) 제6차 FGI 수행 결과

제6차 FGI에서는 출판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표 2-13> 제6차 전문가 FGI 개요

○ 일 시 : 2020. 06. 26(금) 14:00 ~ 15:00 ○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회의실 ○ 주 제 : 북한저작물 중 미술관련 분야 검토

FGI 대상은 대학의 전문가 1인이며, 참석자는 이하와 같다.

<표 2-14> 제6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소속	직위	분야	비고
학계 / 교수		학계 (미술)	표적집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발주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임		
조선대학교	교수	연구진	
인하대학교	박사		
중앙대학교	연구원		

제6차 FGI에서는 북한저작물 관련 내용 중 미술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미술 분야에서 북한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사업을 한 사업경험자들이 거의 드물며 현재 분단 이후에 북한 미술작품이 전시된 적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계 전문가)

2019년 학고재 갤러리에서 『번월룡 전(展)』이 개최된 것을 제외하면 북한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북한 미술품이 전시가 된 적은 드물다고 답변을 하였다.

> *북한 미술작품들이 국내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기증받은 소장 작품을 전시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여를 받아 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술품 자체가 미술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북한 미술품의 사업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개인 취향으로 수집 후 전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학계 전문가)*

북한 미술작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기증을 받거나 제3자를 통하여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사업성 또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을 하였다.

> *북한 미술작품들의 구매와 희소성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구매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희소성이 높다고 해서 꼭 그 미술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희소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북한 미술은 애호가들의 취미적 관심이지 상업적으로 거래가 되는 부분은 아직 드물다고 보여집니다.(학계 전문가)*

북한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장수요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은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전문가들의 견해와 비슷하게 중국(조선족) 또는 제3자를 통해 북한저작물 이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대체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가 없어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FGI 수행 결과 요약

본 연구를 위해 총 다섯 차례의 FGI를 수행했다. FGI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서는 북한저작물 이용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북한저작물 이용 절차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했으며, 북한 관련자료는 특수자료 취급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했다. 즉, 자료의 특수성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고, 이용절차가 복잡하여 북한저작물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둘째, 북한저작물의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업성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일부 사업자에게서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즉, 국내에서 북한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FGI 결과에서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 출판, 음악, 미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저작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저작물 이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야별로 북한저작물이 이용되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음악분야에 있어서는 노래방, 방송 등에서 북한 음악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저작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미술 분야의 경우, 북한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 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미술 분야는 중국(조선족) 또는 제3자를 통해 북한저작물을 이용계약하는 사례가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판분야의 경우, 비교적 활발하게 북한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로 교과서에서 북한저작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도 북한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북한저작물 사용이 다른 분야보다 활발한 만큼 분쟁 사례들도 다른 저작물 분야보다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언론분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제계약을 맺고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의 언론 정보를 남한 및 국외에 전달하기 위한 수준의 정보 교류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나아가 북한 언론은 선전매체이며 북한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음악, 미술, 출판, 언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사실 전달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경문협이 출범되기 이전에는 북한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

고, 이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조선족) 또는 제3자를 통해 북한저작물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0년도 초 임꺽정, 1988~1989년 대운닷컴이 들여온 소설 '황진이' 등이 그러하다. 경문협이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한 대리중개업을 한 이후로 이런 경우는 다소 줄었지만, 일부 사업체의 경우 여전히 북한저작물을 허가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경문협 출범 이후에 남북 간 저작물 교류협력 환경이 상당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있는 것을 볼 때, 경문협의 역할 및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국(조선족) 또는 제3자를 통해 북한저작물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다만,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무단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 및 방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만일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일정한 제재 또는 합법적인 절차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경문협은 국내 대리중개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의 개념의 모호한 점이 지적되었다. 경문협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 경문협에게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을 부여한 합의서에서, 경문협은 포괄적 사전협상권한 내에서 남측 출판사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서를 북측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중개업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 관련 인식과 관련하여 사업경험자들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및 지원 통계방식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언론분야 조사

1. 개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 저작권 분야의 남북교류사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분야에서 북한저작물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적집단은 언론분야 중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연합뉴스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북한의 노동신문 등과 오랜기간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간별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우선 연합뉴스 포털에서 검색어 “북한” 관련된 기사만을 수집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저작물이 업로드된 부분만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i) 2017년 1월~3월, ii) 2017년 8월~11월, iii) 2018년 3년~9월, iv) 2019년 10월~2020년 9월이다.

조사기간 중, i)과 ii)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2007. 06. 15)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다. 남북한 두 정상은 2007년 10월 4일, 8개 항목과 2개의 별도 항목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선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북한의 사진저작물이 포함된 뉴스기사들을 검색하여 서로 상이한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기간 중, iii)과 관련해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2018. 04. 27) 및 “9·19 선언”(2018. 09. 19)에서의 뉴스 기사 내용을 2007년 남북공동선언과의 상이한 점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진저작물이 포함된 뉴스기사들을 검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iv)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사진저작물이 포함된 뉴스기사들을 검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과 이후

(1) 1차 조사기간 (2017. 01. 01 ~ 2017. 03. 03)

본 연구팀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북한저작물의 이용현황을 조사하였고, 총 11개의 북한매체에서 994개의 기사를 배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저작물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배포된 총 994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여부는 994개중 994개(10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여부는 994개중 980개(약 98%), 저작물 유형으로는 사진 저작물이 994개중 994개(100%)이다.

이 조사 결과, 연합뉴스에서 북한저작물은 모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3자가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사진저작물을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약 98%로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 사진저작물들은 주로 조선중앙통신(500건)이었고, 그 다음이 조선중앙TV(252건), 노동신문(102건)의 순이었다.

〈표 2-15〉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류경	조선중앙통신
금강산	내나라	정일봉상 국제송악콩클	우리민족끼리 TV
북한대사관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출처표시 없음	
총 11개 매체			

〈표 2-16〉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별 해당 건수					
조선중앙통신	500	조선중앙TV	252	노동신문	102
우리민족끼리	3	류경	1	내나라	1
북한대사관홈페이지	2	우리민족끼리 TV	3	금강산	1
출처표시 없음	124				
총 944건					

(2) 2차 조사기간 (2017. 08. 01 ~ 2017. 11. 30)

본 연구팀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총 4개월 동안 북한저작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3개의 북한매체에서 1,308개의 기사를 배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저작물에 대한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총 1,308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여부는 1,308개중 1,304개(약 9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여부는 1,308개중 1,308개(100%), 저작물 유형으로는 사진저작물이 1,308개중 1,308개(100%)였다.

상기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합뉴스에서 북한저작물은 모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제3자가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사진저작물을 모두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 사진저작물들은 주로 조선중앙통신(811건)이었고, 그 다음이 노동신문(209건), 조선중앙TV(173건)의 순이었다.

〈표 2-17〉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			
노동신문	북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평양과기대	조선중앙통신
메아리	조선신보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TV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방송
출처표시 없음			
총 13개 매체			

〈표 2-18〉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별 해당 건수					
조선중앙통신	811	조선중앙TV	173	노동신문	209
조선신보	73	북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1	조선의오늘	3
평양과기대	1	우리민족끼리 TV	12	조선중앙방송	14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	1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	7	메아리	1
출처표시 없음	2				
총 1,308건					

3. 2018년도 판문점선언 전후

(1) 3차 조사기간 (2018. 03. 01 ~ 2018. 09. 30)

본 연구팀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총 7개월 동안 북한저작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의 북한매체에서 2,597개의 기사를 배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저작물에 대한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총 2,597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여부는 2,597개 중 2,597개(10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여부는 2,597개 중 10개(약 0.3%), 저작물 유형으로는 사진저작물이 2,597개 중 2,597개(100%)였다.

상기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합뉴스에서 북한저작물은 모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제3자가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사진저작물들의 출처는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이고(1,698건), 그 다음이 노동신문(472건), 조선중앙TV(395건)의 순이었다.

〈표 2-19〉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			
교도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조선관광	조선신보	조선의오늘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중앙TV		
총 10개 매체			

〈표 2-20〉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별 해당 건수					
교도통신	5	노동신문	472	연합뉴스	3
우리민족끼리	5	조선관광	8	조선신보	4
조선의오늘	2	조선중앙TV	395	조선중앙통신	1698
중앙TV	5	총 2,597건			

4. 조사연구 현재 시점

(1) 4차 조사기간 (2019. 09. 26 ~ 2020. 09. 26)

본 연구팀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북한저작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26개의 북한매체에서 3,376개의 기사를 배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저작물에 대한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총 3,376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여부는 3,376개 중 1개(약 0.0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여부는 3,376개 중 905개(약 26.8%), 저작물 유형으로는 사진저작물이 3,376개(100%)였다.

상기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합뉴스에서 북한저작물은 모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 조사기간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를 표시한 경우는 총 3,376개 중에서 1개 밖에 없었고,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도 총 3,376개 중 905개이었다. 이는 1차부터 3차까지의 조사기간 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로, 특히 4차 조사기간에서 북한의 사진저작물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를 거의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단순히 홈페이지 조사결과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북한의 사진저작물들의 출처는 여전히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이고(1,276건), 그 다음이 조선중앙TV(1,186건), 노동신문(628건)의 순이었다. 이는 1차부터 3차까지의 조사기간 동안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1>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			
노동신문	교도 통신	평양 교도	조선중앙통신
금강산	금수강산	김일성종합대학	내나라
류경	메아리	북한 금강산	북한 조선관광
서광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 TV
월간지 금수강산	인민보건	조선관광	조선신보
통일신보	중앙통신	중앙TV	조선중앙TV
조선의 소리	조선의 오늘		
총 26개 매체			

<표 2-22>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연합뉴스 '북한저작물' 사진 출처별 해당 건수					
노동신문	628	메아리	32	조선관광	1
금강산	4	연합뉴스	21	중앙TV	3
류경	4	인민보건	2	조선중앙통신	1,276
서광	16	중앙통신	17	내나라	1
월간지 금수강산	2	조선의 오늘	67	북한 조선관광	36
통일신보	1	평양 교도	8	우리민족끼리 TV	13
조선의 소리	1	김일성종합대학	2	조선신보	28
교도 통신	6	북한 금강산	3	조선중앙TV	1,186
금수강산	1	우리민족끼리	2	출처표시 없음	15
총 3,376건					

5. 소결

본 연구진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총 4회의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연합뉴스는 북한매체를 통한 북한저작물의 유형 중에서 모두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였고, 북한매체는 주로 조선중앙통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결과, 1차, 2차 및 3차 조사기간 중에는 북한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표시를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요구하였으나, 4차 조사기간에서는 이러한 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홈페이지 조사결과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만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1차와 2차 조사기간에는 거의 100%였으나, 판문점 선언 이후인 3차 조사기간부터는 거의 이러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목적 및 대상

본 조사의 목적은 남북 저작권 국내시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에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남북문화교류협력 경험 및 실태', '북한저작물 이용실태 및 욕구', '남북한 저작권 교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총 46개 기관으로, 분야별로는 영상·방송 8개, 출판 12개, 공연·음악 12개, 미술·사진 등 10개 기관이 조사에 응하였다.

〈표 3-1〉 조사대상의 특성

구분		전체	
		N	(%)
전체		46	100.0
분야	영상 · 방송	8	17.4
	출판	12	26.1
	공연 · 음악	16	34.8
	미술 · 사진 등	10	21.7
직위	임원	11	23.9
	중간관리자	22	47.8
	평사원	13	28.3
경력	5년 미만	13	28.3
	5년 이상-10년 미만	8	17.4
	10년 이상-20년 미만	10	21.7
	20년 이상-25년 미만	10	21.7
	25년 이상	5	10.9

2. 조사내용

본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조사내용

구분	
남북문화교류 협력 경험 및 실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실시 경험 여부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목적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여부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건수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방식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
남북문화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계획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여부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
	저작권료 계약 예정 여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향후 추진의향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향
북한저작물 이용실태 : 북한저작물 이용경험자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여부
	북한저작물별 유형별 이용비율,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북한저작물 활용 주요 이유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여부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시기 및 건수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경로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시 어려웠던 점
	북한저작물 승인 받은 권리
	북한저작물을 통한 사업 수익 여부 및 수익 발생 경로
	북한저작물 전담조직에 대한 의견
	북한저작물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
북한저작물 이용 욕구: 북한 저작물 이용경험 없는 사업자	북한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북한저작물이 갖는 적절한 의미
	북한저작물 유형별 향후 이용 의사 및 목적
남북한 저작권 교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에 대한 의견
	남북한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
	남북한저작물 교류와 관련한 정책적 건의사항

3. 조사절차

본 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응답이 편리한 곳은 이메일로 응답받았다.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조사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설문은 국내 영화제 총 23개 기관, 국내 연극제 총 17개 기관, 음원서비스 기관 9개 기관, 출판·언론사 중 북한저작물과 관련한 분쟁 사례기관 10개 기관, 공연예술, 영화, 방송, 연극, 미술 저작물 유관 기관·단체 16개 기관, 언론 출판, 사진, 음악 유관 기관 · 단체 32개 기관이었다. 2차 설문은 전국 예술회관 29개 기관, 공연 제작사 70개 기관, 미술관 30개 기관, 영화제작사 100개 기관, 출판사 100개 기관, 신문기자 통해 신문사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약 440개 이상의 기관과 접촉하였으나, 이 중 10% 정도가 회수되어 최종적으로 46부를 가지고 설문을 분석하였다.

설문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추정된다. 우선, 북한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기관 자체가 많았고,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코로나 상황으로 폐업, 재택근무하는 곳이 많아서 제대로 연락이 안되는 기관들도 많았다. 특히, 공연, 영상 분야 등은 폐업하고 연락이 안되는 곳이 다수였다. 기관별로 2~3차례 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률을 높이기 어려워 최종 46부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21.0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북문화교류협력 경험 및 실태', '북한저작물 이용실태 및 욕구', '남북한 저작권 교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로 빈도 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일부 문항들에 한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남북문화교류협력 경험 및 실태

(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실시 경험 여부

조사대상자 중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경험해 본 사업체는 13.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상·방송분야 중에서는 3개(37.5%), 공연 분야 중에서는 1개(12.5%), 미술·사진 등에서는 1개(10.0%) 사업체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3-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실시 경험 여부

구분		전체		있음		없음	
		N	(%)	N	(%)	N	(%)
전체		46	(100.0)	6	(13.0)	40	(87.0)
분야	영상 · 방송	8	(100.0)	3	(37.5)	5	(62.5)
	출판	12	(100.0)	0	(0.0)	12	(100.0)
	공연 · 음악	16	(100.0)	2	(12.5)	14	(87.5)
	미술 · 사진 등	10	(100.0)	1	(10.0)	9	(90.0)

(2)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사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경험해 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주요 사업을 조사한 결과,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개의 남북문화교류협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예로는 '사랑의 불시착(드라마)', '베를린(영화)' 투자 배급, 북한영화 상영, 금강산 가극단 내한 공연, 조선무용 50년 북녘의 명무, 북한음반 출시 등의 사업이 있었다.

북한영화를 상영한 사업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09년~2019년 1건씩 모두 3건 있었는데, 국내외 대리중개기관을 통해서 북한영화 자료를 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북한영화 상영과 관련된 일체 진행은 남한 측에서 실시하며, 북한 측의 역할은 저작권 승인 외에 특별한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금강산 가극단 내한 공연, 2007년 조선무용 50년 북녘의 명무 등은 남한 측에서 제작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북한 측에서 출연을 한 사업으로, 남한 측에서 직접 접촉하여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2006년~2009년까지 북한 음원을 제공받아 음반을 출시한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사례

구분	사업명	기간	사업 규모	사업내용	사업에 대한 평가	북한 사업자	북한 사업자 접촉방식	남한	북한	남측 역할	북측 역할
1	북한영화 특별전	2018	500 만원	북한영화 1회씩 상영	문체부를 통한 국정원의 상영허락 받기가 너무 힘들다. 북한영화 자료 수급도 너무 힘들다.	없음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100	0	모든 진행	없음
2	북한 영화 상영	2017	1천 만원	북측 최신 실사영화 영화제 기간 중 대중적 상영	북측 영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북측 민화협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50	50	북측 영화 수급 및 상영료 지급	저작권 확인 및 승인
3	북한 영화 상영, 북한 영화 관련 학술 행사	2009 – 2019	모름	북한 영화 상영 및 관련 학술 행사 개최	대체로 긍정적이나, 장기적인 행사 진행이라는 면에서 북한과 영화 관련 교류가 미비한 점이 아쉬움	모름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0	모름	과거 사업에 관한 내용이기에 없었음	모름
4	남북산하 사진전 – 삼천리 금수강산	1998	알 수 없음 (사업주최대 다수 작가들 작고)	남북한 산하 사진전 개최 및 작품집 출간	구체적 사항 알 수 없음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 김재천 부위원장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60	40	사업 주최 및 주관	대표작 선별 후 원판필름 제공
5	금강산 가극단 내한공연	2005	2억원	무대 공연	제도적 미비와 인허가의 어려움등이 커서 법적 제도적 개선과 관련 진흥원 같은 전담 기관의 설립이 필요	**민화협**	① 직접 접촉	70	30	제작자	인허가와 실무 조율 그리고 출연
6	남북사진 교류전 – 백두산 사계	2001	알 수 없음	남북사진인 상호 교류와 남북사진전 개최 및 사진작품집 출간	실질적인 남북 사진인 교류전으로 본 사업이 최초임에 의의가 있다. 이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단발성에 그친 점이 아쉽다.	알수 없음	통일부 북측 사진인과의 접촉신고 후 승인을 받아 중국에서 접촉	60	40	사업 주최, 주관	작품제공 및 북측 전시개최
7	조선무용 50년 북녘의 명무	2007	1억원	조선 무용 공연	인허가의 어려움이 커서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	민화협	① 직접 접촉	50	50	제작자	출연
8	북한 음반 출시	2006 ~ 2009	8천만원	북한의 서악 및 기악 등 음반 제작과 유통	인허가가 어렵고 제도적 미비로 민간사업 유지가 곤란해서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	금강산 가극단	① 직접 접촉	80	20	프로듀서	음원 제공

(3)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목적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남북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50.0%)라는 응답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25.0%)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1+2순위)

구분	N	%
전체	12	100.0
① 수익사업을 기대해서	0	0.0
②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6	50.0
③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3	25.0
④ 북한과 교류에 대한 우선 경험자로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0	0.0
⑤ 기타	3	25.0

(4)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관련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중 북한사업자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6개 사업체 중 4개(66.7%)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여부

구분	N	%
전체	6	100.0
① 계약함	4	66.7
② 계약하지 않음	2	33.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중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한 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2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2.5건이 발생했다.

〈표 3-7〉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건수

1980년 이전			1980년~1990년			1991년~ 2000년			2001년~2010년			2010년~2020년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4	0.00	0.00	4	0.00	0.00	4	0.00	0.00	4	2.00	4.00	4	2.50	1.29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방식으로는 4개 중 3개가 국내대리중개기관(경문협)을 통해 공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8〉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방식

구분	N	%
전체	4	100.0
① 직접 송금	0	0.0
② 국내 대리중개기관(경문협) 통해 송금	1	25.0
③ 국내 대리중개기관(경문협) 통해 공탁	2	50.0
④ 경문협 아닌 국내 대리인 통해 송금	0	0.0
⑤ 국외 대리인(예: 조선족)을 통해 송금	0	0.0
⑥ 지급하고 있지 않음	0	0.0
⑦ 기타	1	25.0

(5)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북한자료 이용의 어려움(27.3%)', '정부기관의 비협조 및 제도적 제약(27.3%)',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18.2%)' 등이 지적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북한을 미화했다며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피고발된 사례도 있었고, 기관 단독으로 북한 단체와 상호협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

〈표 3-9〉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방식

구분	N	%
전체	11	100.0
① 북한과의 의사소통 문제	1	9.1
② 북한자료 이용의 어려움	3	27.3
③ 국내 중개기관의 역할 미비	0	0.0
④ 정부기관의 비협조 및 제도적 제약	3	27.3
⑤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2	18.2
⑥ 기타	2	18.2

2.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

(1)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 여부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중 4개 사업체만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연·음악분야 2개, 미술·사진 등의 분야 2개가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이 있다고 나타났다.

〈표 3-1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여부

구분		전체		있음		없음	
		N	(%)	N	(%)	N	(%)
전체		46	(100.0)	4	(8.7)	42	(91.3)
분야	영상 · 방송	8	(100.0)	0	(0.0)	8	(100.0)
	출판	12	(100.0)	0	(0.0)	12	(100.0)
	공연 · 음악	16	(100.0)	2	(12.5)	14	(87.5)
	미술 · 사진 등	10	(100.0)	2	(20.0)	8	(80.0)

(2)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에 예정된 사업은 교예단 초청공연, 국제평화음악제, 근대개항장 교류전시,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특별전

"사진, 민족 기상을 담다!", 조선미술박물관 내한전, 국제연극제초청 등 6개로 나타났다. 8개 사업 중 북한사업자로서는 민화협이 3건이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된 국제영화제는 북한연극계와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8개 사업 중 교예단 초청공연, 국제평화음악회, 조선미술박물관 내한전은 직접 접촉, 근대개항장 교류전시,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특별전 "사진, 민족 기상을 담다!"는 국외 대리중개기관 접촉, 국제연극제초청은 국내 대리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남측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측은 인허가, 현지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하며, 북한 문화예술가들이 출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

구분	사업명	예정 년도	사업내용	북한 사업자	북한사업자 접촉방식	남한	북한	남측 역할	북측역할
1	교예단 초청공연	2021년	교예 공연	민화협	① 직접 접촉	60	40	프로듀서	인허가와 출연
2	국제평화음악회	2021년	남북 그리고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민화협	① 직접 접촉	60	40	프로듀서	인허가와 실무조율, 출연
3	근대 개항장 교류전시	2021년	초기 개항장 부산, 인천, 원산의 근대도시 교류전시	미정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70	30	전시 기획, 자료조사 등	현지 자료 제공
4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특별전 "사진, 민족 기상을 담다!"	2021	우리나라 민족 기상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와 북녘 땅에서 바라본 민족의 정기인 백두산 천지 특별사진전 개최	미정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60	40	사업 주최, 주관	작품원본 제공
5	조선미술박물관 내한전	2021년	내한 전시	민화협	① 직접 접촉	60	40	프로듀서	인허가와 소장품 제공
6	초청공연	2021년	국제연극제초청	북한연극계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50	50	연기자	연기자
7	초청공연	2022년	국제연극제초청	북한연극계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50	50	연기자	연기자
8	초청공연	2023년	국제연극제초청	북한연극계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50	50	연기자	연기자

(3)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이 있는 사업체에게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62.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37.5%)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3-12〉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1+2순위)

구분	N	%
전체	8	100.0
① 수익사업을 기대해서	0	0.0
②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5	62.5
③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3	37.5
④ 북한과 교류에 대한 우선 경험자로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0	0.0
⑤ 기타	0	0.0

(4) 저작권료 계약 예정 여부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료에 대해 계약할 예정인지 조사한 결과, 2개(50.0%)가 저작권료에 대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표 3-13〉 저작권에 대한 계약 예정 여부

구분	N	%
전체	4	100.0
① 예	2	50.0
② 아니오	2	50.0

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향후 추진의향

(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중 62.5%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판 분야(66.7%), 미술사진 등의 분야(100.0%)에서 관심도가 높았고, 영상·방송(20.0%)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4〉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구분		전체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N	(%)	N	(%)	N	(%)	N	(%)	N	(%)
전체		40	(100.0)	6	(15.0)	9	(22.5)	22	(55.0)	3	(7.5)
분야	영상 · 방송	5	(100.0)	1	(20.0)	3	(60.0)	1	(20.0)	0	(0.0)
	출판	12	(100.0)	1	(8.3)	3	(25.0)	6	(50.0)	2	(16.7)
	공연 · 음악	15	(100.0)	4	(26.7)	3	(20.0)	8	(53.3)	0	(0.0)
	미술 · 사진 등	8	(100.0)	0	(0.0)	0	(0.0)	7	(87.5)	1	(12.5)

(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향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 의향을 살펴본 결과, 추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7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술·사진 등(100.0%)의 분야에서 기회가 된다면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3-15>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향후 추진의향

구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전체		45	(100.0)	4	(8.9)	6	(13.3)	28	(62.2)	7	(15.6)
분야	영상 · 방송	8	(100.0)	2	(25.0)	0	(0.0)	5	(62.5)	1	(12.5)
	출판	12	(100.0)	0	(0.0)	3	(25.0)	7	(58.3)	2	(16.7)
	공연 · 음악	16	(100.0)	2	(12.5)	3	(18.8)	9	(56.3)	2	(12.5)
	미술 · 사진 등	9	(100.0)	0	(0.0)	0	(0.0)	7	(77.8)	2	(22.2)

4. 북한저작물 이용실태 및 욕구

(1) 북한저작물 이용 실태: 북한저작물 이용경험 있는 사업자

1)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여부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1%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영상·방송 분야에서의 북한저작물 이용경험(37.5%)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연·음악 분야에서의 북한저작물 이용경험(18.8%)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물 유형에 따라서는 어문저작물의 이용경험(13.0%)이 많았고, 미술(6.5%), 사진(6.5%), 영상(6.5%)의 순으로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6〉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구분		전체		있음		없음	
		N	(%)	N	(%)	N	(%)
전체		46	(100.0)	12	(26.1)	34	(73.9)
분야	영상 · 방송	8	(100.0)	3	(37.5)	5	(62.5)
	출판	12	(100.0)	3	(25.0)	9	(75.0)
	공연 · 음악	16	(100.0)	3	(18.8)	13	(81.3)
	미술 · 사진 등	10	(100.0)	3	(30.0)	7	(70.0)
저작물 유형	어문	46	(100.0)	6	(13.0)	40	(87.0)
	음악	46	(100.0)	2	(4.3)	44	(95.7)
	연극(교예)	46	(100.0)	1	(2.2)	45	(97.8)
	미술	46	(100.0)	3	(6.5)	43	(93.5)
	사진	46	(100.0)	3	(6.5)	43	(93.5)
	영상	46	(100.0)	3	(6.5)	43	(93.5)
	도형	46	(100.0)	0	(0.0)	46	(100.0)

2) 북한저작물별 유형별 이용비율,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북한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 유형별로 이용한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어문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주로 북한 소설, 수필, 동화 등이 이용되었다고 응답하였고, 1회성으로 이용했다는 응답이 3명으로 가장 많아서 한번 이용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중 출판형태(시, 소설, 수필 등 서적 형태)로 이용한 경우가 3명(7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어문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구분		N	%
전체		6	100.0
어문저작물 유형	① 북한의 시	1	16.7
	② 북한 소설	3	50.0
	③ 북한 수필	2	33.3
	④ 북한 동화	2	33.3
	⑤ 북한 논문	1	16.7
	⑥ 북한 뉴스	1	16.7
	⑦ 북한 역사자료	1	16.7
	⑧ 북한 학술자료	1	16.7
	⑨ 기타	3	50.0
어문저작물 이용횟수	1회	3	60.0
	2회	0	0.0
	3-5회	1	20.0
	6-10회	0	0.0
	11회 이상	1	20.0
어문저작물 이용형태/방법	① 출판 (시, 소설, 수필 등 서적 형태)	3	75.0
	② 언론 (연합뉴스, 뉴스1 등)	0	0.0
	③ 자료 (학술논문, 역사자료 등)	1	25.0
	④ 기타	0	0.0

음악저작물의 이용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전통민요(1건), 북한최신가요(1건)이 있었고, 이용횟수는 3~5회(50%), 11회 이상(50%)으로 응답하였다.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로는 공연에서 직접 이용하거나 영상제작물에서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8〉 음악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구분		N	%
전체		2	100.0
음악저작물 유형	① 북한전통민요	1	50.0
	② 북한최신가요	1	50.0
	③ 기타	2	100.0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1회	0	0.0
	2회	0	0.0
	3-5회	1	50.0
	6-10회	0	0.0
	11회 이상	1	50.0
음악저작물 이용형태/방법	① 방송국에 의한 방송	0	0.0
	② 인터넷에 의한 전송	0	0.0
	③ 공연에서 직접 이용	1	50.0
	④ 노래방	0	0.0
	⑤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용	1	50.0

연극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개 기관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기관은 북한 가극, 연극, 교예, 무용 모두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기관은 11회 이상 연극저작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초청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표 3-19〉 연극(교예)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구분		N	%
전체		1	100.0
연극(교예) 저작물 유형	① 북한 가극	1	100.0
	② 북한 연극	1	100.0
	③ 북한 교예	1	100.0
	④ 북한 무용	1	100.0
	③ 기타	1	100.0
연극(교예) 저작물 이용횟수	1회	0	0.0
	2회	0	0.0
	3-5회	0	0.0
	6-10회	0	0.0
	11회 이상	1	100.0
연극(교예)저작물 이용형태/방법	초청을 위한 조사연구	1	100.0

미술저작물을 이용한 경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개 업체였고, 이들은 주로 북한 회화(그림)과 서예를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술저작물의 이용횟수는 11회 이상 이용한 경우가 66.7%여서 일단 미술저작물을 이용하면 자주 이용하게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저작물의 이용형태는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식채널에 의한 전시, 교육연구 형태로 이용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개별전시회에서 북한미술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표 3-20〉 미술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구분		N	%
전체		3	100.0
미술저작물 유형	① 북한 회화(그림)	3	100.0
	② 북한 조각	1	33.3
	③ 북한 공예	1	33.3

구분		N	%
	④ 북한 서예	2	66.7
	⑤ 북한 도안	1	33.3
	⑥ 기타	2	66.7
미술 저작물 이용횟수	1회	1	33.3
	2회	0	0.0
	3-5회	0	0.0
	6-10회	0	0.0
	11회 이상	2	66.7
미술저작물 이용형태/방법	①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식채널에 의한 전시	1	33.3
	② 개별전시회 (소장한 북한 미술작품 전시)	0	0.0
	③ 교육 · 연구	1	33.4
	④ 기타	1	33.3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개 업체였고, 이들은 주로 전시회를 통한 사진 전시의 형태로 북한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사진저작물 이용횟수가 11회 이상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북한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나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로 추정된다.

<표 3-21> 사진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차수		N	%
전체		3	100.0
사진저작물 유형	① 북한 사진	3	100.0
	② 기타	2	66.7
사진 저작물 이용횟수	1회	1	33.3
	2회	1	33.3
	3-5회	0	0.0
	6-10회	0	0.0
	11회 이상	1	33.3
사진 저작물 이용형태/방법 (중복 체크)	① 전시회를 통한 전시	3	100.0
	② 사진집 제작	1	33.3
	③ 언론보다,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	0	0.0
	④ 광고, 배경화면 등 서비스 제공	0	0.0
	④ 기타	0	0.0

영상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개 업체였는데, 주로 북한 영화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업체는 1회, 3회, 11회 이상 북한저작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고, 모두 '영화제'에서 북한영화를 상영을 한 것으로 설문조사되었다. 이는 북한영화는 현재까지는 주로 북한영화를 남한 측이 '영화제'에 초청하여 상영되는 형태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3-22> 영상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차수		N	%
전체		3	100.0
영상저작물 유형	① 북한 영화	3	100.0
	② 북한 TV편집물	0	0.0
	③ 기타(다큐)	1	33.3
영상저작물 이용횟수	1회	1	33.3
	2회	0	0.0
	3-5회	1	33.3
	6-10회	0	0.0
	11회 이상	1	33.3
영상저작물 이용형태/방법 (중복 체크)	① 영화관에 의한 상영	0	0.0
	② 영화제에 의한 상영	3	100.0
	③ TV 등에 의한 상영	0	0.0
	④ 인터넷 서비스	0	0.0
	⑤ 기타	0	0.0

3) 북한저작물을 활용하는 주요 이유

북한저작물을 활용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해당 저작물이 갖는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위하여(37.5%),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33.3%)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활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또는 민족적 의미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한의 민간 업체들이라 할지라도 상업적인 이유로 북한저작물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3-23〉 북한저작물을 활용하는 주요 이유 (1+2순위)

구분	N	%
전체	24	100.0
① 해당 저작물이 독창적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3	12.5
② 해당 저작물이 갖는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위하여	9	37.5
③ 북한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슈가 되기 때문에	3	12.5
④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8	33.3
⑤ 기타	1	4.2

4)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여부

북한저작물을 사용한 12개소 중 북한저작물을 사용 승인 받은 경우는 8개(66.7%)로 가장 많았다. 북한저작물을 양도받은 경우는 2개(16.7%), 양도 또는 승인 받지 않고 이용한 경우도 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저작물을 양도 또는 승인 받은 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 모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24〉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여부

구분	N	%
전체	12	100.0
① 북한저작물 양도 (북한저작물 구매)	2	16.7
② 북한저작물 사용 승인 받음	8	66.7
③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없이 북한저작물 이용	2	16.7

5)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시기 및 건수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시기 및 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없거나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보면, 특히 2005년부터 2010년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및 건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승인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5〉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시기 및 건수

~1980년	1980년 ~1990년	1991년 ~2000년	2001~2010년	2010년~2020년
없음	없음	• 1998년	• 2001년, 건수불분명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0여건 • 2008년 5월, 1건 • 연도 불분명, 1건	• 2011년 3월, 1건 • 2012년 1월, 1건 • 2015년 7월~9월, 건수 불분명 • 2017년 7월, 15건 • 2018년 6월, 4건 • 2019년 3월 1건 • 2019년 12월, 1건

6)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경로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경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문협을 통해 교섭했다는 경우가 6개(60.0%), 제3자 또는 제3국(중국으로 추정)을 통해 교섭했다는 경우가 3개(30.0%), 저작권자와 직접 접촉한 경우도 1개(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경로

구분	N	%
전체	10	100.0
① 저작자 또는 권리자와 직접 접촉	1	10.0
②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직접 교섭	0	0.0
③ 제3자 또는 제3국을 통해 교섭	3	30.0
④ 경문협을 통해 교섭	6	60.0

7)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시 어려웠던 점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양도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8개소, 44.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27.8%), 정부기관의 비협조(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함에 있어서 정부의 협조와 매우 요구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27〉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시 어려웠던 점(1+2순위)

구분	N	%
전체	18	100.0
① 양도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8	44.4
②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	5	27.8
③ 비용(부대비용 포함)의 부담	2	11.1
④ 정부기관의 비협조	3	16.7

8) 북한저작물에 대해 허락을 받은 저작권 내용

북한저작물에 대해 허락을 받은 저작권의 내용 중에는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 등(5개소, 20.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공연권(4개소, 40.0%), 배포권(4개소, 40.0%)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저작물에 대해 허락받은 저작물이 주로 어문저작물임을 알 수 있었고, 공연 관련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로 설문조사되었다.

〈표 3-28〉 북한저작물 승인 받은 권리(중복 응답)

구분	N	%
전체	10	100.0
① 복제권	3	30.0
② 공연권	4	40.0
③ 방송권	3	30.0
④ 전시권	3	30.0
⑤ 배포권	4	40.0
⑥ 2차적저작물 작성권(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3	30.0
⑦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 등	5	50.0
⑧ 기타(영화제 상영/공중송신권)	2	20.0

9) 북한저작물을 통한 사업 수익 여부 및 수익 발생 경로

북한저작물을 통한 사업 수익 여부 및 수익 발생 경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수익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2개소 중 4개소(33.3%)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8개소(66.7%)는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북한저작물

이용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북한저작물 이용을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발생 경로에 대해서는 북한저작물을 근거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가 발생한다는 경우가 2개소(50.0%)였으며, 북한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여 얻은 수익, 북한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을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경우가 각각 1개소(25.0%)로 나타났다.

<표 3-29> 북한저작물을 통한 사업 수익 여부 및 수익 발생 경로

구분		N	%
수익 여부	① 예	4	33.3
	② 아니오	8	66.7
	소계	12	100.0
수익 발생 경로 (중복)	① 북한저작물을 근거로 2차적저작물(가공·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료	2	50.0
	② 북한저작물의 제3자 이용허락에 따른 수익	1	25.0
	③ 북한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을 통한 수익	1	25.0
	④ 기타(북한저작물 출판 통한 수익, 서적에 필요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은 미미함)	2	50.0
	소계	4	100.0

10) 북한저작물 전담조직에 대한 의견

북한저작물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2개소 중 2개소(16.7%)였고, 10개소(83.3%)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저작물 전담조직 및 인력이 없는 10개소를 대상으로 북한저작물 전담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지 확인한 결과, 10개소 중 2개소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8개소는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저작물 활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100.0%)라고 응답했다.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남한 업체 등의 경우에 북한저작물 전담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30〉 북한저작물 전담조직에 대한 의견

구분		N	%
북한 저작물 전담조직 및 인력 유무	① 예	2	16.7
	② 아니오	10	83.3
	소계	12	100.0
북한저작물 전담 조직 및 인력 필요성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② 필요하지 않다	8	80.0
	③ 필요하다	1	10.0
	④ 매우 필요하다	1	10.0
	소계	10	100.0
필요하지 않은 이유	① 북한저작물 활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8	100.0
	②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여	0	0.0
	③ 비용(인거비, 운영비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0	0.0
	소계	8	100.0

11) 북한저작물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2개소에 대해 향후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58.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이 여건과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함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로 이해된다.

〈표 3-31〉 북한저작물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

구분	N	%
전체	12	100.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8.3
② 그렇지 않다	4	33.3
③ 그렇다	6	50.0
④ 매우 그렇다	1	8.3

(2)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욕구: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이 없는 사업자

1)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업체나 기관들에 대해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이 가능한지 잘 몰라서(50.0%)가 가장 많았고, 북한저작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18.8%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며,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설문조사결과였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필요성이 없거나 관련 사업이 없어서라는 의견, 북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32> 북한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N	%
전체	32	100.0
① 수익성이 없어서	1	3.1
② 북한저작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6	18.8
③ 북한저작물 이용이 가능한지 잘 몰라서	16	50.0
④ 이용하고 싶었으나 절차가 어려워서	1	3.1
⑤ 기타 의견: 필요성 없음; 관련 사업 없음; 북한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측과 접촉 중에 서로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사용할 마음이 없어짐	8	25.0

2) 북한저작물의 의미

북한저작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일을 위한 협력(45.7%)이 가장 많았고, 교육·학술의 의미(31.4%), 북한 정보 전달 등 언론의 의미(14.3%)의 순으로 설문조사 되었다.

〈표 3-33〉 북한저작물이 갖는 의미

구분	N	%
	35	100.0
① 수익성	1	2.9
② 북한 정보 전달 등 언론의 의미	5	14.3
③ 교육·학술의 의미	11	31.4
④ 이슈성	0	0.0
⑤ 통일을 위한 협력	16	45.7
⑥ 기타 (북한 자금 조달, 이질감 해소 등)	0	0.0

3) 북한저작물 유형별 향후 이용 의사 및 목적

북한저작물의 유형별로 향후 이용 의사 및 목적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의사가 없는 경우가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보다 모든 북한저작물에 대해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그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추정하기로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북한저작물 이용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부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저작물의 유형 중에서 어문저작물(43.7%), 미술저작물(43.7%), 사진저작물(40.6%),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연극(교예) 무대예술 저작물(33.5%), 음악저작물(25%), 영상저작물(2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북한저작물의 이용의사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영리적 목적의 이용이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보다 더 많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북한저작물에 대해서는 남한 내에서 이용의사가 그렇지 않은 북한저작물에 비해 더 많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응답비율이 낮은 북한의 연극무대예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의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기 쉽지 않고, 정치적 분위기 등 다른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어서 개별 민간 업체 등이 이러한 북한저작물을 단독으로 이용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물로 이해될 수 있다.

각 저작물에 대한 주 이용목적에 대해 살펴보면 어문저작물은 출판을 위한 이용, 음악저작물은 인터넷 서비스, 연극 무대예술 저작물은 남북합동공연, 미술저작물은 개별전시회, 사진저작물은 전시회를 통한 전시, 영상저작물은 영화제에 의한 상영, 도형저작물은 전시회를 통한 전시, 출판 형태로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표 3-34> 북한저작물 유형별 향후 이용 의사 및 목적

구분	이용 의사 여부 및 영리성 여부						이용목적 (중복체크 가능)
	이용 의사 없음		영리목적 이용의사 있음		비영리목적 이용의사 있음		
	N	(%)	N	(%)	N	(%)	
1) 어문저작물	18	(56.3)	10	(31.3)	4	(12.5)	① 출판을 위한 이용 (7건) ② 언론보도,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1건) ③ 온라인 서비스 (정보제공) (5건) ④ 기타 (2건)
2) 음악저작물	24	(75.0)	3	(9.4)	5	(15.6)	① 방송국에 의한 방송 (1건) ② 인터넷 서비스 (5건) ③ 공연에서 이용 (1건) ④ 노래방 (0건) ⑤ 기타 (2건)
3) 연극(교예) 무대예술 저작물	26	(76.5)	3	(8.8)	5	(14.7)	① 직접 공연(상연) (2건) ② 재생공연 (공연녹화물) (2건) ③ 남북합동공연 (3건) ④ 기타(1건)
4) 미술저작물	18	(56.3)	6	(18.8)	8	(25.0)	①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식채널에 의한 전시 (4건) ② 개별전시회 (소장한 북한 미술작품 전시)(5건) ③ 교육 · 연구 (3건) ④ 기타(3건)
5) 사진저작물	19	(59.4)	8	(25.0)	5	(15.6)	① 전시회를 통한 전시 (7건) ② 사진집 제작 (2건) ③ 언론보도,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 (2건) ④ 광고, 배경화면 등 서비스 제공 (0건) ⑤ 기타(4건)
6) 영상저작물	24	(75.0)	4	(12.5)	4	(12.5)	① 영화관에 의한 상영(2건) ② 영화제에 의한 상영(5건) ③ TV 등에 의한 상영(0건) ④ 인터넷서비스 (2건) ⑤ 기타(1건)
7) 도형저작물	24	(75.0)	4	(12.5)	4	(12.5)	① 전시회를 통한 전시 (4건) ② 출판 형태로 이용 (4건) ③ 지도정보, 도면 등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이용 (0건) ④ 기타(1건)

5. 남북한 저작권 교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1)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남북저작물 유통 활성화(47.8%)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교육학술 목적의 북한저작물 자유로운 사용(39.1%)이 그 다음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남북한 콘텐츠 양과 질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견, 정치적 교류 및 화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3-35〉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구분	N	%
전체	46	100.0
① 교육·학술 목적의 북한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18	39.1
② 북한저작물의 보호 및 사용 대가 지급 강화	2	4.3
③ 남북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	22	47.8
④ 기타 (남북한 콘텐츠 양과 질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 선행되어야 함. 정치적 교류 및 화해 등)	4	8.7

(2)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에 대한 의견

1)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의 적절성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수 중 절반 이상이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이 적절하다(56.5%)고 응답하였다.

〈표 3-36〉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의 적절성

구분		N	%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의 적절성	① 매우 적절하다	7	15.2
	② 적절하다	19	41.3
	③ 적절하지 않다	16	34.8
	④ 매우 적절하지 않다	4	8.7
	소계	46	100.0

2)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이 적절한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이 적절한 이유는 ① 미송금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켜 남북문화교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50.0%), ② 미송금 저작권료를 송금받을 북한 저작권자와 제대로 연락이 안 되어서(23.1%)라는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사업을 위해 활용(56.0%)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3-37>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한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구분		N	%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이 적절한 이유	①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부하기 위한 합법적인 민간단체가 없어서	4	15.4
	② 미송금 저작권료를 송금받을 북한 저작권자와 제대로 연락이 안되어서	6	23.1
	③ 미송금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켜 남북문화교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	50.0
	④ 미송금 저작권료를 어디에 귀속시켜야 할지 몰라서	0	0.0
	⑤ 기타	3	11.5
	소계	26	100.0
재원 활용 방안	① 통일·대북지원 관련 사업	2	8.0
	② 남한 문화·저작권 관련 사업	3	12.0
	③ 북한 문화·저작권 지원 사업	5	20.0
	④ 남북경제문화협력사업을 위한 활용	14	56.0
	⑤ 기타(통일 후에 필요한 자금 대비).	1	4.0
	소계	25	100.0

3)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이 적절치 않은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이 적절치 않은 이유로는 ① 북한저작

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북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므로(70.0%), ② 저작권은 사적 재산권이므로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2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남한 문화 저작권 관련 사업(55.0%), 북한 문화 저작권 지원 사업(60.0%)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3-38>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치 않은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구분		N	%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치 않은 이유	①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북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14	70.0
	② 저작권은 사적인 재산권이므로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5	25.0
	③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 귀속에 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1	1	5.0
	④ 기타	0	0.0
	소계	20	100.0
재원활용 방안 (중복응답)	① 통일·대북지원 관련 사업	8	40.0
	② 남한 문화·저작권 관련 사업	11	55.0
	③ 북한 문화·저작권 지원 사업	12	60.0
	④ 남북경제문화협력사업을 위한 활용	3	15.0
	소계	25	100.0

(3) 남북한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는 남북 저작권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69.6%)이 가장 많았고, 굳이 활성화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19.6%),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10.0%)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활성화 수준은 남북 저작권 교류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76.5%)이 가장 많았고, 남북 저작권 교류·유통의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11.8%), 남북저작권 공동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9〉 남북한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N	%
활성화 필요성	① 활성화되어야 한다	32	69.6
	② 굳이 활성화될 필요는 없다.	9	19.6
	③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	5	10.9
	소계	20	100.0
활성화 수준	① 남북 저작권 교류·유통의 활성화	26	76.5
	② 남북 저작권 교류·유통의 완전 개방	4	11.8
	③ 남북 저작권 공동관리	4	11.8
	소계	34	100.0

(4) 남북한저작물 교류와 관련한 정책적 건의사항

남북한 저작권 교류와 관련한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북한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업체가 대다수고, 이용할 의사가 있어도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용가능한 북한저작물을 확인 가능한 채널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각 분야의 어떤 저작물이 있어 교류가 가능한지 어려우므로 관련자료를 목록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채널 마련 필요
- 저작물에 관한 리스트 공개
- 북한이 제공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온라인이 구축돼야 합니다.
- 북한저작물의 아카이브 필요
- 영화 관련한 아카이빙
- 예술, 자연(지리 등), 역사 등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자료를 공유했으면 함
- 북한의 저작물을 열람하고 우리 저작물을 소개할 기회가 늘어나야 함

한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알리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어떤 저작물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지를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음
-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 필요
- 국내 저작물 관련 사항부터 확실히 보호 필요
- 남북 저작물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저작권자 정보 확보

한편, 남북한 저작물 교류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발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북한저작물 교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세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국내의 창작자 지원 정책부터 견고히 하고 북한저작물 교류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
- 남북한 출판물 수출입 및 저작권 수출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하며 출판단체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함.
- 남북 공공기관 및 출판사가 직접 교류
- 남북 문화교류 속에서 지속적인 활성화를 계속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 남북 문화의 동질성 회복이 가능하도록 자신감 있는 문화개방 필요
- 예술가 또는 전문가 간의 네트워킹
- 학술 연구 및 전시 등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

또한, 북한저작물 교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유관 기관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경문협이 소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정부 또는 경문협의 역할에 불만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라고 추정해 본다.

- 북한저작물 교류 및 담당 전문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 선정이 선행되었음 한다.
- 신탁회사 설립하거나 정부출연 기구로 설립 필요
- 북한 전문 에이전시 만들어 주었으면 함

이 외에도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동안 너무 고생해서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북한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우선 북한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6. 소결

본 조사는 국내의 문화예술 사업 분야의 북한저작물 이용 실태, 남북 문화교류 협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영상·방송 출판, 공연·음악, 미술사진 등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이메일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저작물은 영상·방송, 출판, 공연·음악, 미술·사진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영상·방송 분야에서의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37.5%)이 많았으며, 공연·음악 분야에서의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18.8%)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물 유형에 따라서는 어문저작물의 이용 경험(13.0%)이 많았고, 미술(6.5%), 사진(6.5%), 영상(6.5%)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비율(26%)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비율(13%)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북한저작물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방증해 주는 설문조사 결과로, 정식적인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아닌 개별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중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 본 연구진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상기관들의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62.5%)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 그러나 그에 비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13%)은 낮았다.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에 비해 사업경험자가 적은 이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합법적 또는 적법한 절차나 제도, 정부의 역할 등의 관점에서 개선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경험한 사업자들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애로사항으로 북한저작물 이용의 어려움(27.3%), 정부기관의 비협조 및 제도적 제약(27.3%)의 순으로 응답했다. 즉,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해 본 사업자들은 이용가능한 북한저작물을 확인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제도의 미비점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적 태도와 제도 마련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 다만, 설문조사 과정 중 영상·방송 출판, 공연·음악, 미술·사진 등 문화분야 사업체/기관들의 남북문화교류협력 자체에 관심이 없어 설문지회수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국내 문화분야 사업체/기관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셋째,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경험한 사업자들의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목적을 살펴보면, 남북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50.0%),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25.0%)라는 응답의 순이었다. 즉, 수익성보다는 남북한의 문화적 상호작용과 지속적 교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즉,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경험해 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사업을 조사한 결과,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개의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북한 영화 상영, 금강산 가극단 내한 공연, 조선무용 50년 북녘의 명무, 북한 음반 출시 등의 사업 등이었다. 특히 금강산 가극단 내한 공연, 조선무용 50년 북녘의 명무 등의 경우에는 북한 공연단이 직접 출연하는 등 북한 측의 역할이 상당했던 사업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남한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였다. 즉,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주로 남측 주도로 진행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남측 사업자들이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려는 의사가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2010년 이후 진행된 사업들은 주로 국내 대리중개기관(경문협)을 통해 접촉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 이전 사업들은 직접 접촉하거나, 국외 대리중개기관을 통해 접촉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최근 10년 동안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서 경문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 등이 있다는 점, 북한저작물 교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유관 기관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대리중개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중 북한 사업자와 계약했는지 살펴본 결과,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계약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2개였다. 즉,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한 사업자들 중에서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때 북한저작물을 양도 또는 승인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설문 조사되었다. 이들은 북한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북한 측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에 북한저작물을 양도받거나 사용할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양도 또는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44.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27.8%), 정부기관의 비협조(16.7%)인 태도를 꼽았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감안할 때, 북한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으

며, 남한 내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저작물 교류를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저작물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북한저작물 교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영상·방송 출판, 공연·음악, 미술·사진 등 문화분야 사업체/기관에서 북한저작물이 일부 이용되고 있으며,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절차와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제4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종합 분석과 정책 제언

제1절 남북문화교류의 발전 과정과 현황 분석

1. 북한저작물 이용 연혁[4)]

1980년대까지 방송, 출판 등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은 금기시되었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에서 출판된 출판물이나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납·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남북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도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남북 공동행사를 통해 통일문화를 창출한 '통일축전'이다.[5)] 2001년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회', 2003년 평양에서 '8·15 민족대회', 2004년 인천에서 '우리민족대회'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6)] 저작권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가 시작된 시점은 2000년 8월 남측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한 때였다. 이후 2003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서 남북대표단은 남북 공동의 보도 준칙 마련과 기자 교류, 조선 언론사 사장단의 내한 답방, 양측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사 간의 기사 교류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위임을 받은 총련계 조선통신사 간에 기사와 사진에 대한 수신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합뉴스사는 북한 뉴스저작물을 동년 12월 10일부터 현재에까지 보도하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라 함)[7)]이 북한 측으로부터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가지고 대리중개업무를

4) 본 내용은 "예언제의 이철재 사무총장"의 자문보고서 일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일축전(統一祝典)',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함: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650 (2020. 11. 10. 방문)

6) 2008년 이후부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다.

7) 경문협은 2004년 1월 29일 창립총회가 열렸고, 동년 9월 24일 통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문협 홈페이지 참조: http://interkorea.org/?page_id=1095 (2020. 11. 10. 방문).

하고 있다.[8] 예를 들면, 사단법인 경문협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대행 권한을 수탁받아 국내 방송사로부터 북한 조선중앙TV 관련 보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아 오고 있다. 경문협은 방송 이외에도 출판, 영화 등 분야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아 북한 저작권사무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남북 사이의 정치적 관계로 인하여 경문협은 남한의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전달하지 못하고 공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정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9조 5항 "남북한 쌍방 합의에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 권리 보호 조처를 해야 함"에 근거하고 있다.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인 영토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도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저작물을 남한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조약이다.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1991년 9월 북한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UN)에 가입하였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4월에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은 국제법상 북한저작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2004년에는 북측 저작권사무국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 관련 사업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31일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이라 함)가 남한의 경문협에게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를 근거로 경문협은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을 한 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북측에 저작권료를 2008년까지 송금하였으나, 이후 남북 사이에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상황이다.[9]

8)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별첨부록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 사무국 합의서" 참조.

9) 공탁금과 관련하여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저작권료 공탁금은 총 20억 9,243만원이라고 한다. 경문협은 이중 북한에 송금하지 못한 조선중앙TV 등의 저작권료 중 10년의 법원 공탁기간이 지난 약 2억3000만원에 대해 "회수 후 재공탁"의 방식으로 국고 환수를 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문협은 2005년부터 북한과 "남북저작권협약"을 체결한 이래 국내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TV 등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리하여 징수하여 왔다. 경문협은 2008년까지 약 7억9200만원의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보냈지만,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저작권료 송금이 차단되어서 그 후부터는 방송사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김다영, 공탁 끝난 北저작권료, 임종석의 경문협이 국고환수 피했다, 중앙일보, 2020.10.5.

2. 북한저작물 이용 관련 법적 소송 및 이용 절차

북한은 2003년 4월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고, 2004년 저작권사무국을 설립한 이후 남한에서의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고,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벽초 홍명희(1888년~1968년)의 소설 『임꺽정』과 벽초의 손자인 홍석중(1941년~)의 소설 『황진이』이다. 벽초의 소설 『임꺽정』은 남한의 사계절출판사가 출판하여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10] SBS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1996년 11월 10일부터 1997년 4월 6일까지 총 44부작으로 방송되는 등 상업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홍석중은 남측의 사계절출판사와 벽초의 『임꺽정』에 대한 20년 동안(1985년~2005년)의 저작권료 15만 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료 지급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무단복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항도 합의서에 넣었다.[11]

또한 북한의 조선작가동맹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중은 자신의 소설 『황진이』가 남측 출판사 대훈서적에 의해 2004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출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3월 북측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경문협에 소송대리인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문협에 의해 소개받은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2006년 7월 24일 "『황진이』를 출간한 대훈서적에게 위약금 1만 달러와 앞으로 판매될 책값의 5%를 판권료로 지급하고, 대훈서적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설에 대한 출판권을 가진다."고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였다.[12]

북한의 저작권자가 남측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위 사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비록 이와 같이 저작권침해소송까지 제기된 사례들은 많지 않으나, 향후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북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와 경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북한 저작권자의 허락과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승인이 필요하

10) 지금도 교보문고 등에서 사계절출판사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
11) 2005년 5월 5-7일 개성에서 북측 저작권사무국 및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신동호 문화협력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무단 출판된 북측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보상"이라며 "그동안 남측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출판됐던 북측 저작물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DailyNK, 南, 北에 '임꺽정' 저작권료 지급, 2005.5.11.
12) DailyNK, 北 '황진이' 저작권소송 남북 첫 법원 합의, 2006.7.24.

며, 이때 경문협이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저작물의 남한 내 이용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출판사 등 북한저작물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계약서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 저작권의 동의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수령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이 절차를 통해 경문협이 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저작물은 ▲장편소설 '림꺽정' ▲장편소설 '황진이' ▲조선고전문학선집 1~100권 ▲'고려사' 한글번역본 ▲리기영 외 9인의 월북·재북 작가의 저작물 일체 ▲'반갑습니다' 외 9곡의 북한 노래 ▲북한의 조선사진가동맹의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 일체 ▲최승희 관련 사진 9컷 및 동영상 2편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영 영상물 일체 등이다.[13)]

경문협이 북한저작물 위탁업무를 맡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이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 2006~2019년 북한저작물 이용계약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어문	30	17	16	17	31	100	89	97	50	75	74	89	97	65	847
사진	3	6	3	1	4	4	3	1	2	5	5	6	13	15	71
음악	1	1											2	1	5
영상	1	6	6	10	9	10	13	13	15	16	15	16	25	24	179
합계	35	30	25	28	44	114	105	113	67	96	94	111	137	105	1,182

자료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3.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한저작물 이용 및 남북 문화예술 교류 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본 절에서는 FGI와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3) 김기헌·이정철,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2018.4), 193~194쪽.

〈표 4-2〉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및 정책 요구

구분	FGI	설문조사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식	• 북한저작물 이용절차에 대한 혼란이 존재 • 북한 관련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이 매우 어려움 •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 중 북한저작물 이용(27.3%)이 가장 어려웠다고 인식함 • 정부기관의 비협조 및 제도적 제약(27.3%)도 어려운 점으로 꼽음 • 북한저작물을 확인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또한, 정부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제도의 미비한 점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됨
분야별 이용 현황	• 음악, 미술, 출판, 언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사실 전달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음악분야: 노래방, 방송 등에서 북한 음악이 제공되고 있음 • 미술분야: 북한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하다는 의견이 존재, 미술 분야는 중국(조선족) 또는 제3자를 통해 북한저작물을 이용계약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 • 출판분야: 비교적 활발함. 주로 교과서에서 북한저작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도 북한저작물이 이용됨. 북한저작물 사용이 다른 분야보다 활발한 만큼 분쟁 사례 또한 비교적 많음 • 언론분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 북한저작물은 영상·방송 출판, 공연·음악, 미술·사진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음 •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26.1% • 분야별 북한저작물 이용경험은 다음과 같음. 영상·방송 분야(37.5%), 출판(25.0%), 미술, 사진(30.0%), 공연·음악 분야(18.8%) • 저작물 유형에 따라서는 어문저작물의 이용경험(13.0%)이 많았고, 미술(6.5%), 사진(6.5%), 영상(6.5%)의 순으로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구분	FGI	설문조사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 내의 언론 정보를 남한 및 국외에 전달하기 위한 수준 정도의 정보 교류는 충분한 수준임	
국내 중개대리기관에 대한 인식	• 경문협 출범 이후에는 남북 간 저작물 교류 · 협력 환경이 개선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존재함	• 2010년 이후 진행된 사업들은 주로 국내 대리중개인(경문협)을 통해 접촉하는 경향을 보임 • 2010년 이전 사업들은 직접 접촉 또는 국외 대리중개인을 통해 접촉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10년 동안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서 경문협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여전히 북한저작물 이용절차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있었고, 북한저작물 교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유관 기관이 설립되길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정책적 요구	• 경문협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 내지 관리가 필요함 • 남북협력기금지원 관련 사업자의 인식에 관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남북협력기금지원 통계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북한저작물 이용 관련 아카이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북한저작물 이용절차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저작물 교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음

4.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보호 관련 쟁점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북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제3자 또는 제3국(주로 중국)의 국외 대리중개인을 통해 허락을 받거나, 북한 저작권 사무국으로부터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경문협으로부터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14] 만일 북한저작물을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단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이는 북한저작물이 남한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인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1개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이유로 북한 지역에도 우리의 헌법, 민법, 저작권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도 남한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로 인정되며, 그 저작권은 남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저작물의 보호에 있어 상호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북한저작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 현행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15] 이러한 남한 법원의 판례는 분단 이후 북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창작하여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북한 주민인 북한저작물은 모두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남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다.[16]

한편, 북한의 국제협약 가입과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가입하였고, 북한 헌법과 형법 일부에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였고, 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 제정된 후, 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일부 개정하였고, 다시 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14) 북한 측으로부터 북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문협은 북측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남한 내 저작물 이용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고 한다.

1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헌법재판소 1993.07.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1항의 효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6.25 사변 전후에 납북되거나 월북한 문인들이 저작한 작품들을 발행하려면, 아직 그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동인들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16) 이와 관련해서는 한지영 외, 남북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반 대응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책보고서 2019-, 38면 이하 참조.

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개정하였다. 특히 북한은 1991년 9월 UN에 가입하였고, 2003년 1월 28일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동년 4월 28일부터 가입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베른협약 동맹국으로서 남한은 체약당사국으로서 북한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한편, 북한은 베른협약의 제33조 제1항(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유보 및 부속서 제Ⅱ,Ⅲ조(번역·복제권의 제한)에 의한 권리 제한을 선언하였는데, 동 조항은 당사국 간에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해결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또한 협약부속서 제Ⅱ조와 제Ⅲ조는 체약국이 선언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번역·복제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비독점적.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17]

17) WIPO 홈페이지 참조. 통일뉴스, "북한, 저작권보호 베른협약 가입", 2003.2.13.

제2절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역할과 쟁점

1.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설립과 활동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은 정치적으로 개선된 관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8월 임종석 국회의원을 대표제안자로 북측의 민화협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남북경제문화교류를 제안한 것이 경문협의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2003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과 금강산 실무회담을 진행하였고, 동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제교류단 50명이 평양을 방문(소년소녀문화궁전 음향설비 인도적 지원 및 7개 기업 의향서 체결)하였으며, 또한 동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측 민경련과 의향서 체결기업 4개사가 실무회담을 하기도 하였다.[18)]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4년 1월 29일 초대 이사장을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로 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경문협은 동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1차 북측의 민화협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다시 동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차 북측의 민화협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무협의 이후 2004년 9월 24일 경문협은 통일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경문협 정관에 따르면, 제2조(목적)에 "이 법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와 문화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여 경문협의 목적이 남북경제문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관 제3조에는 경문협의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진행한다.
> 1. 경제와 문화 분야의 협력과 지원 사업
> 2. 남북·해외동포 인적 교류 사업
> 3. 인도적 지원 사업
> 4.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6. 위 각 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18) 경문협 홈페이지 참조: http://interkorea.org/?page_id=1095 (2020. 11. 11. 방문).

사단법인 경문협의 정관에 따른 사업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은 경제와 문화 분야의 협력과 지원 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중 남북한 저작물 교류가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한 경문협의 활동에 있어서 주목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문협은 2005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측 민화협 및 저작권 사무국과 금강산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저작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하였고, 동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북측 민화협 및 저작권 사무국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북측소설『황진이』에 대한 영화 각색권에 합의하였고, 소설『임꺽정』에 대한 저작권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개별적 저작권 관련 합의를 바탕으로 2005년 12월 30일부터 31일의 1박 2일 동안 경문협 관계자는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저작권 사무국, 김일성종합대학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인도적 지원 사업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12월 31일 경문협은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북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양도받는 저작권 협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첫째, 협력사업의 대상은 어문저작물(과학론문, 소설, 시 등), 음악저작물, 무대예술저작물(가극, 연극, 교예, 무용 등), 영상저작물(영화, 텔레비존 편집물 등), 미술저작물(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등),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람 저작물과 같은 북측의 저작물로 하고, 둘째,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는 경문협에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희망자와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경문협은 남측에서 북측의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 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전협상의 결과를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다음 북측 저작권자의 수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접수하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상술한 협의서에 따라 경문협은 남한 내에서 북한 측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무대예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업을 하고 있다.[19] 경문협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남한 내에서

19) 경문협이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와의 합의서에 따라,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저작물을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경문협에 이용 신청을 한다; (2) 경문협은 이용 희망자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3) 경문협은 해당 계약서를 북측 저작권사무국에 전달한다; (4) 북측 저작권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였던 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적법한 이용통로를 알게 된 남한 내 사업자들은 직접 북한저작권자와의 허락을 받거나, 제3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경문협의 승인을 받아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북한저작물 이용 관련 FGI 심층면접과 설문조사에서 경문협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측과의 합의서에 따라 경문협은 설립된 이후 2008년 전까지 남측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북측에 송금하면서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되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남측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를 더 이상 북측에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경문협은 (주)남북저작권센터와 2018년 1월 1일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 위임에 따른 업무협약서를 통해, 동 센터에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을 독점적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남북저작권센터와 가계약서를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직접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작권료는 북측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개별 이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남북저작권센터는 북측과 합의한 저작권 이용료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가계약과 관련하여 남북저작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 남북 정세로 인해 북측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태라 북측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사무소로부터 수표와 확인서를 받아오는 승인 절차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계약서의 의미는 “추후 북측으로부터 저작권 관련한 이의제기나 소 제기가 있을 경우 경문협과 남북저작권센터가 남측의 이용자에 앞서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20]

2. 경문협의 역할 및 주요 쟁점

2004년 9월 24일 설립된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와의 공식적인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북측을 대리하여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업을 수행해 온 것은 경문협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듯이 남북경제문화협력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사무국은 계약서를 북측의 저작권자에게 전달한다; (5) 북측 저작권자는 저작 동의서를 북측 저작권사무국에 전달한다; (6) 북측 저작권사무국은 동의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경문협에 전달한다; (7) 경문협은 해당 동의서와 확인서를 남측의 사용계약자에게 전달한다; 8) 경문협은 통일부에 절차에 따라 저작권료 반출 신청을 한다; (9) 통일부의 승인을 득한 후 저작료를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 송금한다; (10)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은 해당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한다, 예연재 이철주 사무총장 자문보고서 참고.

20) 이철주 사무총장 자문보고서.

면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경문협이 설립되기 이전에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공식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없다 보니 무단으로 북한저작물을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들은 법원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들도 있었다.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직접 저작권자와 접촉하여 허락을 받거나, 해외(주로 중국)의 제3자를 통한 대리중개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 효율성도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경문협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은 물론 향후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업예정자들의 입장에서도 북한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경문협의 존재의의와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설문조사결과와 FGI 전문가 심층면접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문협의 역할에 대해 남한 내 기대하는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문협을 포함하여 정부가 남한 내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역할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작권법상 경문협의 대리중개업 범위와 한계

저작권법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경문협에 관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문협이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서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순 대리중개업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문협은 단순한 대리중개업자가 아니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서 허가를 받아 포괄적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사례는 바로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로 노역한 탈북 국군포로 피해자 5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채무자로 하여 2020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21] 이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은 경문협을 제3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는데, 압류 대상 채권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채권으로, 이 채권은 경문협이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언론사로부터 징수한 1억 9252만원 중에서 배상액인 8,500여 만 원이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경문협은 2020년 8월 13일 이의신청을 하여 추심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태로, 경문협은 이의신청서에서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는 북한에 줄 돈이 아니고,

21)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7월 23일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여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각각 2천1백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선중앙TV나 북한판 도서 원저작자 등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의 성질에 대하여 다툴 예정이라고 한다.[22]

이와 같은 경문협이 법원에 이의신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신고제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한은 저작권 포괄대리행위로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23] 현행 저작권법 제2조(정의)에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24]

쟁점은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사무국 및 민화협과의 합의서에 따라 부여받은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에 대한 해석이다. 경문협 전문가는 이 용어와 관련하여 남측 출판사가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북측의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사전협상권하에 경문협이 남측 출판사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계약서를 북측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행정편의 목적으로 경문협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소송 등의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실제로 경문협은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료 징수와 송금 업무를 하고 있다.

(2) 경문협의 '가계약'에 관한 쟁점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와의 합의서를 통해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을 부여받은 경문협은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자들과 우선 '가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 가계약서는 북한 측으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경문협 전문가에 따르면, 경문협은 남한 내 북한저작물 이용자와의 가계약서를 북측에 전달하는 중개업무를 진행하고, 만일 북측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1차적인 책임을 경문협이 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가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상부 기관의 승인이나 특정 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

22) KBS 뉴스, "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2020.9.2.
23)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24)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고 체결한 계약[25]으로, 경문협이 남한 내 북한저작물 이용자와 일차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저작권자로부터 동의서 및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받아야 비로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26] 이때 경문협이 체결하는 가계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경문협은 포괄적 사전협상권을 근거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문협이 위험을 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7]

(3) 남북저작권센터 관련 쟁점

경문협은 2018년 1월 1일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공증확인한 모든 권한을 주식회사 남북저작권센터에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 위임에 따른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동 협약서에 따르면 남북저작권센터는 남측에서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을 독점적으로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단법인 경문협이 주식회사 남북저작권센터에 북측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을 독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복대리(複代理)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민법상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28]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도 아니고, 대리인의 대리인도 아니며, 본인의 대리인으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민법

25) 다음 백과사전 "가계약".

26) 이와 관련하여 이철주는 "가계약은 법적으로 계약(채무)의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다. 저작권 이용자는 원저작자의 동의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받아야 계약이 완성이 되며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경문협의 가계약은 북측과의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1) 북측 저작권사무국에 즉시 통보가 확인되지 않으며, (2)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의 유효성이 문제된다."고 주장한다.

27)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이 경문협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포괄적 사전협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의 '실질적'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북측에서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으므로,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남한 내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경문협의 역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남한 내 북한저작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주)남북저작권센터와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북측 저작권자의 추인 여부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만일 추인되지 않는다면 경문협 또는 남북저작권센터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경문협 간 합의서에 따르면, 경문협은 사전협상 결과를 북측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북측 저작권자의 수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접수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의를 하고 있으므로, 경문협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경문협이 '위험을 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남북한의 협약서 틀 내에서 경문협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가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8)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3년, 274면 참조; 김준호, 민법강의, 제23판, 박영사, 2017년, 311면 참조.

제123조 제1항). 한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고 그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 없으므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가 된다.

대리인의 복임권과 관련하여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따르면,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9] 만일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로, 무권대리에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즉 무권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태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의 문제를 남길 뿐이다. 다만,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에 따르면,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여 본인에 의한 추인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남북저작권센터가 경문협으로부터 북측 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사업을 독점적으로 대리하는 행위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문협이 복임권을 행사하여 복대리인으로서 남북저작권센터를 복대리인으로서 선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따르면, 대리인의 복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문협이 남북저작권센터에 대하여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북측 민화협 또는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승낙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예컨대,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소재불명 등으로 북측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문협이 남북저작권센터를 선임한 복임권 행사와 관련하여 민법 제120조 규정에 따른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

29) 위 곽윤직, 274면; 위 김준호, 312-313면.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남북한 합의서 내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문협의 복임권과 관련하여 북측으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증거자료도 현재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 상황에 미루어볼 때, 경문협의 복임권 행사는 경문협의 무권대리행위가 될 개연성이 높아서 향후 무권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경문협이 북측 민화협이나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포괄적인 사전협상 권한'을 복임권 선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현재 저작권법 분야에서 저작권 위탁관리업과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괄적 사전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없고, '포괄적 대리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포괄적 대리행위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할 수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 행사할 수 있다.[30] 환언하면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이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모든 대리중개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로 해석할지, 아니면 경문협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경문협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등록을 한 위탁관리업자로서의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경문협이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현행 저작권법의 범주 내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상, 대리중개업에 관한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또한 현행 민법상 복임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주 내에서만 복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경문협의 복임권 행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30) 저작권법 제2조(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절 저작물 주요 분야별 남북교류 현황과 과제[31)]

1. 음악 분야[32)]

남한에서 북한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 북한 음악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셋째, 북한 저작물의 악보를 입수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이다. 특히 FGI 심층면접조사에서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저작물의 악보(음원 포함) 입수 및 가사가 있는 경우에 '국가보안법'의 저촉 여부로 인하여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해도 좋은지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북한의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33)] 남한 내에서 북한의 음악저작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입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된 북한의 체제 선전과 지도자 찬양 등이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에 반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실연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문제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악보(음반, 음원 포함)를 입수하는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한다. 북한은 인쇄 및 제작 수량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악보(음반 및 음원 포함) 임대 및 유통 사업이 발달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에 문의하여 통일부를 통해 반입하고, 관련 비용을 송금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북한의 음악저작물을 입수하거나 공연하는 것은 남한 내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사례로서, 2000년 전주시향은 북한의 대표적인 교향곡 〈피바다〉를 남한 내에서 초연하기 위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 실연이 좌

31) 본 절은 "건국대학교 전영선 교수"의 자문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32) 본 내용은 "예언제의 이철재 사무총장"의 자문보고서 일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33)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제5항에 따르면,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찬양, 선전 등을 할 목적으로 문서(악보 포함), 도화(그림 등)을 수입, 복사, 소지, 반포, 판매, 취득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절된 적이 있었다. 교향곡 〈피바다〉(血으의海)는 항일혁명투쟁을 주제로 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칭해질 만큼 완성도 있는 곡으로 가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바다"(血海)가 주는 어휘의 거부감과 항일혁명투쟁을 김일성 찬양으로 연결하는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다만 이 교향곡은 2005년 재일동포 김홍재 지휘자의 연주실황 음반 〈임진강〉에 수록되어 발매가 되었고, 유튜브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립교향악단(DPRK National Symphony Orchestra)의 〈피바다〉 교향곡 연주를 쉽게 들을 수 있다.

(1) 북한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북한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화음악과 방송음악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상영된 영화 〈간 큰 가족〉에서 사용된 북한 음악 〈반갑습니다〉와 〈다시 만납시다〉, 2004년 제작된 영화 〈박치기〉에서 사용된 〈임진강〉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임진강〉은 2006년 KBS 드라마 〈서울 1945〉에서 적우가 부른 〈임진강〉이 삽입되었고, 2013년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도 삽입곡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임진강〉은 서정적인 멜로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가사를 담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재일동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남한 내에서도 수 명의 가수들이 불러 현재에는 유튜브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2)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음원 이용은 대부분 음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문협이 참여한 음반 〈동인〉과 예언제에서 프로듀싱한 북한음악 시리즈 음반이 있다. 북한의 음악과 관련하여 최초로 북한과 저작권 협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북한 노래를 담은 통일음반 '동인'은 북한의 유명한 가요들을 남한의 신세대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불렀고, 이를 UB엔터테인먼트사가 경문협과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다. 통일음반 '동인'에는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 남한에 이미 알려진 노래는 물론, "심장에 남는 사람", "우리는 하나",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여성은 꽃이라네", "아직은 말못해", "생이란 무엇인가", "김치깍두기 노래", "자장가" 등 총 10곡이 실렸다.[34] 제작사 (주)UB엔터테인먼트는는 통일음반 제작을 계기로 남북 간 음악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하고, 남과 북을 오가면 콘서트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작사 (주)UB엔터테인먼트는 원저작자를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로 하여 동의서를 받았고, 2006년 4월 30일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4) 선연숙, "북한노래 첫 합법음반 '동인' 출시", 이데일리, 2007.6.7.

이외에도 2006년 6월 북한 유일의 국립해외예술단인 〈금강산가극단〉의 내한공연이 이루어졌다. 이 공연의 부대사업으로 〈금강산가극단〉 창단 50주년 기념음반 '비약'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출시되었는데, 이 음반은 북한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여 공식 제작되어 유통된 국내 최초의 북한 음반으로 알려져있다. 이 음반은 〈금강산가극단〉이 노래와 반주 등을 하여 음원을 만들었고, 이를 국내에 합법적으로 반입하여 출시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곡으로는 가요 "조선팔경가", "아리랑", "도라지", "룡강기나라", "심장에 남는 사람", "가고파"와 가무극 〈달매와 범달이〉 중 "달빛이 좋아 이 밤이 좋아", 음악 무용조곡 〈계절따라 피는 사랑〉 중 "아 내사랑", 장새납 연주곡 "열풍", "회향닐리리", 소해금4중주 "종다리", 관악4중주 "새봄이 왔네"로 구성하여 다양한 북한 음악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상술한 음반들은 이철주 예연재 사무총장과 〈금강산가극단〉 창작기획국 간 협의를 거쳐 연목(repertory)을 선정한 후, 〈금강산가극단〉 측에서 음원을 만들어 제공하면, 예연재가 통일부에 개별 음반별로 협력사업 및 반입 허가를 받아 남측의 유통배급사를 통해 공식 출시를 하도록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음반 제작을 위해 남측 내 사진작가가 〈금강산가극단〉에 동행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금강산가극단〉은 음반에 싣게 될 인쇄제작물의 원고를 추가제공하였다. 위 음반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35]

1) 장새납 독주곡집 〈열풍(熱風)〉

○ 출시 : 2007년 5월
○ 연주 : 최영덕 (공훈배우, 북한 2.16예술상 2위 입상)
○ 반주 : 금강산가극단민족관현악단
○ 연목 :
(1) 그네 뛰는 처녀
(2) 회양닐리리
(3) 열풍
(4) 타타르인의 춤 : 오페라 〈Prince Igor〉 중
(5) 계곡
(6) 만경대의 봄
(7) 룡강기나리
(8) Amazing Grace : 흑인영가 + 아리랑
(9)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35) 이철주 자문보고서 참조.

(10) Vocalise : 라흐마니노프
(11) 봄 : 한국의 김대성 작곡, 반주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2) 조선민족기악곡집 〈소통(疏通)〉

○ 출시 : 2007년 6월
○ 연목 :
(1) 소해금 독주 〈봄맞이〉 : 윤혜경 연주
(2) 고음저대 독주 〈서도아리랑〉 : 리숙임 연주
(3) 저대 독주 〈구룡폭포를 찾아서〉 : 강년호 연주
(4) 중주 〈첫 봉화〉 : 금강산가극단 기악부
(5) 단소 독주 〈봄소식〉 : 김성철 연주
(6) 관악4중주 〈새봄이 왔네〉 : 금강산가극단 기악부
(7) 소해금 4중주 〈종다리〉: 황강선, 하명수, 윤혜경, 김명순 연주
(8) 관악중주 〈황금벌〉 : 금강산가극단 기악부
(9) 장새납 독주 〈회양닐리리〉 : 최영덕 연주
(10) 소해금 2중주 〈아리랑〉 : 하명수, 윤혜경, 김지희(옥류금)

3) 북녘 서정가요 독창곡집 〈봄(春)〉

○ 출시 : 2007년 7월
○ 노래 : 전명화 (2007년 4월의 봄 평양친선예술축전 독창부문 금상 수상)
○ 반주 : 금강산가극단민족관현악단
○ 연목 :
(1) 꽃노래 : 민족가극 〈춘향전〉 중
(2) 아 내사랑 : 음악무용조국 〈계절따라 피는 사랑〉 중
(3) 둥근달 여기내려 : 무용 〈꽃등놀이〉 중 방창
(4) 달빛이 좋아서 이 밤이 좋아 : 가무극 〈달매와 범달이〉 중
(5) 그대는 내 사랑 : 예술영화 〈하랑과 진장군〉 중
(6) 새별 : 예술영화 〈새별〉 중
(7) 심장에 남는 사람 : 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중
(8) 가고파
(9) 하나 : 재일 조선인 작품
(10) 임진강

4) 고음저대 독주곡집 〈금강선녀(金剛仙女)〉

○ 출시 : 2007년 8월
○ 노래 : 리숙임 (북한 2.16예술상 죽관악기 부문 1위 없는 2위 수상)
○ 반주 : 금강산가극단민족관현악단, 재일민족악기중주단 〈민악〉
○ 연목 :
(1) 금강선녀 : 무용음악 〈금강산팔선녀〉 편곡
(2) 농장벌의 봄 : 원곡 〈지상낙원〉 편곡
(3) 서도 아리랑 : 〈구조아리랑〉 편곡
(4) 소주야곡(蘇州夜曲) : 영화 〈중국의 밤〉 주제가
(5) Csardas : 이탈리아 몬티 작곡, 헝가리 민속춤곡
(6) 류광(流光)-세월이 흘러가도
(7) 내 고향에 봄이 왔네 : 죽관 3중주/ 김성철(단소), 강년호(저대)

5) 민족목관악기 선곡집 〈들판에서〉

○ 출시 : 2009년 2월
○ 연주 : 최영덕(장새납), 리숙임(고음저대), 김수일(대피리), 김성철(단소), 강년호(저대), 리문기(장새납, 저피리)
○ 반주 : 금강산가극단민족관현악단
○ 연목 :
(1) 목관악기 중주 〈뽕따러가세〉 : 신민요 〈뽕따러가세〉 편곡
(2) 목관 6중주 〈함경도 농부가〉 : 함경도 지방의 〈농부가〉를 소재로 창작
(3) 저대 독주 〈은하수와 봉황새〉 : 원곡 〈은하수〉와 〈봉황곡〉을 묶어 연주
(4) 목관악기 중주 〈My Favorite Things〉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5) 단소 독주 〈들판에서〉 : 고순희(양금) 반주
(6) 장새납 독주 〈풍년든 금강마을〉 : 원곡 혁명가극 〈금강산의노래〉 삽입곡
(7) 목관 6중주 〈Top of the world〉 : 카펜터즈가 부른 팝송을 편곡
(8) 목관 6중주 〈Hungarian Dance no.5〉 : 원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9) 대피리 독주 〈새날의 기쁨〉 : 민족악기 대피리 최초의 창작 협주곡 편곡
(10) 고음저대 독주 〈류광(流光)-세월이 흘러가도〉
(11) 고음저대 독주 〈Csardas〉 : 이탈리아 몬티 작곡, 헝가리 민속춤곡
(12) 죽관 3중주 〈무궁화 3형제〉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삽입곡 편곡

6) 북녘의 남성 성악곡집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

○ 출시 : 2009년 12월
○ 노래 : 류전현(인민배우), 리영수(인민배우), 장기생(공훈배우),
황기렬(공훈배우),
○ 반주 : 피바다가극단, 영화및방송음악단
○ 연목 :
(1)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 : 류전현
(2) 아, 내 조국 : 황기렬, 예술영화 〈은비녀〉 OST
(3) 다정한 동무여 : 황기렬
(4) 압록강 2천리 : 류전현
(5) 사향가 : 황기렬
(6) 사랑가 : 황기렬, 예술영화 〈춘향전〉 OST
(7) 한송이 목란꽃에 잠기는 추억 : 류전현,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삽입곡
(8) 동해의 달밤 : 장기생
(9)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 황기렬
(10)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 장기생, 대음악무용서사시 〈내 조국의 푸른 하늘〉 삽입곡
(11) 축배 : 장기생
(12) 님과 함께 : 리영수
(13) 꿈 많은 그대 : 리영수
(14) 내 사랑하는 나무 : 장기생
(15) 임진강 : 리영수

7) 북한음악회 연주 현황

○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1) 2002 겨레의 노래뎐 : 아리랑(최성환), 해당화(최재선 개작)
(2) 2004 겨레의 노래뎐 : 휘파람(김혜영), 박연폭포/ 금강산타령/ 바다의 노래/ 그네 뛰는 처녀(신광호), 사랑 사랑 내사랑/ 광한루야 잘 있거라(신광호, 김은희), 다시 만나요(김혜영)
(3) 2005 겨레의 노래뎐 : 아리랑, 압록강 2천리
(4) 2006 겨레의 노래뎐 : 노한파도(저대 협주곡), 도라지(25형 가야금 협주곡), 관현악 〈새봄〉을 주제로한 살풀이(안기옥 작곡), 관현악과 가곡 〈진달래꽃〉 (김순남 작곡)

(5) 2007 겨레의 노래뎐 : 아리랑, 거문고협주곡 〈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단소와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초소의 봄〉 (편곡 : 계성원)
(6) 2009 겨레의 노래뎐 : 통일의 길(노래)
(7) 2018년 관현악 시리즈 : 바이올린 협주곡 〈옹헤야〉(리한우 편곡),
단소 협주곡 〈긴 아리랑〉(리한우 작고), 〈경축〉(정세룡 작곡)

(비고) "겨레의 노래뎐" 시리즈에서 금강산가극단 단원들이 출연

○ 통일신년음악회

(1) 2018년 하나콘서트 : 아리랑,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2) 2019년 하나콘서트 : 아리랑, 모란봉
(3) 2020년 하나콘서트 : 그네뛰는 처녀
(4) 2015 모두를 위한 통일음악회 : 임진강,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김정균 작곡), 조선은 하나다(윤충남 작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2020년 8월 특별전 기념음악회)

(1) 모란봉(김연규 작곡)
(2) 칼춤(최옥삼 작곡)
(3) 가야금 협주곡 옹헤야 (한철 편곡)
(4) 가야금 협주곡 평양의 봄(정남희 작곡)
(5) 도라지(강기창 편곡)
(6) 법성포 배노래(리건우 편곡)
(7) 자장가(김순남 작곡)
(8) 동백꽃(리건우 작곡)

○ 북한음악 연주 내역(북한 공연 포함)

(1) 〈그네 뛰는 처녀〉, 장새납 협연 / 2000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서울)
(2) 관현악곡 〈내 고향의 정든 집〉 / 2000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서울)
관현악곡 〈그리운 강남〉 / 2000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서울)
(3) 바이올린 협주곡 〈사향가〉
2000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서울)
2012년 5월 25일 순천시문화회관 '통일하모니'(통일교육원) 윤혜림(vn)
2013년 7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평화콘서트' 김진향(vn)
Crossing Borders, NK지식인연대 주최 / 통일부 후원
2014년 7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평화콘서트' 박수경(vn)

(7)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
2011.08.18. 평택대 90주년기념관 '서울콘서트 오케스트라 초청 평화음악회' 평택YMCA,경기남부하나센터 주최
2010. 07.16 양재동 힐스테이트 갤러리
2007.09.20 밀알학교 세라믹홀 '북녘 수재민돕기음악회' 남북평화재단 주최
(4) 〈눈이 내린다〉
박순아 가야금 독주 / 2019. 12.13. 교통방송(R)
가야금 솔로 곡으로 연주 / 2009.09.08. 화요음악회, 부산카톨릭센터 백시내
옥류금 독주/ 현의
2007.08.04. 박지인 25현 가야금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노래 2005.3.2. 가야금 김혜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
서태경 가야금 독주회, 2004.07.21. 국립국악원
(5) 피아노협주곡 〈백두산의 눈보라〉 / 2000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북)
(6) 관현악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김영규 작곡, 1970년)
2000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서울), 2001, 2002 전주시립교향악단
(7) 〈풍년든 금강마을〉 장새납 협연 / 1985년 평양예술단 연주
(8) 〈모란봉〉, 장새납 독주 / 200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연주
(9) 〈초소의 봄〉, 단소 협주곡
(10) 관현악곡 〈아리랑〉(최성환 작곡, 1979년)
1999년 전주시립교향악단
2002년 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 남북합동 연주 외 다수
관현악곡 〈도라지〉 2002 전주시립교향악단
관현악곡 〈임진강〉 울산시립교향악단 외 다수
관현악곡 〈밀양 아리랑〉 2002년 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 남북합동 연주
(11) 관현악 〈도라지를 주제로 한 무곡〉 / 1991년 산토리홀 남북합동음악제

○ 교류 음악회
(1) 1985년 남북예술공연단 교환방문
무용 - 금강선녀, 달맞이, 칼춤, 풍년 든 벌판에서, 쟁강춤 등
중창 - 노들강변, 조선팔경가, 도라지타령, 양산도, 까투리 타령, 모란봉, 웃음꽃이 만발했네 등
가야금 독주 - 봄
장새납 독주 - 그네 뛰는 처녀 등
(2)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 (1990.12.9.~10)

여성오중창 - 민요연곡, 회양닐리리
민요삼중창 - 신고산타령
단소독주 - 중모리, 안땅
민요독창 - 능수버들, 양산도, 산천가, 배따라기
여성독창 - 평북녕변가, 바다의 노래, 해당화
옥류금독주 - 도라지
여성저음독창 - 통일의 길
가야금독주와 병창 - 웅헤야
혼성민요제창 - 정방산성가, 자진난봉가
소합창 - 우리의 소원은 통일(출연자 전원)

(3) 제1회 윤이상통일음악회 (1998.11.3.~5)
관현악곡 〈아리랑〉

(4)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2000. 8.20~22) 광복55돌(8.15)경축 공동선언 환영
- 장소 : KBS홀, 예술의전당(4회)
- 참가 : KBS교향악단 / 조선국립교향악단(허이복 단장)
북한 - 김병화(지휘), 허광수(베이스), 리영욱(테너), 리향숙(소프라노), 정현희(바이올린)
남한 - 곽승(지휘), 조수미(소프라노), 장한나(첼로)
관현악 -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아리랑, 내 고향에 정든 집, 그리운 강남
테너 독창 - 압록강2천리,
소프라노 독창 - 동백꽃,
바이올린 협주 - 사향가

(5) 추석맞이 남북교향악연주회 (2002. 9.20)
- 장소 : 평양 봉화예술극장
- 2회차 공연 1부
관현악 - 그네뛰는 처녀
피아노협주곡(김근철) - 백두산의 눈보라
관현악 -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6) 평양학생소년예술단 (2000.5.24.)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노래 - 반갑습니다
경음악 - 백두의 말발굽소리
손풍금 5중주곡 - 통일렬차 달린다

인형춤 – 제일 고운 옷
장고재주 – 승전고 울려라
여자 독창 – 고향의 봄, 우리아빠 제일 좋아, 반달
앙코르 – 영천아리랑, 노들강변, 도라지, 반월가, 벌목부의 노래

〈금강산가극단〉이 발행한 아래 저작권 확인서는 예연재 사무총장이 음반을 발매하기에 앞서 2008년 체결한 합의서의 연장선 속에서, 한국 내의 제작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받은 문서라고 한다.

이외에도 예연재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겨레동요애호회'와 협력하여 통일동요음반 〈길동무〉를 2010년 6월에 출시하였는데, 이 음반에는 북녘의 동요, 재일동포 동요, 통일주제 동요의 3부로 구성되어 총 35곡이 수록되었다. 저작권은 '겨레동요애호회'의 확인서로 마무리되었고, 사용료는 국내 출시 음반을 현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음원은 북측의 영화및방송음악단, 평양율곡중학교 중창단, 피바다가극단의 출연으로 제작이 되었다.[36]

〈그림 4-1〉 저작권 확인서 샘플 1

확 인 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금강산가극단의 실연 및 저작물의 남측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이철주 ((주)케이비트 공동대표)와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다.

1. 협력사업의 대상은 음악저작물 (음반, 악보 등), 무대예술저작물 (가극, 콘서트, 무용 등)등 금강산가극단의 모든 실연 및 저작물로 한다.
2. 금강산가극단은 이철주에게 금강산가극단 실연 및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 희망자와 금강산가극단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이철주는 남측에서 금강산가극단측의 실연 및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교류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 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전협상의 결과를 금강산가극단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다음 금강산가극단의 수표와 관련 문서를 접수하는 합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09 년 12 월 17 일

금강산가극단
단장 리룡수

36) 이철주 사무총장 자문보고서 참조.

(3) 악보로 실연하는 경우

북한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일명 “기악 혁명”을 완성하였는데, 그 바탕에는 전통 악기를 개량해 서양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개량악기를 성공적으로 완성 보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주단은 서양 오케스트라에 민족악기 연주자를 추가해 “배합관현악단” 형식의 ‘조선식’ 교향악단을 안착시켜서 배합관현악곡의 창작과 편곡이 다수이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의 악기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표적인 악기 중 하나인 33개의 줄로 구성된 ‘옥류금’, 전통 해금을 개량한 중해금, 남한의 태평소와 유사한 장새납 등의 악기들이 있고, 북한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악기들로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제작되다 보니, 남한의 교향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총보 또는 파트보를 구할 수 없어서 단선률 악보를 구해 편곡을 하는 방법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편곡이라는 2차적저작물작성행위가 관여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북한 공연단과 직접 접촉을 통해 남한 내에서 음악 연주가 진행된 사례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예연재는 2006년 6월 서울올림픽홀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금강산가극단〉 특별공연을 기획하면서 북측 국립예술단체인 〈금강산가극단〉과 직접 계약을 하였고, 따라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의 저작권 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이때 저작권 사용료는 출연료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또한 예연재는 2007년 12월 〈금강산가극단〉 무용부 내한공연 “북녘의 명무-조선무용50년”(국립국악원 예악당)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때 무용음악 음원 제작을 위하여 북측 만수대예술단과 피바가가극단이 참여하였다.

한편 국내 교향악단이 북한 교향곡 연주를 위하여 경문협을 통해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10월 KBS 교향악단은 일본을 순회공연하면서 북한의 교향곡 〈아리랑〉을 연주하기 위하여 경문협을 통해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 이용료를 지급하였다. 이후 국공립 예술단체 대부분은 북한 곡을 연주할 때에는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 포함)에 연주곡에 관해 저작물 이용을 위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의 공연이나 개인 발표회 규모의 공연의 경우 북한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낮은 수준의 제작비 등으로 별도의 (가)계약서 없이 북한의 곡을 실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8월 국립국악원은 특별전시회 “모란봉이요 대동강이로다”를 통해 북한의 음악

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는데,[37] 이때 국립국악원은 남북저작권 센터와 협의를 거쳐 북한 음악 연주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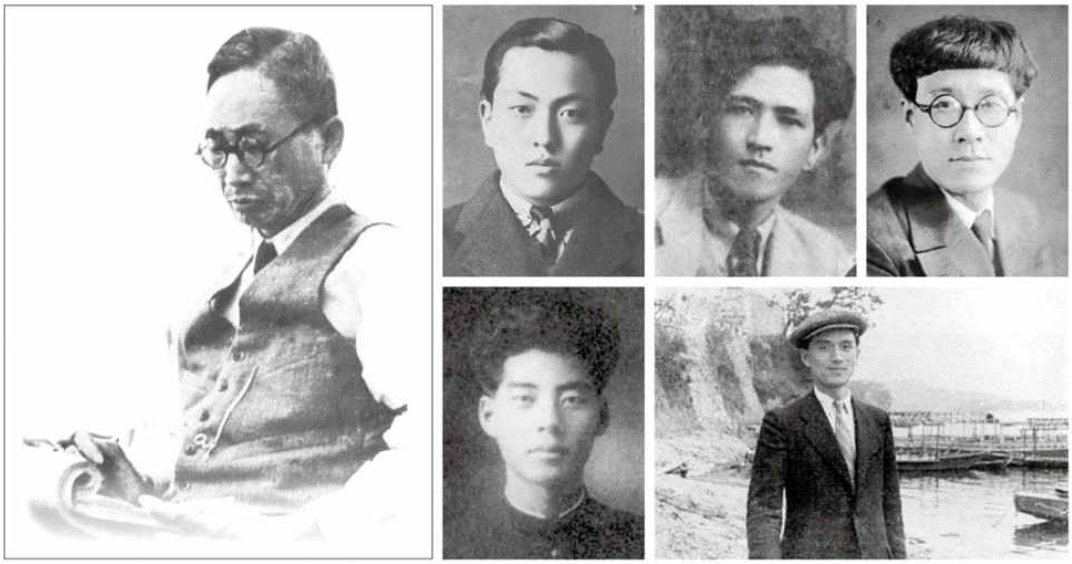
한편 악보를 입수하여 북한 음악을 연주하는 사업의 예로서 예연재가 기획 및 총감독을 맡고 있는 통일신년음악회 〈하나콘서트〉를 들 수 있다. 원래 북한의 〈윤이상 관현악단〉과 신년 음악회 교환 및 공동행사로 기획 추진이 되었다가 중국의 중개인과 의향서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남북 정세로 인하여 합동 공연까지는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다만 북한음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 상호 간에 이해를 증진하며 통일의식을 확산한다는 취지에 따라 매년 북한의 대표곡들을 선정하여 공연을 하고 있다. 이때 해당 공연의 연주단(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측이 저작권 이용의 계약 주체가 되어서 남북저작권센터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신년 초에 롯데콘서트에서 개최되는 〈하나콘서트〉에서 연주된 북한의 곡들은 다음과 같다: (1) 2018년 관현악곡 “아리랑”(최성환 작곡), 관현악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합창곡 창작 김옥성, 관현악 편곡 김영규), 관현악곡 “임진강”(가요 창작 고종환, 편곡), (2) 2019년 관현악곡 “모란봉”(원곡 창부타령, 신민요 창작 김관보, 관현악 편곡 김연규), (3) 2020년 관현악곡 “그네뛰는 처녀” (신민요 창작 김준도, 관현악 편곡 김윤붕).

2. 출판 분야[38]

(1) 남북 저작권 교류의 경과와 쟁점

1988년 올림픽 이전까지 북한 출판물은 남쪽에서 읽을 수 없었다. 1988년 7월 19일 납·월북 문인 120여명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때 임화, 이기영, 한설야, 이태준, 박태원, 김남천 등 납북됐거나 월북한 문인들의 작품이 남측에서 출판이 가능해졌다.[39]

37) MBC 통일전망대, “모란봉이요, 대동강이로다”, 2020.8.15.
38) 본 내용은 “건국대학교 전영선 교수”의 자문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39) 한겨레, ‘뻴셈의 문학사’에서 통일 통합 문학사로, 2018.8.16.



1988년 '납·월북 문인 해금 조치' 30주년을 맞아 그들의 문학사적 의미를 짚고 통일 문학 시대를 전망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이기영(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장환, 임화, 박태원, 이태준, 백석. 〈한겨레〉 자료사진

과거 북측 문헌은 남북 간 갈등 시기에 '불온문서'로서 엄격히 관리되었으며 자료의 접근도 제한되었다.[40] 또한 북한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온간행물 취급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북한자료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북한과 관련한 자료를 의미하며, 현재 북한자료와 관련한 자료는 특수자료로 분류되어「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41] 당시에는 북한저작물 유통이 금지되었으며, 국어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한정된 영역에서 북측 출판물에 대한 무단 복제와 비공식적인 유통이 이루어졌고 관행으로 묵인되었다.

1988년 '7·7 특별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자료의 공개제도를 개선하였다. 남북 사이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988년 납·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이루어졌고, 1989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절감하고서, 1989년 5월 22

40)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서 출판된 출판물이나 저작물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관리되었다.

41)「특수자료취급지침」은 대통령령 제15136호『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제4조 제6호 및 제5조에 따라 1970년 2월 16일 제정되었다.「특수자료취급지침」에서는 특수자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이다. 기타 특수자료의 판단 여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부처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고, 통일부에서는 필요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 국토통일원은 정부 보유의 정보·자료의 대민공개를 위한 종합창구로서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센터를 개관하면서 북측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납·월북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출판이 이루어지면서 관련한 저작권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에 따라 남측에 있는 유족에게 저작권을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측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북한 주민의 저작물도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저작물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측 출판물이 남측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된 것은 1990대 초반이었다. 1991년 12월 13일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명시하면서 남북 당국은 상호 저작물에 대한 교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 1992년 9월 17일에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9조 제5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남북 사이에 불법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사업자 간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다.

저작권 관련 남북 교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남북 저작권 관련 주요 일지[42)]

날짜	내용	비고
1986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1988	월북작가 해금조치에 따른 출판권 보호 차원의 저작권 문제가 제기됨	
1991.12.1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상호 저작권 보호 조치 실시 합의	16조에 출판보도 분야 교류협력 규정
1992	조명암(조령출) 500곡에 대한 저작권 회복	
1992.1	여강출판사 아름출판사를 상대로 '이조실록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1992.5.7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1993.11	'리조실록' 관련 여강출판사 아름출판사를 상대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원고 1차 승소
1994	여강출판사 '동의보감' 출판계약	
1996.8.21	남측 베른협약 가입	
1998	한국사진학회 '렌즈로 본 조국' 남북 공동 출판	
1998	누리미디어 북한 '고려사', '팔만대장경', '발해사연구', '동국이상국집' 등의 고문헌 CD롬 출간 보급	북한적법성 인정
1998.9	SBS 북한영화 '안중근 리등박문을 쏘다' 방영	
1998.10	KBS '림꺽정' 방영	
1998.	영화 '림꺽정' 관련 소송	신청기각(저작권소재 입증 불가)
1998.12	신상옥 감독 MBC 방영 '불가사리' 저작권 관련 소송	
1999.7.5	북한, 월북작가 음악에 대한 저작권 주장	
1999.10	남한 북한의 위성방송(조선중앙TV) 수신 허용	
2000.10	남한 출판사 간 분쟁에서 북한 출판지도국 명의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가 판권 양도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확인서	남한 법원에서 북한의 문건 공식 인정
2000.11	남한 영화인 방북, 남북 영화 교류 사업 협의	
2001.3.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채택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
2001.4.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저작권법 공포	
2003.1	『조선향토대백과』 편찬 출판	
2003	부산국제영화제 북한 영화 6편 상영	
2003.3	저작권법 신규정 보충	

42) 전영선 교수가 자신의 글("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 「『亞太 쟁점과 연구』제1권 1호(2006. 봄), 127-129쪽)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날짜	내용	비고
2003.4.28.	북한 베른협약 가입	「조선신보」 보도
2003.5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제도도입 운영 확인	
2004.6	북한 저작권사무국 신설, 출판지도국 판권처에서 위상을 격상하여 정무원 직속으로 개편	
2004.6.24	남한 WCT가입	온라인저작권 보호
2005.2.20	홍석중 남측 저작권 불법도용 문제 제기	
2005.2.21.	사계절 출판사 저작권 체결의사 표명	
2005.3.15	북측의 작가 홍석중이 〈림꺽정〉의 저작권 상속자이며 소설 〈황진이〉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문제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함.	홍석중
2005.3.15	북측 저작권사무국은 북측 저자권의 불법 이용에 대한 조사와 배상 사업 및 저작재산권 관리 사업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함.	저작권사무국
2005. 4	통일부 북한 저작권 관리에 대한 안내문 발표	북한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 사무국의 확인서 제출
2005. 4. 29-5. 6	전주국제영화제 북한 영화상영	홍콩 고선필름을 통해 수입
2005.5.7	소설 '임꺽정' 저작권료 합의 및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 영화 계약	
2005.5.5	저작권사무국은 〈황진이〉의 영화각색권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5.7.20	최명익의 조카 최항식은 최명익의 장편소설 〈서산대사〉의 출판권한을 자음과모음에 위임함.	최항식(최명익 조카)
2005.10	남한 판도라 TV 북한 방송물 인터넷 서비스	내나라비데오
2005.11.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북측 『동의보감』의 저작권이 보건부동의원에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이나 남측에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줌.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
2005.11.20	림종상은 장편역사소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출판권한을 자음과모음에 위임함.	림종상
2005.12.20	저작권사무국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비롯하여 소설과 도서의 출판권한을 자음과모음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6.3.1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북측 노래 10곡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발급함.	조선음악가동맹
2006.4.17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위성으로 방영되는 TV방송영상물에 대한 남측지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사업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함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날짜	내용	비고
2006.4.30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북측 노래 10곡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하여 UB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확인서를 발급함.	저작권사무국
2006.5.2	조선영화수출입사는 위성TV로 방영된 영화에 대한 남측지역에서의 저작권보호 사업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함	조선영화수출입사
2006.5.2	평양출판사는 〈주몽〉, 〈고구려의 새벽〉을 남측 자음과모음 출판사에서 3년 동안 출판하는 데 대한 작가 김호성의 동의서를 발급함	평양출판사
2006.5.2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동의 아래 〈주몽〉, 〈고구려의 새벽〉을 남측 자음과모음 출판사에 3년 동안 양도하였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6.5.5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는 북측 영상저작물에 대한 계약권리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함	저작권사무국, 민족화해협의회
2006.5.18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제일기획이 조선중앙TV의 방송원(최금동)의 육성록음 이용에 대해 동의함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007.9.1	조선영화수출입사는 위성 TV방영되는 북한의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 등의 저작권 관리기관으로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KBS, MBC, SBS 계약 동의서 발행	조선영화수출입사
2007.9.1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최승희 사진 9매와 동화상자료(부채춤, 장고춤)VCD 1장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함.	저작권 상속자는 최승희의 조카 최호섭
2007.9.3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용 방송영상에 대한 저작권기관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KBS, MBC, SBS 계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발행	
2007.9.5	저작권사무국은 최승희 사진 9매와 동화상자료(부채춤, 장고춤)VCD 1장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저작물의 사용권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양도함.	저작권사무국
2007.9.7	저작권사무국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KBS, MBC, SBS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북측 저작권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7.9.25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가 속한 기관의 동의 하에 KBS교향악단에서 북측 관현악 〈아리랑〉의 저작물의 사용권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7.9.27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부장 최균삼은 KBS교향악단에서 북측 관현악 〈아리랑〉의 저작물 사용권 이용에 대해 동의함	조선음악가동맹
2007.11.1	조선문화보존사는 누리미디어와 출판사의 『조선유적유물도감』(20권) 저작물 이용에 대해 항의함	조선문화보존사
2007.11.1	『조선유적유물도감』(20권) 저작권이 조선문화보존사에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조선문화보존사

날짜	내용	비고
2007.11.19	저작권위원회에서 '최승희 〈장고춤〉동영상' 외 1건의 영상저작물을 등록함	저작권위원회

(2) 남북 저작권 교류 전망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저작권 교류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남북간 이루어졌던 저작권 교류 과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저작물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북한저작물을 남한에서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북한저작물을 수입하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때 보통 유관 부서(예: 대학은 교육부, 출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유형은 북한저작물을 그대로 남한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영향보다는 물자반입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둘째, 북한의 출판물에 대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남한에서 재출판하는 경우로, 이 유형은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의 형태이다.

셋째, 북한의 출판물을 원 소스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북한 출판물을 편집하거나 선집으로 출판하는 경우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계약 문제이기도 해서, 북한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넷째, 남북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출판하는 경우이다. 음악 분야에서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주를 하듯이, 출판 분야에서도 민간 차원의 학술교류가 증대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출판하는 유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남북의 학술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남한이 기획하고 북한을 대행하여 출판하는 저작물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명승이나 음식, 유적,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남한이 기획한 후에 북한의 허락을 얻어 북한을 대행하여 출판을 하는 협력사업의 유형이다.

여섯째, 북한이 퍼블릭도메인 영역에 두는 출판물을 남한에서 이용하는 경우이다. 음

악 공연의 경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립교향악단이 〈피바다〉를 남한에서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저작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남한에서 무료로 시청하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인데, 북한이 무료로 출판, 공연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체제 선전용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3) 남북 저작권 관련 분쟁 분석

1)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사례 및 유형

북한저작물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까지 발전된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북한저작물을 불법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와 저작권 계약 주체의 적합성 문제로 구분지을 수 있다.

남북 저작권과 관련하여 남한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수 건이 있다.[43] 예를 들면, 이조실록 사건,[44] 북역고려사사건,[45] 두만강 사건,[46] 동의보감 사건,[47] 온달전 사건,[48] 불가사리 사건,[49] 고향초 사건[50] 등이 있다. 특히 남한에서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주체에 관한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92년 서울지방법원에 제소된 “리조실록”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내용은 북한과의 출판계약 및 저작권의 유효성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번역한 『이조실록』의 영인본을 직접 복제 출판권 설정계약을 한 원고가 이 책을 무단복제하여 제작 중인 피고를 상대로 ‘도서의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북한이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북한저작물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며, 번역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의 유무와 관계 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번역저작자는 원저작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게 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1992년 월북작가 조명암(조령출)의 혈육인 조혜령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과거에 남한 내에 무단으로 “바다의 교향시”, “무정천리”, “번지없는 주막” 등의 음악을

43)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중 자료 〉 북한저작권 관련 판례.
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부 1994. 2. 14. 판결, 93카합2009 가처분이의.
45) 서울고등법원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
46)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자 89카13692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47)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48) 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가합13695판결 손해배상(지).
49) 서울고등법원 1999.10.12 자 99라130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50) 서울지방법원 1997. 5. 9 선고 96가합48324 판결 손해배상(지).

무단이용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판결에서 500여 곡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북한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대하여 저작자의 유족이 남한에 문제를 제기하여 출판 분야에서는 홍석중이 소설 '임꺽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료 합의서를 성사시킨 경우가 있고,[51] 소설 '황진이'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있다.[52]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침해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저작권자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가정을 이룬 경우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판례이다. 예를 들면,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이기영의 "두만강" 등의 경우 법원은 북한 작가의 작품이라도 남한의 유족에게 저작권이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북한은 북측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은 부인과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저작물이므로 부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북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태원의 작품을 남측에서 출판하는 것은 불법이며, 남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측에서 불법 출판을 하는 것이 된다. 이는 공동저작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면서 또한 보상에 관한 문제가 얽혀져 있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다. 남북 관계가 더욱 개선되면 이러한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안별 접근방법 보다 남북 당국 간 차원에서 협의를 통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남북 저작권 분쟁 원인 분석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진행된 남북 저작권 관련된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저작물이 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등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작가, 예술인 등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다만 북한 저작권법 제26조(저작물리용의 기본요구)에

51) 최재봉, "남-북, 첫 저작권 계약 맺었다", 한겨레신문, 2005.5.11.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318.html.
52) DailyNK, "北 '황진이' 저작권소송 남북 첫 법원 합의", 2006.7.24.

의하면,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저작물의 리용요금)에 따르면,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이용허락에 대한 이용료는 가격제정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정치 상황에서 저작권이 개인, 소속기관, 제작사, 수출입 실무기관 등에 있는지 불명확하고, 따라서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계약 주체가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저작권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당사자이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권사무국, 저작권상속자, 기관대표자, 상속자 등이 계약 주체가 되고 있다. 저작권의 교류와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북한 저작권사무국,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권 상속자, 음악이나 방송, 영화와 같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 등이 저작권 행사의 주체가 되고 있다.

둘째, 남한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이용료가 북한의 저작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리조실록』의 분쟁에서도 피고 아름출판사는 “로알티 대금결제와 송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경문협이나 제3자를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북한의 저작권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자 본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이용의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저작권자에 대한 송금 또는 대가 수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를 들면 저작권자가 남한에서 송금한 이용료를 받았다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저작물의 분야에 비해 어문저작물인 출판 분야에서 북한저작물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남북 당국의 적극적 노력과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조약 체약국으로서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의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보인다면, 남북저작물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 남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남북한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넷째, 북한저작물의 가치에 관한 인식 문제이다. 북한저작물을 남한에서 출판하는 경

우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저작물 자체의 상업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FGI 심층면접조사 또는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보여졌듯이,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상업적 목적 보다는 남북교류 관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한 이래 저작권법을 2차례나 추가로 더 개정(2006년, 2012년)하였고, 저작권 문제에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저작물의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제 외국에서 북한저작물이 무단 이용하는데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적 배경을 마련해 두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무단이용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통해 북한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이를 통해 합법적인 이용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정부(통일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FGI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소극적인 현재의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사업의 활성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영상저작물 분야

‘한국영상자료원’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북한 영화들이 남한의 영화제 등에서 계속 상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2018년에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북한 영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북한 영화 편수가 남한에서 다수 상영되었다. 남한에서 최초로 북한 영화가 상영된 영화제는 2018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 특히 남한의 국제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가 최초로 상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나게 되면서 북한 영화 상영 편수도 점차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화를 포함하여 남북한 사이에 공연예술이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 등 정치적 역학관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남북 관계가 다소 경색된 2020년에도 여전히 북한 영화를 대여하여 상영하였던 영화제들이 있는데, 남북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 또는 영화제든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공연 또는 영화제든지 남한에서 북한 영화를 포함한 공연예술

을 지속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문화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영상자료원〉

구분	편수	기관명 (업체명)	비고
2018년 (총 15편)	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1	신필름예술영화제	
	5	상록수 다문화구제단편영화제	
	2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포럼 “영화로 보는 북한 도시와 풍경”	
2019년 (8편)	3	평창남북평화영화제	
	1	이음영화제	
	1	남북문화예술교류포럼	
	2	평창남북평화영화제	
	1	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 “별의 별 클래스 북한영화상영회”	
2020년 (2편)	1	평창국제평화영화제	
	1	이음영화제	

4. 언론 분야[53]

(1) 개요

남북 간 뉴스저작물 교류의 시작은 2000년 8월 남측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에서 시작된다. 이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 중인 남북대표단이 동년 8월 19일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7개 부문으로 단체별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남북 기자단체 간 모임에서 남측은 남북 공동의 보도준칙 마련과 기자 교류, 조선 언론사 사장단의 내한 답방, 양측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사 간의 기사 교류 등을 제안했다.[54]

53) 본 절은 “연합뉴스 정천기 국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것임을 밝힙니다.
54) 이철주, 남북의 언론이 소통한다, 2017.11.29.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위임을 받은 총련계 조선통신사와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전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시 연합뉴스의 천양철 상무와 조선통신사 양인원 사장이 수신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12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계약 갱신을 통하여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최근 통신사 뉴스1이 총련계 회사인 코리아미디어(KPM) 측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방송사들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대행 권한을 수탁받은 경문협에 조선중앙TV 관련 저작권료를 지급(현재 공탁 중)하여 이용하고 있다.

뉴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따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되고 있다.[55]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북한저작권법은 특이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저작권법 제12조(저작권의 제외대상)에 의하면,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시사보도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대상의 제외 조건을 '상업성'에 두고 있다. 즉 상업적 목적이 있는 시사보도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누구든지 이를 보도로 재활용하던지,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활용하든지 상관없지만,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사실 전달에 불과하든 그렇지 않든 상업성이 있는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포함하여 제 외국에 제공하는 시사보도는 이를 제공받은 국가에서 재활용(방송, 뉴스보도 등)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시사보도는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북한의 시사보도 뉴스 또는 방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제 외국(남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들은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텔레비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국내 배급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KCNA)은 일본 소재 대행사를 통해 유료로 전재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의 연합뉴스사는 2002년 12월 조선중앙통신과 기사 및 사진의 수신계약을 체결해 국내 독점 배포권을 갖게 되었다. 한편 연합뉴스사는 1999년 1월 조선중앙통신에 뉴스 교류 제의 서한을 전달하였고,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북추진본부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조선중앙통신에 협력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등 남북 뉴스통신사 간 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상술한 국내 독점적 배포권한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연합뉴스가 2002년 조선중앙통신과 뉴스 저작권 계약 체결은 공식적으로 남북간 뉴스저작권 교류의 첫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과 정식 계약을 맺기 이전에 북한의 뉴스저작물은 주로 국내 정보기관 등에 의해 취급되었고, 특히 내외문제연구소가 1974년 1월 공산권과 북한에 관한 뉴스와 연구 자료를 국내외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배포하고자 창간한 '내외통신'을 통해 다뤄져 왔다.[56]

2002년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과 뉴스교류 계약을 공식 체결하기 이전에는 정보 기관의 현장실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되는 '특수자료취급인가'를 통해 북한 관련 뉴스와 정보를 이용해 왔는데, 이는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남북 대치라는 상황에서 보도물이나 저작물의 교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사실 지금도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규모 매체나 일부 출판물 외에는 뉴스 관련 교류가 거의 없거나 중단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시사보도물의 이용방법와 이용료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사는 조선중앙통신과 북한의 시사보도물 전체를 대상으로 전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별 기사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콘텐츠는 전재계약한 전체 보도물을 계약한 당사자 회사가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어느 정도의 뉴스보도를 이용하였는지 계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3) 조선중앙텔레비전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영상은 경문협이 저작권을 위탁받아 국내 배포 계약을 대행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들도 경문협을 통해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및 조선영화수출입사와 영상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의 계열사인 연합뉴스TV도 2010년 출범과 함께 경문협을 매개로 유료계약을 통해 조선중앙TV 영상을 수신하여 보

56) 내외통신은 공산권 뉴스 가운데에서도 북한뉴스를 주로 다뤄오다가 1998년 12월 연합뉴스(당시 연합통신)에 통합되었다,전영선 자문보고서 참조.

도에 활용하고 있다.

(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과 달리 노동신문은 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이용에 대해 북한이나 남측의 대리인이 유료계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국내 매체들은 현재 노동신문의 웹페이지 우회 접속을 통해 기사를 인용보도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노동신문은 경문협이 밝힌 북한저작물 대리권 대상 매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합뉴스는 내외통신을 인수한 이후 북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인터넷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전에는 특수자료취급인가를 통해 국내 반입된 노동신문의 보도내용을 기사로 재가공해 국내외에 배포해 왔다. 다만 연합뉴스는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의 화질의 해상도를 향상시켜 국내 보급하기 위하여 2016년 일본의 대행사를 통해 정식 계약을 맺고 PDF 파일을 받아 보도에 이용해 왔다. 2019년 일본 대행사는 국내 소재 다른 뉴스통신사인 뉴스1으로 계약상대방을 바꾸어 노동신문 PDF 파일을 보도용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노동신문의 경우 저작권 계약이라기보다 PDF 파일 형식의 서비스 형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당기관지로서 선전홍보매체의 성격이 강해서 상업적 목적 보다는 무제한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남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7]

57) 북한 저작권법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리용)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남북 저작권 교류 중심의 남북협력 중장기 계획 마련

남북 협력과 교류의 과정에 있어서 “문화예술”은 매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남북 관계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공연예술 교류를 통해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얻었다. 문화예술은 남북교류의 시작이고 가장 유연한 방식으로 상호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증진되면서 북한 문화예술 작품을 남한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초반에 시작된 남북 저작권 교류는 이제 20년 가까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저작물 및 교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이나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남북 교류는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설령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의 교류는 계속될 것이고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을 위하여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중심인 저작권 영역에서 중장기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남북문화예술교류는 그동안 적대적 관계에서 점차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의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 교류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통일부에서의 적극적 개입 및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중요한 의의는 바로 남북이 상호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유로운 문화교류사업를 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증진과 활성화는 매우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반’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결 방안 모색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의 저작물을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포석으

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저작물도 북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남북이 상호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남한 내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북한저작물의 의미와 보호 강화

(1) 북한저작물이 갖는 의미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풀어가는 실정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저작권 교류의 폭과 대상도 넓어지고 다양해 질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무엇보다 북한저작물은 저작물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남북 교류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북한저작물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저작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북한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며, 베른협약에 가입한 남북 모두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발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국가보안법, 형법상 북한 문서(어문저작물)나 도화(미술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합법적인 절차와 이용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북이 상호 정보 교류를 함에 있어서 북한저작물은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문화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 사이의 이질감 해소 및 동질성 회복이며, 이는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의 확충이고, 이를 통해 남북 간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북한저작물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저작물은 북한 사회의 정보력의 총체로서 북한 사회의 내면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 분야의 저작권 교류는 다른 분야에서 비하여 비교적 용이하고 활발한 편이다. 뉴스의 특성상 그 이용이 비록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보의 공유”라는 언론의 기능과 함께 북한 정보를 남한과 국외에 전달하는 것이며, 북한의 입장에서도 선전홍보를 위해 다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학술적 차원에서 북한저작물의 의의를 고찰할 필요성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구려 역사 등 역사 관련 연구나 언어, 전통문화, 유적지 등의 관점에서 북한의 학술적 연구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북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학술세미나 행사 등을 통해 민간 학술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여기서 도출된 연구결과물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이 "남북관계의 개선"이라서,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북한저작물에 대한 보호

북한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본격적인 교류가 있기 전부터 현재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간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남측에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과거 역사 분야나 언어학 분야, 고려의학 분야 중심으로 북한의 출판물들을 관행적으로 복제하여 유통되었다.[58] 예를 들면, 납·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된 직후인 1990년까지 이들 작가의 작품이 무단 복제의 형태로 유통된 출판물은 50여 명 작가들의 300여 종에 달한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료는 최대 12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는 1991년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또한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남북 사이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된 것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측 민화협, 저작권사무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2005년이었다. 이후 남북 사이의 저작권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당국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특히 경문협을 통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저작권을 추진했던 국내기업이 받은 피해에 대한 문제는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남북 문화교류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미술품 전시와 같은 단순 반입형태가 중심이었지만 인적 교류가 동반되는 공연이나 영화 〈황진이〉, 드라마 〈사육신〉을 비롯한 북한 서적물의 출판, 북한의 생활가요를 음반으로 제작한 〈동인〉의 출시 등에서 보이듯이 2차적 저작물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교류와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로 확대되고 있다. 북학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주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저작물의 2차적 가공에 따른 사용에 대해서는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양한 분쟁을 잠재하게 된다.

58) 이에 대해서는 김상호, 『북한저작물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저작권시의조정위원회, 1990), 조수선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통일부, 2001) 참조.

3. 남북 저작권 교류 창구 기능 강화

(1)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연락, 제3자를 통한 연락 이외에는 적법한 경우는 경문협을 통해 승인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 즉 남북 저작권 교류와 관련하여 경문협은 국내에서 유일한 대북 저작권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2005년 12월 31일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경문협 사이에 합의한 “포괄적 사전 협상권한”에 기초한다.

경문협은 저작권법상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리중개업에 관련된 절차를 밟으며 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다만, 경문협이 북측으로부터 위임받은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의 내용 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경문협이 남북저작물이용교류에 관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특별조항 마련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문협의 주장에 따르면, 경문협이 남한 내 북한저작물 이용자와 체결하는 가계약은 ‘포괄적 사전협상’을 근거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문협 스스로 위험을 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경문협이 스스로 위험을 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하기 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위험 없이 경문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문협은 남한 내 북한저작물 이용자와 가계약서를 체결하여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 경문협은 가계약서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관련 서류는 통일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대외비로서 비공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약서 내에 계약 당사자와의 비밀 유지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가계약서의 비밀유지와는 별론으로, (주)남북저작권센터가 경문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남한 내 저작물이용자와 가계약서를 체결하는 절차에 있어서, 경문협이 복임권을 행사하여 (주)남북저작권센터에 독점적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쟁점은 북한 저작권사무국(민법상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의 경문협의 복임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는 정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남북저작권센터가 경문협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추후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차원의 저작권 교류 방안

현재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를 담당한 당국 차원의 기구가 부재하다. 이로 인하여 남북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리조실록〉 분쟁을 비롯한 남한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남북 사이에 직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계약이었다. 제3자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진위와 대가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북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고,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문제를 남북 당국 간의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 기구의 설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문제의 중요한 첫번째 이유는 북한저작물의 저작자와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FGI 심층면접조사결과, 저작권 실무자들은 사진 몇 장이나 시 작품 한 두 편 정도를 게재하는 등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저작권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행정 비용의 과다 등 저작권 교류와 관련한 실무 비용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두 번째는 계약 이행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남한에서 북한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접근이나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북한 저작권자가 스스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남북 저작권 문제는 우선 남북 사이에 합의한 사회문화교류의 범주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3년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을 합의한 후,[59]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제6항에서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발전”에 합의하였고, 동년 2007년 11월 16일 발표된 남북총리회담 합의사항 제4조에서는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였다. 이는 2003년 7월 제11차 장관급회담에서 “문화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이래로 계속 주요 의제에서 빠져 있었던 사회문화교류분야의 남북 협의체계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위 회담에서 명기한 사회문화교류협력 분

59) 2003년 제11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필요한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신언상 대변인 일문일답-1”「연합뉴스」 2003년 7월 12일 :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을 당국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남북 대화의 틀이 체계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야의 사업영역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사이에 진행된 사회문화 분야 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당국 차원의 협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60]

특히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10여 년간 경색된 남북 관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띄었고, 이를 계기로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도 기대를 하였으나, 다시 북미 관계의 냉각으로 인하여 남북 관계는 정체기를 맞이한 것 같다. 이와 같이 남북 저작권 문제는 남북 정치 상황에 연동하여 민감하게 작동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는 차치하더라도, 문화예술분야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다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좋아지게 되면, 남북 저작권 관련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남북 저작권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 저작권을 논의할 기구로서 정부기관(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관계자, 저작권 유관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북한 저작권사무국), 저작권 전공 교수나 변호사, 북한 문화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작권 관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유형별로 분과위를 설치하고, 특히 남한 내 북한저작물에 관심이 많은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서도 북한의 유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저작권 전문기구의 설립 검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저작권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때 이러한 의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에 대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진척되면 문화예술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저작권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문협이 남한 내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독점적으로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경문협의 역할 보다도 더 전문적이면서 경문협의 역할을 포섭하거나 확충한 공신력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전문기구에는 남북이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남북 저작권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저작권 전문가(저작권 실무자와 학자 등 포함)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구에 전문분과위를 설치하고,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남북이 상호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유관 아카이브 구축, 저작물 이용료에 대한 징수 및 배분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도 설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0) 통일부, 『통일백서2008』 참조.

물론 법제도적으로도 이러한 전문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던지, 국가보안법상 문제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한 개정 검토 등 법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저작권공동기구를 신설하여 남북이 상호 다른 체제 속에서 오랜동안 지내왔던 기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남북이 저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양자간 다른 저작권법 체제의 정비, 정치와 이념 갈등 해소, 저작권 분쟁 해소를 위한 기구 발족,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저작권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남북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 개선

남북 저작권 교류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저작물 교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차원의 기구가 설립이 요구된다.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어려웠던 점으로 정부기관의 비협조 및 제도적 제약(27.3%)을 꼽고 있고, 북한저작물을 확인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경문협이 그간 민간 차원에서 저작권 관련 교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해왔으나,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 정부 기구의 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의 북한 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당국 차원에서 일괄 타결하여 북측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저작물 유입과 유통에 대한 관리에서도 규제대상을 엄격히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장애가 된다. 즉 동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동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적대적 국가 관계 속에서 문화예술 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은 70여 년을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당연히 달라진 문화예술의 환경과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특히 북측에서 문화예술을 체제 선전과 사상 및 정책 교양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수의 작품이 국가보안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저작물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필요한 일이므로,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사 없이 완성도 있는 북한 교향곡의 연주에 대해서는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연계된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취급지침」개정의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정부나 여타 공공기관은 특수자료 취급 관련 내규를 만드는데,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북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의 경우에도 열람과 대출 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수자료취급지침을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통일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 개선하고, 대국민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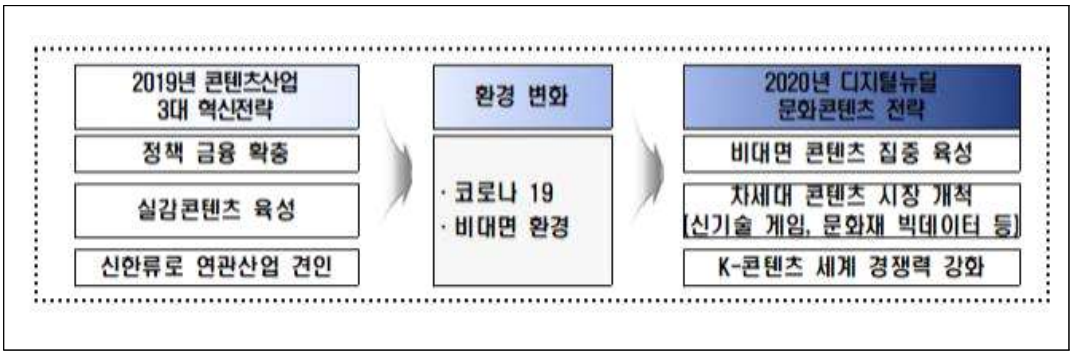
셋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분야에서 '남북저작권(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저작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 '남북저작권(특별)협정'의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비대면 환경을 고려한 북한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구축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이 산업지형은 물론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다. 기존의 대면 행태로 유지돼 온 영역은 줄어 들고 비대면의 영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9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대응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61]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영화, 대중음악 공연 등 대면 중심의 콘텐츠 소비는 줄어들고 온라인 동영상, 공연, 전시 등 온라인 콘텐츠·서비스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으로 전환된 환경은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1) 정책브리핑, 2020.09.24.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78239〉

〈그림 4-2〉 콘텐츠 산업 디지털 혁신의 의미



이러한 점에서 북한저작물에 대한 남측에서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편리하게 소비할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저작물에 대한 정보는 남북 관련 기관의 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리기관이 일정하지 않아 중복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전문화하여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관련 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비대면 전환 상황에 북한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기반(인프라)과 콘텐츠 제작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 공연콘텐츠에 대한 중계 및 전송, 실감 기술의 접목, 쌍방향 소통, 저작권 보호 등 비대면 공연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온라인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고,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북한 문화유산의 만남을 통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되찾는 프로젝특 진행된 바 있다. 200여건 이상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북한의 헤리티지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사업인데 문화예술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3년에 북한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디지털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문화유선기술연구소는 북한 평양 청암리사지를 VR 기술을 접목하여 3D로 재현한 바 있다.[62]

북한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은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 및 단체들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향후 남북교류

62) IT동아, 2018.07.20. 〈https://it.donga.com/27962〉

의 해빙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남북이 상호 역사적, 문화적 이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VR로 재현된 개성 만월대



6. 북한저작물 이용절차 정보 및 분쟁해결기구

사업자를 대상 설문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저작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안내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남측 사업자들을 위하여 북측 저작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에 대한 정보는 남북 관련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며, 북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조차도 저작권에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남북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라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저작권사무국 또는 북한 저작권자가 남한 내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이용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전문분쟁조정기구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하고,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남북문화교류협력에 의한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대북 저작권 관련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FGI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6차례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북한 관련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실제로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와 이용할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사업예정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조사,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차 조사가 시행되었다. 1차 설문은 국내 영화제 총 23개 기관, 국내 연극제 총 17개 기관, 음원서비스 기관 9개 기관, 출판·언론사 중 북한저작물과 관련한 분쟁 사례기관 10개 기관, 공연예술, 영화, 방송, 연극, 미술 저작물 유관 기관·단체 16개 기관, 언론 출판, 사진, 음악 유관 기관·단체 32개 기관이었다. 2차 설문은 전국 예술회관 29개 기관, 공연 제작사 70개 기관, 미술관 30개 기관, 영화제작사 100개 기관, 출판사 100개 기관 등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약 440개 이상의 기관과 접촉하였으나, 이 중 10% 정도밖에 회수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46부 회수되었다. 설문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서는, 첫째, 북한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기관 자체가 많았고,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익명으로 응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또는 업체들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응답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코로나 19 상황으로 폐업, 재택근무 하는 곳이 많아서 연락이 안되는 기관들이 많았다. 특히 공연, 영상 분야 등은 폐업하고 연락이 안되는 곳이 다수였다. 기관별로 2~3차례 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률을 높일 수 없어서 최종 46부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주요 추진 목적이 수익사업 보다는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50.0%)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25.0%)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현재 정치적 상황 하에서는 수익 보다는 상호 이해 증진 및 북한과 지속적 교

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와 향후 이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는 사업예정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저작물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분야별로는 영상·방송 분야가 가장 많았고(37.5%), 공연·음악 분야(18.8%)이었으며,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는 어문저작물(13.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6.5%), 사진(6.5%), 영상(6.5%)의 순이었다. 북한저작물을 활용한 주요 이유는 해당 북한저작물이 갖는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위하여(37.5%), 해당 북한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33.3%)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분야는 예상대로 출판분야였고, 그 이유로는 북한저작물의 역사적·민족적 의미 부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업체 12개 중 북한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 받은 경우는 8개(66.7%), 양도받은 경우 2개(16.7%), 양도 또는 승인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개로 확인되었다. 북한저작물을 양도 또는 승인받은 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 모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결국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남한 내에서 저작권침해소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결과인데, 이는 남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저작물을 양도받거나 사용 승인을 얻은 경로를 살펴보니 경문협을 통해 교섭한 경우 6개(60.0%), 제3자 또는 제3국(주로 중국)을 통해 교섭한 경우 3개(30.0%)로 나타났다. 이는 경문협의 역할이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한 매개자임을 보여주는 설문조사결과이다. 사실 2004년 9월 경문협이 설립되기 전에는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고, 불법 출판하는 경우 등도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경문협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문협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과(功過)가 있는 것 같다. 북한저작물을 양도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양도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44.4%)이 가장 많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27.8%), 정부

기관의 비협조(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양도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한 정보가 국내 사업자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응답이기는 하지만 정부기관이 비협조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정부가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흥미롭다. 수익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3.3% 였고, 수익 발생경로는 북한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의한 저작권료 발생(50.0%), 북한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함에 따른 수익, 북한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을 통한 수익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숫자가 적어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출판분야처럼 북한저작물을 직접 출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적저작물에 의한 저작권료 발생,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주어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사업자들의 수익 발생 경로라고 이해된다. 다만, 이 경우에 2차적저작물이 어떠한 유형의 저작물인지, 예를 들면 북한의 소설을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원 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고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이용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기관 또는 업체에 이용허락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다.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2개 사업자들에 대해 향후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58.3%)인 것으로 확인되어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합법적인 이용절차, 관련 정보 등이 정부에 의해 제대로 제공된다면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국내 사업자들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북한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이 가능한지 잘 몰라서(50.0%), 북한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8.8%), 기타 의견으로는 필요성이 없거나 관련 사업이 없어서, 북한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정보와 이용절차 등만 정부에서 제대로 제공한다면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내 사업자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들은 수익성 보다는 통일을 위한 협력(45.7%), 교육・학술 목적

의 이용(31.4%)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남북한저작물 유통 활성화(47.8%), 교육학술 목적의 북한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39.1%)으로 설문조사되었다.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이 북한 저작권자와 계약한 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2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2.5건이 발생했고,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방식으로는 4개 중 3개가 국내대리중개기관(경문협)을 통해 공탁하여 송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는 경문협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편 북한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료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권료 국고귀속의 적절성에 대해 찬성(56.5%)하는 견해가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① 미송금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켜 남북문화교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50.0%), ② 미송금 저작권료를 송금받을 북한 저작권자와 제대로 연락이 안되어서(23.1%)의 순이었고, 재원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한 경제문화협력사업을 위해 활용(56.0%)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가 원칙적으로는 북한저작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대리중개업자(경문협)에게 공탁을 하는데, 공탁된 기금을 북한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탁금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2005년부터 국내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 TV 등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는데, 2008년까지 약 7억9200만원의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보냈지만,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저작권료 송금이 차단되면서, 방송사들로부터 걷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현재까지 공탁금이 약 20억 9243만원이라고 하며, 북한에 전달하지 못한 조선중앙 TV 등의 저작권료 가운데 10년의 법원 공탁 기간이 지난 약 2억3000만원에 대해 '회수 후 재공탁' 방식을 택하였다고 한다.[63] 향후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저작권사무국 또는 북한저작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북한저작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고로 환수하여 남북저작권교류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거나 바람직한지에 관한

63)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의 저작권은 우리 법원도 지난 1987년부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 공탁된 저작권료의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권자인 경문협에 있으며, 경문협이 이를 회수해 재공탁하는 방안에 대해 통일부와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다영, 공탁 끝난 北저작권료, 임종석의 경문협이 국고환수 피했다, 중앙일보, 2020.10.5.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자료 이용의 어려움(27.3%)', '정부기관의 비협조 및 제도적 제약(27.3%)',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18.2%)'의 순으로 설문조사 응답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북한을 미화했다며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피고발되었다는 사례도 있었고, 기관 단독으로 북한 단체와 상호협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인 승인 절차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북을 만들어 홍보하고, 또한 유관 부처인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외에도 남북한 저작권 교류와 관련한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업체가 대다수였고, 이용할 의사가 있더라도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이용가능한 북한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채널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브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알리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북한저작물 교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는 동안 너무 고생해서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북한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으로부터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 사전협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역할이 남북문화교류협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문협은 2004년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문협은 남북한 경제문화협력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등록을 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기실 경문협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북한 출판물이 국내에서 출판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으나 허위 계약이 많았고, 따라서 경문협이 북한에 확인해 보았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러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게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북한과 저작권 교류가

진행되면서, 북한저작물을 정식으로 출판허락을 받지 않은 채 출판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문협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문협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자문위원이나 설문조사 응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통일부)와 경문협의 역할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남북문화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들이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북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내 기관이나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저작물의 이용을 경험한 자 중에는 "너무 고생해서 제도/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다시 소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기술한 것처럼 지금까지 북한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민간 차원에서 관심있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문협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문협은 북한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으로부터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단법인으로, 경문협의 역할이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만큼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문협에 거는 기대도 클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지금까지 현실적을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들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경문협은 현재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도별 현황이나 북한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통일부에 보고하고 있고, 통일부가 이를 대외비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외비로서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하기보다는 북한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들이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문협은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통일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것인 바, 업무는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위탁관리업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국내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신탁관리단체가 13개가 있고, 이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탁 받아 관리한다. 이때 신탁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므로,[64]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단체에 신탁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신탁단체에게 완전 이전하므로, 수탁자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65]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허가는 필요 없고 신고를 하면 된다(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한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계약 또는 대리중개계약약관 및 저작물이용계약 약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경문협 역시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면서 이와 같은 계약약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및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 사업연도 3월 31

64) 대법원 2012. 7.12. 선고 2010다1271 판결(가수 서태지 사건).
6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제4판, 1099면.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경문협이 이러한 사업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업실적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문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아니라,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저작권대리중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이용계약약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문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문협은 저작권법상 일정한 보고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포괄적 사전협상권한'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문협은 2004년 설립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단법인으로, 북한저작물을 국내에서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받아왔고, 이를 공탁하여 관리하여 왔다. 다만, 이때 북한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으로 부여받은 '포괄적 사전협상'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포괄적 사전협상'이 '포괄적 대리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만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경문협은 북한저작물의 불법이용에 대한 소권 등을 포함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권리를 양도 또는 부여 받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반면 만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를 한 경우라면 이는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포괄적인 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저작물의 이용을 공식적으로 대리중개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는 경문협 밖에 없다. 다만,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한을 이용하여 경문협이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남북 사이 저작물 이용을 포함하여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 크게 활성

화되지 못하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경문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과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문협이 '포괄적 사전협상'을 가지는 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 사전협상권의 객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북한의 설명을 들을 바는 없다. 이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명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면 간단하게 문제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여전히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혼란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남한 내에서 유관 정부 부처인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율하여 경문협에 어떠한 법적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문협의 복임권 행사에 대해 살펴본다. 경문협은 남북저작권센터와 저작권대리중개사업의 독점적 대리권한 위임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이는 경문협이 남북저작권센터에 북측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을 독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일종의 복대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민법상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따르면,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문협이 민법상 본인(북한 저작권자 또는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승낙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임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무권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문협이 북한저작권사무국과 민화협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 자신들의 권한을 제3자인 '남북저작권센터'에게 독점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다.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이를 특정 회사에 독점적 대리중개를 할 수 있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그 정당성은 물론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사진, 그림, 방송, 영화 등 저작권 관련 문화교류협력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설문조사 및 FGI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는 북한저작물 이용에 관한 합법적인 승인 절차와 정보 등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유관 부처(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북한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를 마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첫째, 코로나 19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심층면접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설문조사에 응답한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응답에 부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설문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대외비'라는 이름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저작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업체들에게 익명으로 응답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설문조사 내용에 부담되어 응답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기가 어려워 통일부 홈페이지 내 유관 정보, 연합뉴스 같은 신문방송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통계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문협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대북 관련 저작권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결과물은 향후 대북 관련 저작권 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북한저작물의 이용을 경험한 사업자와 사업예정자들의 설문조사를 그 응답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북 관련 저작권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제언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여준 점은 본 연구과제의 중요한 연구성과일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1.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제4판, 2019.
2. 통일부, “통일백서2008”, 통일부 발간자료, 2008.

〈국내 논문 및 보고서〉

1. 김기헌·이정철,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21권 1호, 2018.
2. 김상호, “북한저작물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시의조정위원회, 1990.
3. 전영선,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 「亞太 쟁점과 연구」제1권 제1호, 2006.
4. 조수선,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부발간자료, 2001.
5.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동향”, 통일부 발간자료, 2017년 7월호, 2017.
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의 국영출판체계와 남북한 출판물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온라인자료〉

1. 이철주, “남북의 언론이 소통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2017.11.29.자.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최종검색일 2020. 11. 20.).
2. 정책브리핑, “비대면 사회 대비…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 발표”, 2020.09.24.자.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78239〉(최종검색일 2020. 11. 20.).
3. 김영우, “[GDF 2018] VR로 남북통일, 북한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 IT동아, 2018.07.20.자. 〈https://it.donga.com/27962〉(최종검색일 2020. 11. 20.).

부 록

〈부록1〉 남북 저작권 교류 현황 조사 설문지

남북 저작권 교류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남북 저작권 교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북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저작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교류사업의 발전방안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조사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각 문항에 성실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설문내용 중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응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연구 책임자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	문의	김균희 연구원

※ 본 설문에 끝까지 참여한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품(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답례품(기프티콘)을 받으실 분은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본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연락처: _____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휴대전화 번호

2) 수집이용목적 : 답례품(기프티콘) 문자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설문조사 완료 후 기프티콘 발송시 까지(발송 후 폐기)

Ⅰ. 일반적 특성

A. 귀사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해당되나요?

① 영상
② 방송
③ 출판
④ 언론
⑤ 공연
⑥ 음악
⑦ 미술
⑧ 사진
⑨ 기타(　　)

B. 기업명은 어떻게 되나요? (　　)

C. 창립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　　) 년

D.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임원 이상　　② 부장
③ 과장 또는 차장　　④ 팀장
⑤ 평직원 또는 팀원

E.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　　)

F.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 25년 미만　　⑧ 25년 이상

G. 귀하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Ⅱ. 남북문화교류협력 경험 및 실태

1. 귀사에서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 남북문화교류협력: 남북의 주민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된 국가의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학술, 체육, 종교, 시민사회 영역 등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제반 활동

   ① 예(➜ 2번으로)　　② 아니오(➜ 9번으로)

※ 2번부터 8번까지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경험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2. 귀사가 지금까지 수행한 남북문화교류사업의 총 사업실적은 몇 건 이었습니까?
   (　　건)

3. 지금까지 수행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3가지를 그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구분	유형	사업명	기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에 대한 평가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
1			~			
2			~			
3			~			

4. 위의 3가지 사업의 북한 사업자는 누구였나요? 북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셨습니까? 또한, 각 사업에 있어서, 남북한 참여비율 및 역할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구분	북한 사업자	북한사업자 접촉방식	남북한 참여비율 및 역할		
			참여비율		역할
1		① 직접 접촉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④ 기타(　　)	남	(　　)%	
			북	(　　)%	
2		① 직접 접촉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④ 기타(　　)	남	(　　)%	
			북	(　　)%	
3		① 직접 접촉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④ 기타(　　)	남	(　　)%	
			북	(　　)%	

5. 귀사가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목적(동기)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수익사업을 기대해서
②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③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④ 북한과 교류에 대한 우선 경험자로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⑤ 기타( )

6.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실시 시, 북한사업자와 저작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을 하셨습니까?

① 예 (➜ 6-1번으로) ② 아니오 (➜ 7번으로)

6-1. 북한 사업자와 저작권계약 체결 시 연도별 저작권 계약 건수를 기재해 주세요.

년	1980년 이전	1980년~1990년	1991년~ 2000년	2001년~2010년	2010년~2020년
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6-2. 북한사업자에게 저작권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① 직접 송금 (➜ 7번으로)
② 국내 대리중개기관(경문협) 통해 송금 (➜ 7번으로)
③ 국내 대리중개기관(경문협) 통해 공탁 (➜ 7번으로)
④ 경문협 아닌 국내 대리인 통해 송금 (국내 대리인: _____) (➜ 7번으로)
⑤ 국외 대리인(예: 조선족)을 통해 송금 (➜ 7번으로)
⑥ 지급하고 있지 않음 (➜ 6-3번으로)
⑦ 기타( ) (➜ 7번으로)

6-3. 북한사업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남북한 정치적 갈등 때문에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서
② 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③ 기타( )

7.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북한과의 의사소통 문제
② 북한자료 이용의 어려움
③ 국내 중개기관의 역할 미비
④ 정부기관의 비협조 및 제도적 제약
⑤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⑥ 기타( )

8.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향후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 의향 및 계획

9. 귀사는 향후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0. 귀사는 현재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 11번으로) ② 아니오(➔ 16번으로)

※ 11번부터 15번까지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예정자만" 응답해주십시오.

11. 추진 예정인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명과 그 내용을 주요 사업 3건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사업명	예정연도	사업내용
1			
2			
3			

12. 각 사업에 대한 북한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북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각 사업에 있어서, 남북한 참여비율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구분	북한사업자	북한사업자 접촉방식	남북한 참여비율 및 역할		
			참여비율		역할
1		① 직접 접촉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④ 기타( )	남	( )%	
			북	( )%	
2		① 직접 접촉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④ 기타( )	남	( )%	
			북	( )%	
3		① 직접 접촉 ② 국내 대리중개인 통해 접촉 ③ 국외 대리중개기관 통해 접촉 ④ 기타( )	남	( )%	
			북	( )%	

13. 귀사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수익사업을 기대해서
②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③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④ 북한과 교류에 대한 우선 경험자로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⑤ 기타( )

14.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중 북한사업자와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하실 예정입니까?
① 예 (➜ 14-1번으로)
② 아니오 (➜ 15번으로)

14-1. 북한사업자에게 저작권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① 직접 송금 (➜ 15번으로)
② 국내 대리중개기관(경문협) 통해 송금 (➜ 15번으로)
③ 국내 대리중개기관(경문협) 통해 공탁 (➜ 15번으로)
④ 경문협 아닌 국내 대리인 통해 송금 (국내 대리인: _____) (➜ 15번으로)
⑤ 국외 대리인(예: 조선족)을 통해 송금 (➜ 15번으로)
⑥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 14-2번으로)
⑦ 기타( ) (➜ 15번으로)

14-2. 북한사업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① 남북한 정치적 갈등 때문에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서
② 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③ 기타( )

15.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 8번 문항과 동일합니다. 8번 문항에 응답한 분은 Ⅲ의 18번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Ⅲ의 18번으로 이동하여 응답해주십시오.

※ 16번~17번 설문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경험이 없는 사업자만 응답해주십시오.

16. 귀사에서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③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이 많다

17. 향후 기회가 된다면,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Ⅲ. 북한저작물 이용실태 및 욕구

18. 귀사는 사업을 위하여 북한저작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19번으로)　　② 아니오 (➜ 25번으로)

19. 귀사가 이용한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이용횟수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이용한 저작물 내용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북한저작물의 이용형태/방법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중복체크 가능)
		1회	2회	3~5회	5~10회	10회 이상		
1) 어문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북한의 시 ② 북한 소설 ③ 북한 수필 ④ 북한 동화 ⑤ 북한 논문 ⑥ 북한 뉴스 ⑦ 북한 역사자료 ⑧ 북한 학술자료 ⑨ 기타 (　　)	① 출판 (시, 소설, 수필 등 서적 형태) ② 언론 (연합뉴스, 뉴스1 등) ③ 자료(학술논문, 역사자료 등) ④ 기타(　　)
2) 음악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북한 전통민요 ② 북한 최신가요 ③ 기타 (　　)	① 방송국에 의한 방송 ② 인터넷에 의한 전송 ③ 공연에서 직접 이용 ④ 노래방 ⑤ 기타(　　)
3) 연극(교예) 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북한 가극 ② 북한 연극 ③ 북한 교예 ④ 북한 무용 ⑤ 기타 (　　)	① 직접 북한 연극(교예) 상연 (초청공연) ② 북한 연극의 재생공연 (공연녹화물) ③ 남북합동공연 ④ 기타(　　)
4) 미술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북한 회화(그림) ② 북한 조각 ③ 북한 공예 ④ 북한 서예 ⑤ 북한 도안 ⑥ 기타 (　　)	①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식채널에 의한 전시 ② 개별전시회 (소장한 북한 미술작품 전시) ③ 교육 · 연구 ④ 기타(　　)
5) 사진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북한 사진 ② 기타 (　　)	① 전시회를 통한 전시 ② 사진집 제작 ③ 언론보도,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 ④ 광고, 배경화면 등 서비스 제공 ⑤ 기타(　　)
6) 영상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북한 영화 ② 북한 TV 편집물 ③ 기타 (　　)	① 영화관에 의한 상영 ② 영화제에 의한 상영 ③ TV 등에 의한 상영 ④ 인터넷서비스 ⑤ 기타(　　)
7) 도형저작물 (예: 북한 지도)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북한 지도 ② 북한 도표 ③ 북한 도면 ④ 북한 약도 ⑤ 북한 모형 ⑥ 기타 (　　)	① 전시회를 통한 전시 ② 출판 형태로 이용 ③ 지도정보, 도면 등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이용 ④ 기타(　　)

20. 귀사에서 북한저작물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해당 저작물이 독창적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② 해당 저작물이 갖는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위하여
③ 북한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슈가 되기 때문에
④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⑤ 기타( )

21. 북한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① 북한저작물 양도(북한저작물 구매) (➜ 21-1번으로)
② 북한저작물 사용 승인받음 (➜ 21-1번으로)
③ 양도 또는 사용 승인 받은 적 없음 (➜ 21-5번으로)

21-1. 북한저작물을 양도 또는 사용 승인받은 구체적인 연도와 시기를 기재해 주세요.

기간	구체적인 양도 또는 사용 승인 받은 연월(일)	건수
~ 1980년		건
1980년 ~ 1990년		건
1991년 ~ 2000년		건
2001년 ~ 2010년		건
2010년 ~ 2020년		건

21-2. 북한저작물을 양도 또는 사용 승인 받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저작자 또는 권리자와 직접 접촉
②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직접 교섭
③ 제3자 또는 제3국을 통해 교섭
④ 경문협을 통해 교섭
⑤ 기타( )

21-3. 북한저작물을 양도 또는 사용 승인받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양도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
③ 비용(부대비용 포함)의 부담
④ 정부기관의 비협조
⑤ 기타( )

21-4. **[북한저작물 이용 승인받은 경우만 응답]** 사용 승인을 받은 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 내용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2차적저작물 작성권(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⑦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 등
⑧ 기타(　　)

21-5.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이용 승인받지 않은 경우만 응답]** 저작자와 협의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협의 창구를 알지 못해서
②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어
③ 저작권이 보호됨을 알지 못하여
④ 저작권 보호를 알고 있으나 그 보호 필요성을 알지 못하여
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⑥ 언론보도,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활용이기 때문에
⑦ 저작물 승인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⑧ 기타(　　)

22. 북한저작물 이용을 한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습니까?

① 예 (➜ 22-1번으로)　　② 아니오 (➜ 23번으로)

22-1. 구체적인 수익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해당 내용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북한저작물을 근거로 하는 2차적 저작물(가공·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료
② 북한저작물의 제3자 이용허락에 따른 수익
③ 북한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을 통한 수익
④ 기타(　　)

23. 귀사에 북한저작물을 전담하는 조직 또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① 예 (➜ 23-1번으로)　　② 아니오 (➜ 23-2번으로)

23-1. 북한저작물 조직 또는 담당자는 누구이며, 인원 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전담 조직　　(　　명)
② 전담 담당자　　(　　명)
③ 외부 전문가　　(　　명)
④ 기타　　(　　)

23-2. **[북한저작물 전담 조직 또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만]** 북한저작물 조직 또는 담당자를 설치·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정도	필요 또는 불필요한 이유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이유	① 특수한 분야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② 활용빈도가 높아 담당 부서도 별도로 필요 ③ 기타( )
③ 필요하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한 이유	① 북한저작물 활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②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여 ③ 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 ④ 기타( )

24. 귀사에서는 북한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Ⅳ의 28번으로 이동하여 응답해주십시오.

25. 귀사가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익성이 없어서 (➜ 26번으로)
② 북한저작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26번으로)
③ 북한저작물 이용이 가능한지 잘 몰라서 (➜ 26번으로)
④ 이용하고 싶었으나 절차가 어려워서 (➜ 25-1번으로)
⑤ 기타( ) (➜ 26번으로)

25-1. 북한저작물 승인 절차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양도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
③ 비용(부대비용 포함)의 부담
④ 정부기관의 비협조
⑤ 기타( )

26. 국내에서 북한저작물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수익성
② 북한 정보 전달 등 언론의 의미
③ 교육·학술의 의미
④ 이슈성
⑤ 통일을 위한 협력
⑥ 기타( )

27. 향후 북한저작물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분	이용 의향	영리적 목적	이용목적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중복체크 가능)
1) 어문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출판을 위한 이용 ② 언론보도,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 ③ 온라인 서비스 (정보제공) ④ 기타( )
2) 음악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방송국에 의한 방송 ② 인터넷 서비스 ③ 공연에서 이용 ④ 노래방 ⑤ 기타( )
3) 연극(교예) 무대예술 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직접 공연(상연) ② 재생공연 (공연녹화물) ③ 남북합동공연 ④ 기타( )
4) 미술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식채널에 의한 전시 ② 개별전시회 (소장한 북한 미술작품 전시) ③ 교육 · 연구 ④ 기타( )
5) 사진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시회를 통한 전시 ② 사진집 제작 ③ 언론보도,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 ④ 광고, 배경화면 등 서비스 제공 ⑤ 기타( )
6) 영상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영화관에 의한 상영 ② 영화제에 의한 상영 ③ TV 등에 의한 상영 ④ 인터넷서비스 ⑤ 기타( )
7) 도형저작물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시회를 통한 전시 ② 출판 형태로 이용 ③ 지도정보, 도면 등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이용 ④ 기타( )

Ⅳ. 남북한 저작권 교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28.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교육·학술 목적의 북한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② 북한저작물의 보호 및 사용 대가 지급 강화
③ 남북한저작물의 유통 활성화
④ 기타(　　)

29. 저작권료 중 북한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 29-1번으로)
② 적절하다 (➜ 29-1번으로)
③ 적절하지 않다 (➜ 29-3번으로)
④ 매우 적절하지 않다 (➜ 29-3번으로)

29-1.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만]**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북한에 미송금한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부하기 위한 합법적인 민간단체가 없어서
② 미송금 저작권료를 송금받을 북한 저작권자와 제대로 연락이 안되어서
③ 미송금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켜 남북문화교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④ 미송금 저작권료를 어디에 귀속시켜야 할지 잘 몰라서
⑤ 기타(　　)

29-2.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만]** 미송금 저작권료를 국고로 귀속시킬 때 이러한 재원은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대북지원 관련 사업
② 남한 문화·저작권 관련 사업
③ 북한 문화·저작권 지원 사업
④ 남북한 경제문화협력 사업을 위한 활용
⑤ 기타(　　)

※ 30번으로 이동하여 응답해주십55시오.

29-3.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북한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북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② 저작권은 사적인 재산권이므로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③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 귀속에 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④ 기타( )

29-4.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미송금 저작권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복수 응답 가능)
① 북한에 송금할 수 있도록 남한 내에 합법적인 민간단체 또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② 미송금 저작권료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공탁하여 (재)공탁기금을 조성한 후에 추후 북한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미송금 저작권료를 합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④ 기타 ( )

29-5.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미송금 저작권료 이용에 관한 제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30. 귀하는 남북한 저작권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활성화되어야 한다 (➜ 30-1번으로)
② 굳이 활성화될 필요는 없다. (➜ 31번으로)
③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 (➜ 31번으로)

30-1. 어느 수준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 저작권 교류·유통의 활성화
② 남북 저작권 교류·유통의 완전 개방
③ 남북 저작권 공동관리

31. 북한저작물 교류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록 2〉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목록(2013~2020)

(1) 문학 및 언어 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재개에 대해 남북공동회의 개최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14.06.25	개성	사전공동편찬사업 회의
2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14.7.29 ~ 8.6	중국	북측 민화협 등의 관계자와 남북공동회의, 편찬사업 추진일정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남북공동집필회의에서는 사전수록단어에 대한 집필원고를 검토
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14.10.30 ~ 11.18	평양	
4	제24차 남북공동회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15.10.12 ~ 10. 19	금강산	사전 수록단어에 대한 남북 양측의 집필원고(21만여 개 단어)를 검토

(2) 공연예술 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남: 윤이상평화재단 북: 윤이상음악연구소	14.09.26 ~ 09. 29	평양	북한은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윤이상평화재단 관계자들을 초청
2	예술단 사전 점검단 파견		18.1.21 ~ 1. 22	강릉, 서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7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강릉아트센터,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등 공연시설 사전 점검
3	北 예술단 공연		18.2.8	강릉	강릉아트센터
4	北 예술단 공연		18.2.11	서울	서울 국립극장에 공연
5	우리측 예술단 평양공연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18.3.20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 방북 (3.22~24)
6	남북 예술단 합동공연		18.4.1~3	동평양대극장 류경정주영 체육관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
7	'사랑의 도시, 평양 상하이 서울' 연주회	상하이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19.5.12	중국 상하이	남북 클래식 음악인 합동 공연

(3) 시각예술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2014 南·北·中 평화·상생·공존展	한민족미술교류협회	14.9.17 ~ 9.23	서울 인사동길 아라아트센터	전시회에는 남한 작가 72명과 북한 작가 32명, 중국 작가 15명의 작품 120여점이 출품
2	평화통일염원 72년 남북미술전	주최: 국회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혜영/ 주관: 아트프롬아시아 / 후원: IDC 국제델픽위원회, 통일부	17.6.19 ~ 6.23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1층)	북한 측 작가인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장 최창호, 리쾌대, 정온녀, 문학수, 정창모, 선우영, 김만형, 정종여 등 북한 작가들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
3	광주비엔날레 ' 북한미술전'	광주비엔날레	18.9.7 ~ 11.11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북 미술품 22점 반입
4	2018 세계한민족 예술대축제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	18.12.8 ~ 12. 1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북한 미술작품은 중국 단둥 소재 단군미술관(관장 최명수)의 협력으로 국내 반입
5	남·북·해외 공동사진전 '평양이 온다'	주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주관: 남측 인터넷매체 민플러스, 북측 매체 조선륙일오편집사,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18.12.3 ~ 12. 5	서울종로구 수운회관 (울산, 부산, 세종시 등 다른 도시에서 전시)	사진을 매개체로 남과 북, 해외 언론매체의 민간 교류
6	남북작가 출품 미술교류전	한국 무궁화 미술협회	19.9.17 ~ 9.22	홍천	무궁화 미술협회 임원전 겸 리금주, 최명식 등 북한작가 30명의 기증작 30점을 전시하는 국내최초의 남북 작가 미술교류전을 개최

(4) 문화산업 분야(영화 및 애니메이션/ 방송/ 언론 및 출판)

1) 영화 및 애니메이션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제 2회 신필름예술영화제	주최: (사)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신필름예술영화제 조직위원회	18.9.6 ~ 9.8	서울 이화여대 모모아트홀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북한영화 '소금'이 개막작으로 선정
2	제 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주최: 울주군, 주관: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후원: 울주군의회	18.9.7 ~ 9.11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북한영화 특별전: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을 노래하다'를 개최, 북한 장편영화·애니메이션 등 5편 상영
3	부천영화제 북한영화 공개상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SF협회의	19.07.15 ~ 07.22	부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북한영화 9편이 공개상영 우리집이야기(15일, 22일),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20일)
4	2019 평창남북평화영화'(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평창남북평화영화제	19.8.16 ~ 8.20	평창, 강릉	금강산 폐막식 무산

2) 방송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방송	JTBC	18.9.23 ~ 9.24	서울, 평양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3) 언론 및 출판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북한 만수대창작사 모사도로 본 고구려 고분벽화' 도록 발간	문화재청	18.11.26	서울	

(5) 문화유산 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3.11.22 ~ 11.23	개성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광서 기획총괄위원장 등 9명 현장 조사
2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보호 협력회의	주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몽골 교육문화부/ 후원: 문화재청	14.6.30 ~ 7.1	몽골 울란바토르	북한참석,'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기록화와 정보 교류'를 주제
3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조사사업 관련 방북 협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4.7.01	개성	
4	개성 한옥보존 사업 관련 방북 협의	남: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북: 민족화해협의회, 민족유산보호지도록	14.7.02	개성	개성 한옥보존사업과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협의
5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4.7.22 ~ 8.16	개성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 만월대의 서부 건축군 구역(약 3만3천㎡) 가운데 남측 지역을 대상
6	개성 만월대 및 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남북역사 학자협의회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14.12.09	개성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만월대와 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 · 조사사업에 대해 협의
7	남북공동전시사업 협의	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 민족화해협의회, 인민대학습당 관계자	14.12.10	개성	조선왕조실록 4대본 등 기록유산의 남북공동전시사업에 관해 북측과 협의
8	7차 개성 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5.06.01 ~ 11.30	개성	세계 최고 금속활자 한 점 발견
9	남북 공동발굴 개성 학술토론회	문화재청과 통일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5.10.15	개성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개성 만월대를 공동발굴한 남북 역사학자들이 15일 개성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논의
10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남측 역사학자협의회 북측 민화협	15.10.14 ~ 11.6 15.10.15 ~ 11.15	국립고궁박물관, 개성고려박물관	서울과 개성에서 동시에 진행
11	고려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展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관, 통일부와 경기도,	18.02.9 ~ 3.18	평창	지난 1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발굴한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유물·유적의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서울시, 강원도, 문화재청,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공동 후원			
12	2018년 동북아시아 무형 유산 보호 네트워크 회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	18.8.28 ~ 8.30	몽골	동북아시아 5개국(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이 모여 지역의 무형유산 교육과 보호활동을 공유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논의
13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관련 실무협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8.9.6	개성	
14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문화재청,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18.10.22 ~ 12.10	개성	만월대 중심의 건축군 축대 구간을 중심으로 발굴, 옛 고려궁성의 배치 등을 확인
15	남북 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18.11.26	아프리카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씨름, 코리아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16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12년 성과 공개, '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학술회의 개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홍순권), 고려사학회(회장 한철호)	19.11.8 ~ 11.20	덕수궁 선원전터, 고려대 국제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의 12년간 성과, 5점 최초 공개

(6) 종교 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ACRP	13.06.7 ~ 06.9	인도네시아	2014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남북 공동개최' 추진
2	남북 종교인 만남	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북: 조선종교인협의회(KCR)	13.06.13	중국 베이징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
3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13.10.12	금강산	조계종 관계자 20명 방북
4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 합동법회 봉행	천태종, 조불련	13.11.07	개성 영통사	대한불교 천태종 승려와 신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교직자, 영통사 승려 등이 참석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5	북한 평양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남북간 합동미사	남: 평화3000/ 북: 조선카톨릭교협회	13.11.09 ~ 11.13	평양	신명자 '평화3000' 상임대표 등 12명으로 중국을 통해 평양 방북
6	만해 추모 남북합동다례재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14.06.29	금강산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재
7	개천절 등 남북 공동행사 개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14.07.29	개성	개천절 등 남북 공동행사 개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8	동학혁명 기념 공동행사 협의	남북 천도교	14.07.30	개성	서울에서 열릴 동학 120주년 기념행사에 북측 관계자 초청
9	남북합동미사 등 공동행사 관련 협의	남: 평화3000/ 북: 조선카톨릭교협회	14.08.7	개성	서초수 북한 카톨릭교 협회 서기장 등을 만나 남북 합동미사 문제를 협의
10	8.15 남북공동기도회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조선그리스도교연맹	14.8.15	평양	평양 봉수교회에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
11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 개최	천도교·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14.10.3	평양	
12	신계사 복원기념 합동법회 봉행	조계종, 조선불교도연맹	14.10.13	금강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신계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의 승려, 신도들, 남측에서 불교 조계종 승려, 신도들이 참가
13	남북공동 조국평화통일기원 평양기도회	조국평화통일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14.10.15 ~ 10.18	평양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14	천태종·원불교 남북공동행사 협의	천태종, 원불교, 조선불교도연맹	14.11.06	개성	천태종의 영통사 낙성9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과 의천대각국사 913주기 열반다례제의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협의, 원불교의 원불교 100년 남북 공동 평화통일기원 법회 협의
15	원불교 100년 남북 평화통일 기원 법회 협의	남: 천태종, 원불교, 북: 조선불교도연맹	14.11.7	개성	원불교 관계자(4명) 방북
16	영통사 복원 9주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	남: 천태종, 북: 조선불교도연맹	14.11.26	개성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26일 낙성 9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스님 913주기 열반다례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7	남북 불교회담	남: 대한불교조계종, 북: 조선불교도련맹	15.03.26	중국 선양	광복절 즈음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합동법회를 열기로 합의
18	조계종,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회담	조계종, 조불련	15.9.02	개성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합동법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19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북측 5대 종단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와 실무 회담	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북: 조선종교인협회	15.09.29	개성	'남북종교인평화대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
20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 행사 관련 협의	조계종, 조불련	15.10.2	개성	
21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북한 조선불교도연	15.10.15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에서 남북 불자 100여 명(남측 67명, 북측 40명)이 참석,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
22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봉행	천태종, 조그연	15.11.03	개성	
23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종교인모임	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북: 조선종교인협의회	15.11.9 ~ 11.10	금강산	
24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방북	천주교주교회의, 조선카톨릭교협회	15.12.1 ~ 12.4	평양	조선가톨릭교협회 초청으로 지난 1~4일 북한을 방문,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북측과 추진해온 교류협력 사안을 협의
25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집행위원회의	ACRP	17.5.18 ~ 5.22	중국 북경	7대 종단 협의체와 북측 종교인들과 만나 남북 종교인 교류에 대해 논의
26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의 방북	세계평화재단, 조선 불교도연맹	18.6.2 ~ 6.6	평양	금강산의 유명사찰 유점사를 복원하는 문제를 협의
27	남북 종교인 만남	남: 5개단체(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평화3000), 북: 조선카톨릭교협회	18.5월 말 ~ 6월초	중국 북경	조선카톨릭교협회 관계자를 개별접촉하여 종교교류 협력방안 논의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28	세계교회협의회(WCC) 창립 70주년 행사	세계교회협의회(WCC)	18.6.21	스위스 제네바	WCC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남북한 교회 대표들을 함께 초청
29	제5회 세계불교포럼 푸젠대회	중국불교협회와 중화중교문화교류협회	18.10.29	중국	북한 참석
30	남북 불교계 협력사업 논의	남북 불교계	19.2.12 ~ 12.13	금강산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강수린 위원장과 신계사 템플스테이큰 틀에서 논의… 체험관 부지 점검
31	제10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19.8.19 ~ 8.24	독일 린다우	북측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 등 4명의 종교인이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남측 KCRP 대표단과 만나 논의

(7) 체육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국제 여자 청소년 축구대회	주최: 중국 하이난성 축구협회, (사)남북체육교류협회 공동주관	13.1.24 ~ 1.27	중국 하이난다오	북한 여자축구팀 참가/ 북한팀은 남한팀 대신 중국팀과 경기
2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안컵)	주최: 대한축구협회, 주관: 동아시아축구연맹	13.7.20 ~ 7.28	서울월드컵 경기장	북한 여자축구단 참가
3	UN 유스리더십프로그램 (YLP)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유엔 스포츠 개 발 평 화 사 무 국 (UNOSDP)	13.08.21 ~ 9.4	광주	북한 청소년참가
4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	국제역도연맹 아시아역도연맹	13.09.12 ~ 09.17	평양	아시안컵 역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 클럽 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개최 한국 역도팀 평양 역도대회 출전
5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관련 남북실무접촉 개최	남: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북: 올림픽위원회	14.7.17	남측 판문점 평화의집	우리 측 수석대표에는 권경상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북측에서는 손광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여
6	인천 아시안게임 조추첨 관련 北 올림픽위 대표단 방남	남: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북: 올림픽위원회	14.8.19 ~ 8.23	남한	선수 150명 등 총 273명 선수단 파견 계획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며, 추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실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7	인천아시안게임기념 국제스포츠학술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체육학회, 경인교대	14.08.20 ~ 08.22	송도 컨벤시아	북한 참석, 북한학자대표단 기조강연
8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14.9.19 ~ 10.4	인천	제17회 아시안게임 폐막식 북측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참석
9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14.10.11 ~ 10.25	인천	북한 참가
10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연천군	14.11.2 ~ 11.11	경기도 연천	북한 4·25체육단 유소년축구단 출전
11	광주U대회 대표단 회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15.4.10 ~ 4.14	광주	장정남 북한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 참석
12	제2회 평양 국제 유소년(15세 이하) 축구대회	남북체육교류협회, 평양국제축구학교	15.8.21 ~ 8.24	평양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 준우승
13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관련 협의	남: 민주노총, 한국노총, 북:조선직업총동맹	15.9.30	개성	
14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남: 민주노총, 한국노총, 북:조선직업총동맹	15.10.28 ~ 10.30	평양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소속 두 개의 축구팀과 축구경기
15	2018 여자아시안컵 예선전	아시아축구연맹(AFC)	17.04.07 ~ 4.13	평양	여자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예선 참가, 7일 북한과 남북대결
16	여자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17.4.02 ~ 4.8	강릉	4월 2일부터 8일까지 아이스하키 U-18세계선수권과 여자선수권대회가 강릉하키센터와 관동하키센터에서 30개 경기
17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연맹	17.6.23 ~ 7.1	무주	북한 주도 ITF태권도 10년 만에 방한, 4차례 시범공연
18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남북체육교류협회 주최, 강원도, 강원도체육회 등 후원	17.12.19 ~ 12.22	중국 쿤밍	북한 참가 북한팀 우승
19	남·북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18.1.31 ~ 2.1	마식령 스키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
20	평창 동계올림픽		18.02.9 ~ 02.25	평창	北 선수단 참가, 남북 선수단 개회식 동시 입장,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北 평창올림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픽 폐회식 참가 고위급 대표단 8명
21	남북 태권도시범단 합동공연	WT(세계태권도연맹), ITF(국제태권도연맹)	18.2.9 ~ 2.14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속초강원진로 교육원, 서울시청, MBC 상암홀	개회식 등 총 4차례 합동공연
22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18.2.27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23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18.03.7	평창	남북 공동입장, 북 선수단 참가, 북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가 출전
24	동 아 시 아 축 구 연 맹 (EAFF) 집행위원회 총회	동아시아축구연맹 (EAFF)	18.3.30	부산	한은경 부회장 등 北 축구협회 관계자 4명 참석
25	남측 태권도시범단 공연	WT(세계태권도연맹)	18.4.1	평양태권도전당	
26	남북 태권도시범단 합동공연	WT(세계태권도연맹), ITF(국제태권도연맹)	18.4.2	평양대극장	남북 태권도시범단 합동공연이 2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27	2018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일팀	국제탁구연맹(ITTF)	18.05.3	스웨덴	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재현
28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18.7.3 ~ 7.6	평양 류경정주영 체육관	4일 혼합경기·5일 친선경기 등 4차례 경기 김일국 체육상, 전광호 내각부총리,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등단
29	2018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국제탁구연맹	18.07.	대전	국제탁구연맹 투어대회 '코리아오픈' 남북단일팀 4개조 구성
30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아 시 아 올 림 픽 평 의 회 (OCA),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18.08.18 ~ 9.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아시안게임 개회식 공동입장 - 카누, 조정, 농구 단일팀 참가
31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남북체육교류협회, 북한 4·25 체육단	18.8.10 ~ 8.19	평양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방북
32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남:한국노총·민주노총/북: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	18.8.10 ~ 8.12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에서 경기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33	장애인아시안게임 단일팀 공동훈련		18.9.3 ~ 9.6	베이징	남북 장애인 탁구·수영 대표팀 공동훈련
34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국제유도연맹(IJF), 아제르바이잔유도협회(멀)	18.9.20 ~ 9.27	아제르바이잔 바투	남북 유도 단일팀,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단체전 동메달
35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18.10.06 ~ 10.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국제대회에서 공동 입장, 남북 단일팀은 남자탁구 단체전(TT6-7)과 남자수영 계영 및 혼계영 34P(4×100M)에 출전
36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주최:(사)남북체육교류협회, 북한 4.25체육단 후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춘천시, 하나은행	18.10.25 ~ 11.3	춘천, 인제	북한 4·25 체육단과 려명체육단 등 선수단 84명(선수 73명, 임원 11명)이 참가
37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단 및 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차 방북	세계태권도연맹(WT)	18.10.30 ~ 11.3	평양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두 차례 시범공연, 하스 라파티 WT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륙연맹 회장, 국가협회장 등 5명의 외국인도 이번 방북단에 포함
38	남북 체육분과회담 개최		18.11.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39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	국제탁구연맹(ITTF)	18.12.13 ~ 12.17	인천	국제탁구연맹(ITTF) 2018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 남북 단일팀 경기를 위해 북한 선수단 5명 방남
40	남북 체육 분과회담		18.12.14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41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합동훈련		18.12.22 ~ 19.1.20	독일	
42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국제핸드볼연맹(IHF)	19.1.10 ~ 19.1.20	독일, 덴마크	남자핸드볼 남북 단일팀, 세계선수권 22위
43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일국 북한 체육상	19.2.15	스위스 로잔	도쿄올림픽북 남북 단일팀 구성 등 협의
44	남북태권도 시범단 유럽 합동공연	WT(세계태권도연맹), ITF(국제태권도연맹)	19.4.5 ~ 4.12	빈·로잔·제네바	한국 중심으로 성장한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 주도로 발전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이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 25주년을 기념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45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인도네시아국가체육위원회(KON)I, 경기도 공동주최	19.6.21 ~ 6.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5일에는 여자 배구팀이 북한팀과 경기
46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FIFA	19.10.15	평양 김일성 경기장	아시아지역 2차 남북 예선전 (0-0 무) 무관중
47	제 24회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	ANOC	19.10.17 ~ 10.18	카타르 도하	국제스포츠계 현안을 논의/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체육성 제1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참석
48	2019 유소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국제역도연맹	19.10.18 ~ 10.27	평양	

(8) 기타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1	통일 IT 포럼 신년교류회 개최	평양과학기술대, 연변과학기술대	13.01.15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평양과학기술대, 연변과학기술대 총장 참석/ 남북한 IT산업 표준화 협력센터 설립 등 제안
2	'Women Cross DMZ' 대표단 방남	국제여성평화단체 '위민크로스DMZ'	15.05.24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경
3	남북여성들의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연대·한국YWCA연합회 조선민주여성동맹	15.12.23	개성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모임
4	범민족 평화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국통일연구원(북)	18.8.22 ~ 8.24	중국 선양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논의
5	3차 남북정상회담		18.9.18 ~ 9.20	평양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대표들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 면담
6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18.10.4 ~ 10.6	평양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이 논의, 주요시설 참관 및 문화공연 관람, 고려호텔 2층에서는 부문별 남북 협의도 이뤄짐.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측 모임과 남측 지방자치단체및 북측 민화협 모임, 종교인 모임, 정치인 모임이 각각 열림.
7	연변대 컨소시엄·두만	접경지역국립대학 컨소시	18.10.12 ~	중국 연변대	두만강 포럼서 정만호 김일성종합

번호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시기	사업장소	사업내용
	강 포럼	엄,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 공동주최	10.15		대 부총장 만나 통일시대 교육 협력 방안 협의
8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남북 민화협	18.11.03 ~ 11.04	금강산	공동결의문이 채택, 부문별 단체상봉모임 진행
9	남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개시		18.11.5 ~ 12.9	임진강	65년 만의 남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10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주최 : 경기도·(사)아태평화교류협회	18.11.14 ~ 11.17	경기 고양	북측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참가/ 대회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방남, 15일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 첨단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경기도 측과 의견을 나눔
11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18.11.15 ~ 11.18	평양	경제현장 시찰과 북측 관계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투자 기회를 모색
12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행사	현대그룹,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18.11.18 ~ 11.19	금강산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수, 축하공연, 만찬에 이어 이튿날 현지 참관
13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현대아산, 아태	19.2.8 ~ 2.9	금강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창순 서기장 등 북측 관계자 10여 명 참석
14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	19.2.12 ~ 2.13	금강산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로, 종교계와 시민단체, 양대노총 관계자 등 모두 260여 명이 참여/ 다양한 교류사업을 제안
15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경기도·아태협	19.7.24 ~ 7.26	마닐라	북측대표단을 비롯해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등 10개국의 일본강제징용 관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일제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남북 저작권 교류 국내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발 행 일 : 2021년 2월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5층

전화 : 055-792-0000(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opyright.or.kr/

인 쇄 : 지구인쇄출판사 (전화 : 062-227-2250)

총 서 명 : 저작권정책연구 2020-06

I S B N : 978-89-6120-462-0

I S B N : 978-89-6120-031-8(세트)

※ 본 연구보고서는 나눔글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